

2023년

지침연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2023.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23년

지침연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2023.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저 자 함윤주, 김도영, 박소연

LIMAC 연구진 **함윤주** | 연구위원(연구 총괄)

김도영 | 부연구위원

박소연 | 전문위원

목 차

제 I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0

제 II 장 |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실태 및 주요쟁점

제1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	15
1. 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15
2. 투자사업 이력관리 주요내용	18
제2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성과와 한계	21
1.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성과	21
2.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한계	24
제3절 제도 개편 방향 및 쟁점	36
1. 2022년 지침연구 주요결과	36
2. 제도 개편 방향 검토	37

제 III 장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제1절 연구방법	47
1. 델파이(Delphi) 분석 개요	47
2. 주요 쟁점	49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51
1. 조사내용	51
2. 1차 델파이 분석결과	52
제3절 2차 델파이 조사	70
1. 조사내용	70
2. 2차 델파이 분석결과	75

제 IV 장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단계적 발전방안

제1절 환경적 측면	95
1. 이력관리 대상사업	95
2.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97
3.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98
제2절 투입 및 과정적 측면	101
1. 이력관리 전문기관 역할	101
2.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	102
제3절 활용적 측면	104
1. 환류방안 대안별 영향 검토	104
2. 단계별 환류방안	155
제4절 종합	160

제 V 장 |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제1절 기존 매뉴얼 및 지침 현황	163
1. 기존 매뉴얼 및 세부지침 내용	163
2. 2016~2022년 이력관리 기준 주요 변경사항	166
3.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문제점	173
제2절 유사·관련 제도 매뉴얼 현황	175
제3절 현행 이력관리 각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182
1. DB 구축 단계	182
2. 사업검토 단계	201
3. 사업관리 단계	209
제4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단계 확대 시 추가 반영사항	221
1. 운영단계 자료 수집 현황	221
2. 운영단계 작성 지침	225
〈부록 1〉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매뉴얼(안)	233
〈부록 2〉 [1차 델파이 설문지]	301
〈부록 3〉 [2차 델파이 설문지]	312

표 목차

〈표 Ⅱ-1〉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행근거	16
〈표 Ⅱ-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조문신설(입법예고, ~2023.12.14.)	17
〈표 Ⅱ-3〉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현황	21
〈표 Ⅱ-4〉 2016~2021년 중점관리사업 연차별 이행계획 이행현황	22
〈표 Ⅱ-5〉 2016~2021년 중점관리사업 연차별 이행계획 지역별 이행현황	23
〈표 Ⅱ-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	38
〈표 Ⅱ-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1항	39
〈표 Ⅱ-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개정('23.4.11.)	40
〈표 Ⅱ-9〉 「지방재정법」 제27조의5	41
〈표 Ⅱ-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42
〈표 Ⅱ-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3
〈표 Ⅲ-1〉 투자사업 이력관리 델파이 조사 개요	48
〈표 Ⅲ-2〉 주요 조사항목	51
〈표 Ⅲ-3〉 기타 제도개선 사항 관련 의견	69
〈표 Ⅲ-4〉 이력관리 대상사업 개편방안에 관한 델파이 결과	75
〈표 Ⅲ-5〉 관리대상 축소 또는 확대의 대안	77
〈표 Ⅲ-6〉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개편방안에 관한 델파이 결과	78
〈표 Ⅲ-7〉 관리항목(중복선택)	78
〈표 Ⅲ-8〉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현행 유지)	79
〈표 Ⅲ-9〉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80
〈표 Ⅲ-10〉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적절한 진행단계	82

〈표 Ⅲ-11〉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의 우선순위	82
〈표 Ⅲ-12〉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사업 유형별 관리항목	83
〈표 Ⅲ-13〉 적절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운영단계로의 확대)	84
〈표 Ⅲ-14〉 관리 기간 및 주기(운영단계로의 확대)	87
〈표 Ⅲ-15〉 이력관리 결과 환류/활용 방안에 대한 델파이 결과	87
〈표 Ⅲ-16〉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결과를 환류할 경우 적절한 대안(중복선택)	88
〈표 Ⅲ-17〉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89
〈표 Ⅲ-18〉 기타 제도개선 사항 의견(2차 델파이 조사)	90
〈표 Ⅳ-1〉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사항 단어 빈도분석	100
〈표 Ⅳ-2〉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105
〈표 Ⅳ-3〉 보통교부세 시책수요 항목	108
〈표 Ⅳ-4〉 연도별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중 시책수요 규모 및 비중	109
〈표 Ⅳ-5〉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113
〈표 Ⅳ-6〉 연도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규모	114
〈표 Ⅳ-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2001년 신설	119
〈표 Ⅳ-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2013년 개정	120
〈표 Ⅳ-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2016년 개정	121
〈표 Ⅳ-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122
〈표 Ⅳ-11〉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및 규모 추이	122
〈표 Ⅳ-12〉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평가지표(안)	129
〈표 Ⅳ-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규모 및 지급기준	130
〈표 Ⅳ-14〉 2022년(FY2021) 지방재정분석 평가비중	135
〈표 Ⅳ-15〉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평가지표(안)	136
〈표 Ⅳ-16〉 연도별 재정분석 평가지표 비교	137
〈표 Ⅳ-17〉 「지방재정법」 제57조	138
〈표 Ⅳ-18〉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과 적용방식	150
〈표 Ⅳ-19〉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	151

〈표 IV-20〉 강제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 정책수단	153
〈표 IV-21〉 대안별 영향 비교	154
〈표 IV-22〉 연차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160
〈표 V-1〉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164
〈표 V-2〉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정보	165
〈표 V-3〉 자가진단 항목	165
〈표 V-4〉 2016년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167
〈표 V-5〉 이력관리 제도 중점관리 후보군 선정 항목(2017년)	168
〈표 V-6〉 2018년도 중점관리 후보사업 도출을 위한 기준 및 배점	170
〈표 V-7〉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변경	171
〈표 V-8〉 중점관리 후보사업 중 선정의 실효성이 낮아 제외된 사업	172
〈표 V-9〉 투자사업 이력관리 및 유사·관련 제도 운영 현황	177
〈표 V-10〉 유사·관련 제도 운영 현황	180
〈표 V-11〉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별 입력사항	185
〈표 V-12〉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별 입력사항 개선(안)	186
〈표 V-13〉 대상사업 목록 배포파일 주요 작성 내용	187
〈표 V-14〉 추진단계 재제출 사항	199
〈표 V-15〉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2020년 이후)	204
〈표 V-16〉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2022년 기준)	205
〈표 V-17〉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사유 예시	206
〈표 V-18〉 중점관리 후보사업 소명의견 작성 양식(안)	208
〈표 V-19〉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개요)	211
〈표 V-20〉 자체관리계획 양식(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	212
〈표 V-21〉 자체관리계획 양식(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213
〈표 V-22〉 자체관리계획 양식(투자심사 이력)	214
〈표 V-23〉 자체관리계획 양식(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216
〈표 V-24〉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217

〈표 V-25〉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218
〈표 V-26〉 자체관리계획(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사례	220
〈표 V-27〉 공공시설 운영현황 통계	223
〈표 V-28〉 운영단계 작성기준	226

그림 목차

[그림 II-1]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	20
[그림 II-2] 차세대 e호조 주요 추진과제	27
[그림 II-3] 차세대 e호조 오픈일정	28
[그림 II-4] 차세대 e-호조의 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내용	29
[그림 II-5]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절차	33
[그림 II-6]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안)	36
[그림 III-1] 이력관리가 필요한 이유	53
[그림 III-2] 이력관리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55
[그림 III-3] 이력관리에 추가되어야 할 평가항목	57
[그림 III-4] 이력관리 대상	58
[그림 III-5] 운영단계 관리 필요 이유	59
[그림 III-6]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60
[그림 III-7]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	61
[그림 III-8]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63
[그림 III-9]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64
[그림 III-10] 이력관리 결과 환류방식	65
[그림 III-11] 투자사업 이력관리 활용방법	66
[그림 III-12]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총사업비 증가 정도	81
[그림 III-13]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지연(준공 기준) 정도	81
[그림 III-14] 투자심사 당시 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운영비 과다 기준	85
[그림 III-15] 투자심사 당시 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운영실적 미흡 기준	85
[그림 III-16] 유사시설과 비교할 시, 운영비 과다 기준	86

[그림 Ⅲ-17] 유사시설과 비교할 시, 운영실적 미흡 기준	86
[그림 Ⅳ-1]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함윤주 외, 2022)	103
[그림 Ⅳ-2]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개념도	112
[그림 Ⅳ-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126
[그림 Ⅳ-4]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체계	133
[그림 Ⅳ-5] 지방재정분석 절차	134
[그림 Ⅴ-1] 준비단계(최초심사) 입력양식	190
[그림 Ⅴ-2] 준비단계(2단계) 입력양식	191
[그림 Ⅴ-3] 추진단계 입력양식	192
[그림 Ⅴ-4]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사업명 작성 양식	193
[그림 Ⅴ-5] 사업개요 양식	194
[그림 Ⅴ-6] 투자심사 정보 양식	194
[그림 Ⅴ-7] 일정정보 양식	196
[그림 Ⅴ-8] 총사업비 양식	196
[그림 Ⅴ-9] 자원조달계획 양식	198
[그림 Ⅴ-10] 중점관리사업 선정 절차	201
[그림 Ⅴ-11] 중점관리 후보사업 배포 양식	206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를 독려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년에 도입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2015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제2항 개정(2015.12.24.)으로 제도의 개념 및 대상이 제시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과 범위는 상기 규칙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사업으로 대상으로 제시됨
 -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제도 하에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한다고 제시하여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이하 LIMAC)에서 2016년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한하여 시범실시한 기초연구¹⁾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 실시됨
 -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역할은 사업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차별로 추진실적과 변동이력을 관리하여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지원을 목적으로 정립됨

1) 송지영 외(2016)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심층점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근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 향후 이력관리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²⁾
 - 2023년 9월 14일 개최된 ‘지방시대 위원회 선포식’에서 발표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시대 9대 정책 중 9번째 정책으로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주도권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감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그러나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해 온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추진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담보 문제, 이로 인한 중점관리 사업 선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사업추진 정보를 수기로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작성 오류로 인해 자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이력관리 제도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선정 이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매년 중점관리사업으로 20~30건의 사업이 선정되며, 각 사업담당자가 자체관리계획을 세워 이를 매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
 - 그러나 수립된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2022년 제2차 비수도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2022.11.24), 2022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개선 워크숍(2022.12.19.)

- 무엇보다도 당초 이력관리 제도 도입 취지에는 운영단계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행 이력관리 제도는 관리범위가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만 한정되어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은 건축물 위주로 준공단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력관리 결과의 공개 및 환류 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편 LIMAC에서는 2022년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지침연구³⁾를 수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사 분야에서 각종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공무원 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향 등을 검토함
- 특히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로 1차적으로 이력관리 자료 입력 경험이 있거나, 2022년 입력대상 사업담당자 또는 예산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이력관리 제도 하에 축적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공개 방식, 현재 매년 선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 필요성, 선정기준, 향후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제도를 확대할 경우 도입 찬성 여부, 제도 운용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또한 2022년도 지침연구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운영손실 문제까지 관리하겠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기 위해 이력관리의 범위를 운영 단계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를 검토함
- 투자사업의 유형은 다양하나 그 중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로 지역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2022년도 지침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에 한정하여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를 검토함

3) 함윤주 외(2022)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특히 기존에 수집되고 있는 공공시설 관련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인천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심층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운영단계 데이터 수집시 세부 작성기준을 점검함
 - 또한 운영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업정보 수집이 요구되므로 2022년 지침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확대 및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함
- 그러나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도입 및 2016년 시범연구를 수행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력관리를 수행한 지 6년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운용상의 문제점, 환류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022년 지침연구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현황 및 관련 쟁점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해당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운영단계 확대 관련 사항으로 제시된 각종 쟁점에 대한 충분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실천적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단기과제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접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지침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운영단계 확대 관련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할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지침연구는 첫째,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의의와 투자사업 사후관리제도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해 온 결과, 향후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력관리 업무의 범위와 목적,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기준, 이력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측면,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이력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점관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발전방안을 검토하되, 제도를 둘러싼 환경, 각 대안별 영향 및 효과성도 추가로 비교 검토하여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이력관리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실효성 높은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이력관리 수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 제IV장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 및 단계별로 수집되는 사업정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됨

- 또한 이력관리 업무 수행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정보 제출 또는 소명자료 제출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세부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2~4회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여 이력관리 제도 개괄 및 자료수집 관련 세부 요령을 교육하고 있음
 - 그 외 LIMAC에서는 이력관리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해마다 이력관리 세부업무에서 개선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그간 진행되었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정보 관리와 문제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는 이력관리 대상 확대시 이력관리 수행기관의 업무수행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규칙상 제시된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인 중앙투자심사 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공투자사업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심사(시·도 의뢰심사 포함)까지 관리 대상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력관리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이력관리 DB 관리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기초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세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지침연구의 범위는 대상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이며, 이력관리 제도 대상사업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시간적 범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투자사업 단위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 및 대규모 사업(시·군·구의 자체심사 및 시·도 자체심사/의뢰심사 통과사업)을 포함함
 - 공간적 범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적용을 받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임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적 범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전반적인 틀에 대한 단계별 발전방안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임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전반적인 틀에 대한 단계별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관리대상, 관리범위, 활용 및 환류방안, 중점관리사업의 기준, 운영단계 확대 관련 사항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이력관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력관리 매뉴얼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각 단계별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업무지침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중점관리 후보사업 및 최종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자체관리계획 작성 지침 및 검토기준 등 포함함

2. 연구방법

- 본 지침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단계적 발전방안

- 우선,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용 현황 및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실시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실시함
 - 투자심사위원,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담당자, 지방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환경-투입-과정-결과 및 활용’ 측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델파이 방식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 및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조사
 - 1차 전문가 델파이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대안에 대하여 각 대안별 영향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환경-투입-과정-결과 및 활용’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3단계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함

나. 매뉴얼 개발

- 문헌 및 사례 검토 및 매뉴얼(안)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 이력고나리 매뉴얼을 개발함
 - 문헌 및 사례 조사에서는 유사제도 매뉴얼 및 지침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정보 주요 작성기준 재검토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
 - 투자심사 관련 담당 공무원 및 타당성조사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관련 의견을 참고하여 매뉴얼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함

제 II 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현황 및 주요쟁점

제1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

제2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성과와 한계

제3절 제도 개편 방향 및 쟁점

제1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

1. 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 개정 (2015.12.24.)으로 제도의 개념 및 대상이 구체화됨
 - 규칙 개정 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나 개정 이후 이력관리 제도 하에 대상이 구체화되고, 이력관리 관련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과 범위는 상기 규칙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사업으로 제시됨
 -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제도 하에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한다고 제시하여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함
 - 또한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의 문제성 사업은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다고 제시됨

〈표 II-1〉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행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분	개정(2015.12.24.) 전	개정(2015.12.24.) 후
①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②항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항	〈신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항	〈신설〉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지방재정법」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023.12.14.)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조문도 일부 신설됨
 - 전문기관 중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의2 제3항)하여 이력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⁴⁾
 -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표 II-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조문신설(입법예고, ~2023.12.14.)

구분	제9조의2 제3항~6항 개정령(안)
③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④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⑥항	〈기존 ③, ④항〉

□ 이력관리 수행주체 및 전문기관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526호)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이력 관리의 기초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함
-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포함하여, 이력관리 전과정에 LIMAC이 2016년부터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매뉴얼 개정(2020.12.29.)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중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으나, 특정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음

2. 투자사업 이력관리 주요내용

- 2016~2022년까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2016년에 기초연구 및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심층점검 시범 수행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및 대규모 사업(시·군·구 자체심사, 시·도 의뢰심사 및 자체심사)을 대상으로 시행함
 - 2016년에 수행한 기초연구에서는 이력관리 대상사업 범위 및 관리해야 할 사업정보, 검토기준을 마련함(송지영 외, 2016)
 - 또한 시범사업으로 2013~2015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500억원 이상 사업 186건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5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케이스로 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점검을 실시함

- 2017년에는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및 500억원 이상 자체투자심사 사업까지 관리하고,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를 통해 제출하도록 함
- 2018년부터는 자료제출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대신 엑셀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e-호조를 통해 입력된 사업정보의 정확성 결여, LIMAC의 e-호조 접근 제한 등 어려움과 이력관리 업무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방식을 변경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주요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매년 취소 및 중단, 완료된 사업은 제외되고, 동시에 직전년도에 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되며, 사업비, 일정 지연 등 당초 심사 대비 사업계획 변경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함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차년도부터 매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주요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II-1]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①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정보 제출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정보 제출 ※ 결산 기준 추진내용 반영 ■ 자가진단 결과 작성 ※ 자가진단 기준 토대로 작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LIMAC)
②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LI 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 중투위 보고
③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지자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행안부(LIMAC)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2022.09.13.)

제2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성과와 한계

1.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성과

□ 투자사업 대상사업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17년 총 1,076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총 1,643건에 달함

〈표 II-3〉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사업 심사 기간	2013~2015년 (3년)	2013~2016년 (4년)	2013~2017년 (5년)	2013~2018년 (6년)	2013~2019년 (7년)	2013~2020년 (8년)	2013~2021년 (9년)
투자심사 구분	중앙투자심사 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사업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앙투자심사는 모든 사업, 자체심사는 500억원 이상 사업만 대상					
사업수	186건	1,076건	1,323건	1,463건	1,575건	1,602건	1,643건
중점관리사업*	15건	27건	31건	34건	16건	44건	21건
심층점검	5건	-	-	-	-	-	-
자료구축	자치단체 문의를 통한 자료 구축	e-호조에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입력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주 :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2020.12.29.)에 따라 e-호조를 통해 이력관리 자료를 제출한다는 문구가 삭제됨

- 매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추진단계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 일정지연 등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된 사업을 중심으로 약 100~200여건의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중점관리사업은 사업 완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함
 - 매년 약 20~40여건의 중점관리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수립된 자체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차년도부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이행률이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6~2021년에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의 자체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 당초 계획대로 이행 중인 사업이 27건(16%),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48건(29%), 중지 또는 중단된 사업이 10건(6%), 완료된 사업이 67건(40%) 등으로 검토됨
 - 즉,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업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심사 시기별로는 2016~2019년까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50% 이상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 2020년과 2021년에 선정된 중점관리사업(60건) 중 완료 사업을 제외하고,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25건(4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4〉 2016~2021년 중점관리사업 연차별 이행계획 이행현황

구분	사업 수(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중점관리사업	15	27	31	34	16	44	167
완료	10	20	20	16	1	-	67
중지 또는 중단	3	1	-	-	-	6	10
기타(재심사 등)		2	4	5	2	2	15
일부지연	2	4	7	11	7	17	48
계획대로 이행 중	-	-	-	2	6	19	27

〈표 II-5〉 2016~2021년 중점관리사업 연차별 이행계획 지역별 이행현황

구분	계획대로 이행 중	지연	중지 또는 중단	완료	기타 (재심사 등)	계
서울	4	5	0	7	3	19
부산	2	4	0	4	0	10
대구	2	1	1	0	0	4
인천	0	0	0	3	0	3
광주	0	0	0	2	2	4
대전	0	3	0	1	1	5
울산	0	0	0	4	0	4
세종	0	0	0	1	0	1
경기	4	12	7	11	2	36
강원	1	3	0	5	0	9
충북	2	2	0	7	1	12
충남	2	4	1	4	2	13
전북	2	4	0	2	0	8
전남	1	1	1	4	2	9
경북	1	3	0	7	0	11
경남	2	5	0	5	1	13
제주	4	1	0	0	1	6
총합계	27	48	10	67	15	167

□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임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도입 전에는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점검되고 있음
- 또한 사업계획 변경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재심사 또는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지도 검토 가능함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예: 재원조달, 민원 및 갈등, 행정 및 절차, 외부여건 변동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하 자체관리계획은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립 이후 차년도부터 이행여부도 매년 자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자체관리계획 이행률이 낮은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논의 시 이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한계

가. 이력관리 자료 수집 관련

1) 자료의 정확성 관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 수집 및 검토의 어려움으로 업무 비효율 등이 발생함

-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이력관리 자료 검토 결과, 투자심사시 계획(준비단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자료(총사업비, 일정, 사업규모 등)의 누락 또는 작성오류 사례가 많음
- 매년 적게는 100여건, 많게는 300여건 가까이 자료 재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재제출시에도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 재제출 요청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94건, 2023년 302건으로 주요 누락정보는 일정정보(착공 또는 준공일정), 사업규모(부지면적, 연면적), 자가진단 등이며, 오류사항으로는 총사업비의 합계와 연차별 집행내역의 사업비 합계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고, 파일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변경한 경우임

- 2022년부터는 대규모 사업 진행상황을 위해 추가로 기집행액, 공정률, 취소·중단사업에 대한 사유, 재심사 의뢰여부 등을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에 대한 정보 검토를 위해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의 경우 의뢰서까지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 제출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1차 자료제출시에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으며, 재제출 기간도 요청한 기간내에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자료 수집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누락된 자료 요청, 제출된 정보간 상이한 정보의 일치화 등은 재제출을 통해 최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실제 집행내역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검증하기 어려워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투자사업의 추진경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가진단 결과의 경우에도 추진단계 정보에서 제시한 사항과 상이하게 진단한 비율이 상당함(양지숙, 2019)
 - 양지숙(2019)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자가진단결과와 검증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치율이 각 항목별로 25~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2022년 이력관리 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에 해당하는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 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있음
- 그러나 2022년 추진단계 사업(1,300여건) 중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에 해당하는 사업은 4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지방채 발행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산업단지 사업 중심으로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채무부담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별도로 검토한 바, 이력관리 자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였으나 실제로 미분양 확약 또는 지급보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 담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한 실정임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제출된 사업정보에 각종 오류(일관성 부족, 산출근거 및 근거 부재, 누락 정보 등) 등으로 인해 DB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정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이력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오히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력관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적절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방안(예: 시도합동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재정분석시 국가시책 이행 부분에 반영 또는 연말 예산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별도 평가 및 시상 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수집 체계 관련

□ 이력관리 자료 수집 주체, 분석기관의 이원화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함

- 2017년 이력관리 자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해 이력관리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e-호조에 입력된 사업정보의 정확성 결여 및 이력관리 자료 수집기관(e-호조 운영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분석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화로 인한 이력관리 업무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료제출방식을 변경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예산, 지출, 결산 등 15개 분야)업무 및 통계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협력과가 담당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함

□ 차세대 e-호조 구축사업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도 연계하여 투자수집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차세대 e-호조) 구축사업이 추진됨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재정관리 전 과정 고도화 및 지방보조관리 전자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91억원(구축비(3년) 1,017억원, 유지보수비(5년) 474억원)임

[그림 II-2] 차세대 e호조 주요 추진과제

5개 추진전략 >>>	20개 세부과제 >>>
01 지방재정 업무 혁신	01 사업관리구조 및 정보 단절 개선 02 예산편성 정형화 03 자금 및 부채관리 효율화
02 지능형 업무 환경 구현	04 재정 업무 전자문서 처리 05 예산결산정보 연계 통합
03 보조사업 관리 표준화·정보화	06 재정통계 작성 효율화 07 범 국가 재정 통계 지원
04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08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05 신기술 기반 인프라 및 연계 구축	09 보조금 운영관리 정보화 10 보조금 실시간 집행·현황 모니터링
	11 정보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12 보조금 대민 서비스 편의성 향상
	13 온라인 대금 청구 서비스 제공 14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
	15 지능형 챗봇 상담서비스 구현
	16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17 통합연계체계 구축
	18 개방형 표준 적용 19 신기술 적용방안 20 통합보안관리체계 구축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022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4.15)

- 차세대 e-호조는 2022년부터 순차 오픈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지방재정 집행부문을 시범 개시하였으며, 2024년부터 전 기능 서비스 오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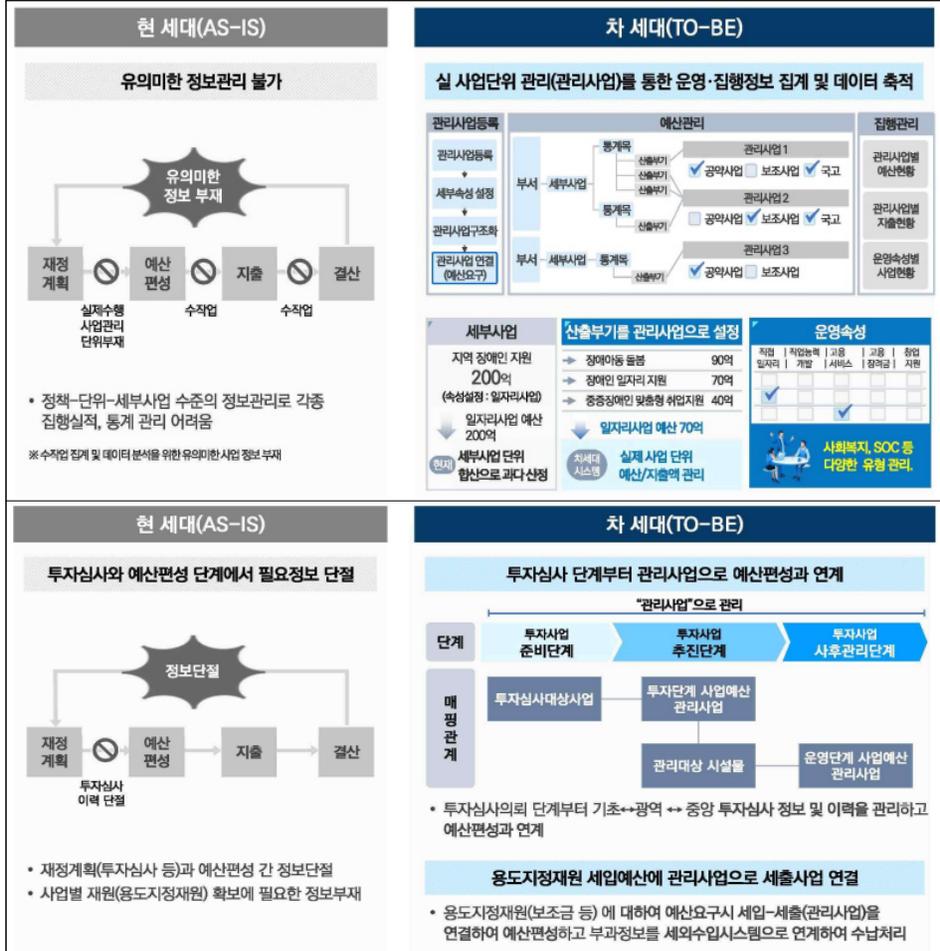
[그림 II-3] 차세대 e호조 오픈일정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022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4.15)

- 차세대 e-호조에서 지방예산 관리 관련 주요 개선사항으로 실제 수행하는 사업 단위체계로 재정업무구조를 개편하여 정보단절을 개선하고자 함
 - 투자사업은 기존 세출예산 사업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산출근거를 수작업으로 별도 관리함
 - 이에 따라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단계간 정보가 단절되어 투자심사 정보와 연계한 사업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차세대 e-호조에서 향후 투자사업을 관리사업으로 설정하여 관리예정임**
 - 투자심사부터 투자사업을 관리사업 단위로 관리할 시 투자심사자료와 연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자료가 연계되고 이러한 자료가 이력관리 자료로 자동연계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이력관리 관련 자료 수집시 지자체 수작업이 최소화되고,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II-4] 차세대 e-호조의 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내용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022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4.15)

□ 다만 투자심사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에서 차세대 e-호조 활용시점이 불투명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확인 결과(2022년 말), 투자사업을 관리사업으로 연계관리하는 부분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차세대 e-호조 운영단계에서 추가과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023년 1차 중앙투자심사 단계부터 투자심사 과정에 차세대 e-호조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시스템 내 관련 DB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적으로 차세대 e-호조를 활용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력관리 단계에서도 활용하는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차세대 e-호조에서 당초 제시한 바와 같이 투자사업을 관리사업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 및 축적할 때 비로소 투자심사부터 이력관리까지 자료수집의 고도화가 가능한 실정이며, 그때까지는 현재 자료제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이력관리 자료 수집 고도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함

- 향후 차세대 e-호조 활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이력관리 자료 수집에 대한 역할을 차세대 e-호조를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적극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2023.12.14.)에 따르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정보화시스템(e-호조) 활용 권한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전담기관이 법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 자료 수집기관과 분석기관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 e-호조를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

□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력관리 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규동 (2019)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정리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역주민에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이력관리 제도는 투자심사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입과 통제 측면에서 도입되기 보다는 지자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는 측면을 엿두해두고 개선방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LIMAC에 예산 및 사업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업무 파악을 위해 그동안 완료된 사업의 목록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심사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 LIMAC에 이력관리 관련 세부 수행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함
- 다만 이력관리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자료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공개 시 일괄 공개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개 여부 및 대민 서비스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공개 대상 : 지역주민까지 공개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시도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공개 항목 : ① 개별사업별 사업명, 위치, 총사업비, 일정, 규모 및 내용 등 주요 사업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 ② 사업유형별·지자체별 주요 집계 정보 및 분석 자료, ③ 중점관리사업 및 자체관리계획 관련 자료 등에서 선택 또는 단계적 공개 확대 등 공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공개 방법 : 지방재정365에 일괄 공개 또는 차세대 e-호조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 개별 공개 등 공개 대상이나 공개 항목에 따라 공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중점관리사업 선정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당초 제도 도입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LIMAC에서 꾸준히 선정기준 개선작업 중임
 - 현행 기준은 총사업비 및 일정 등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부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심사 대상사업 기준에 의거 제도 밖으로 넘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패널티가 존재함
 - 다만 물가상승률 기준 등 세부적으로 재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시 재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중점관리 선정기준은 오히려 이력관리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건부 판정사업에 대한 조치 및 추진상황을 기준으로 이행여부 및 준비정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또한 현행 중점관리사업 선정 결과 및 관리내용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이행 중인 사업은 20% 내외(2020년 이력관리 결과 기준)이며, 미이행 또는 중단에 대한 패널티 등이 부재함
 - 따라서 자체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률이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중점관리사업 선정 위원회를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내 구성하여 선정기준 검토 및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자체관리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다. 관리범위 관련

□ 공공투자사업의 추진목적 달성 및 성과평가 측면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이력관리 제도 하에 추진되는 사업관리범위는 사업 준공단계까지로 투자심사시 제시된 총사업비 및 일정 관리 측면에 한정함
 - 따라서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운영단계의 지역 수혜도 및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운영단계까지 이력이 관리될 시 장기적으로는 사전 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이자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이 가능함

[그림 II-5]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22.09) p.57

-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도입 당시 심사규칙에는 운영손실에 대한 관리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운영단계는 지방재정365에 공개되는 공시항목으로 설정하여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하에 기록·관리되도록 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에 대상이 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 중 건립비용이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시설만 대상으로 운영현황이 기록·관리됨
 - 관리항목으로는 운영비, 운영수입, 이용객수 등이 포함되며, 공공시설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이 포함됨

- 2021년까지 건립비용 기준은 기초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200억원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 100억원씩 상향조정되어 공개되는 대상이 대폭 축소됨
- 이외에 운영단계와 관련해서는 각 시설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실적 통계를 일부 관리하고 있음
 -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시설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를 관리함
 - 다만 시설 유형별로 운영수지 및 이용객수가 모두 집계되지는 않고 있음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범위에 포함할 시, 기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대상 외에 투자사업을 통과한 사업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규모(건립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유형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함
- ⊖ 또한 사업유형별로 운영단계 이력관리에서 기록·관리해야 할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2022년 지침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확대를 위한 기존 각종 운영단계 정보를 검토함. 특히 각종 공공시설 실적정보가 제공되는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와 작성기준 등에 대해 검토함

라. 관리대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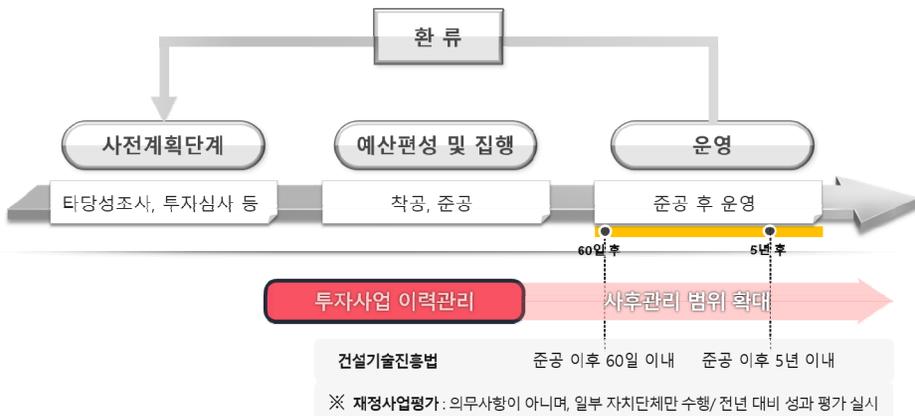
- 공공투자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투자심사 기관별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가 391건, 시도 심사(자체 및 의뢰심사 포함)가 2,115건, 시군구 자체심사가 3,953건임
 - 즉 전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시군구 자체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심사통과율을 살펴보면 자체심사의 통과율이 99% 이상을 보임
 -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현행 이력관리를 통해 일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과율이 높은 자체심사의 경우 지방지출의 자율성 측면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 또한 사업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앙투자심사뿐만 아니라 자체심사로 통과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여 사업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추진상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별 연간 재정관리에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제3절 제도 개편 방향 및 쟁점

1. 2022년 지침연구 주요결과

- 2022년에 수행한 지침연구(함윤주 외, 2022)에서는 투자사업의 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로 환류하기 위해 이력관리의 범위를 기존 준공(공사완료)에서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제시함
-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는 이력관리 제도를 사업의 전주기적 평가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환류 과정을 통해 이력관리 결과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사업을 판단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음

[그림 II-6]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안)



자료 : 함윤주 외(2022) p. 216

- 운영단계까지 관리범위 확대시, 다양한 투자사업 유형 중 관리가 시급한 유형 파악 및 평가(또는 관리)지표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 2022년 지침연구에서는 우선 운영단계 관리가 시급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평가(관리)지표 설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함
 - 운영단계 평가(관리)지표는 사전계획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실제 운영단계에서 자료 수집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여야 함
 - 1단계 운영단계 관리 확대 대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검토한 결과, 현재 구득가능한 운영단계 자료가 부족하므로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별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고, 각 사업유형별 적절한 수집항목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2년 지침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법적 근거 강화, ②전문기관 지정 운영, ③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④환류체계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 및 개편에 따라 기존 매뉴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한 관련 시행지침(안)을 제시함
- 현재 함윤주 외(2022)에서 제안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현재 「지방재정법」을 개정('23.4.11.)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023.12.14.)임

2. 제도 개편 방향 검토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정책방향과 현행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2년 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확대·개편방향 발표한 바 있음

- 2022년 제2차 비수도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2022.11.24.) 및 2022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개선 워크숍(2022.12.19.)에서 이력관리 대상 범위를 사업 완료 이후 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현행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둘러싼 각조 여건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우선, 2016~2023년까지 LIMAC의 이력관리업무는 타당성조사 기관의 부수업무로 수행되었으나, 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인력 관련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제시된 이력관리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이에 따라 이력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이견이 존재함

〈표 II-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다음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확대 및 개편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및 타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가. 사후평가와 연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간 연계 및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최근 3년간 모든 투자사업(중앙투자심사, 자체심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를 사후평가라고 함

〈표 II-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됨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평가항목(예시)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율(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등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 평가반 구성: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료로 작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 부여
- 투자사업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시행 2024.1.12.)으로 사후평가(제37조(투자심사) 제6항)와 관련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사후평가에 대한 위상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II-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개정('23.4.11.)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 사후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심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사후평가에 대한 근거가 상향조정되어 사후평가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다만 현재 사후평가는 자료취합 및 통계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후평가의 목적인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사후평가와 이력관리를 연계하고, 운영단계까지 확대하여 투자사업의 사후관리제도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와 차별화하기 위해 제도의 명칭 및 수행범위, 대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국고보조금 사업 이력관리와 연계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근거 조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이력관리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 사무로서 이력관리 업무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이력관리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2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제도임

〈표 II-9〉 「지방재정법」 제27조의5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제24조)을, 중앙관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제27조의4)을 각각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함

-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를 지방재정365에 공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994개(세부사업 기준)로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83.1조, 교부율은 97.4%, 집행률⁵⁾은 88.1%로 공시되었으며, 각 중앙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를 제공함⁶⁾
 - 그러나 개별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은 제공되지 않음
- 그러나 국고보조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연장 평가를 실시하며, 연장평가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지침으로 규정함

〈표 II-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6. 1. 28.]

-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대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중 동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5) ① 교부율 : 정부(국비) 최종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 비율

② 집행률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현액(교부액+이월액)에서 집행한 비율

③ 자치단체 예산현액 : 국비 교부액 + 전년도 이월 국비액

6) 지방재정365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2023.09)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제외대상 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진행되는 사업임
 -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투자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표 II-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2023. 7. 7.>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평가에서 제외되어 평가 또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중앙투자심사는 대부분 복합재원의 성격을 띄고 있고, 특히 국비지원사업 수가 상당함(예: 2022년 기준 전체 의뢰건수 443건 중 통과사업 327건, 이 중 국비지원사업은 248건으로 통과사업의 약 76% 차지)
 -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상당수가 자본보조금 형태의 사업인 특징이 있으나, 유사사업의 지원 연장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자심사 통과 사업까지 포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을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처럼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대상을 유지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수행주체가 되어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사업을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고보조금 평가는 국비지원의 존속여부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된 사업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단계까지 포함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 전담기관의 역할 및 협업체계 구축 관련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14.)에 따르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과 전담기관의 정보화시스템(e-호조) 활용 권한에 대한 조문이 신설됨**
 - 따라서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법적 지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력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를 지원하는 각 지역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협업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라. 소결

-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이력관리 확대·개편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차세대 e-호조 개발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하나 이력관리 확대·개편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지침연구에서는 향후 이력관리 제도 개편(안)과 연계하여 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 또한 ② 2016년 이후 이력관리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 및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실효성 높은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이력관리 수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함

제Ⅲ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제3절 2차 델파이 조사

제1절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1. 델파이(Delphi) 분석 개요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집단토의법 중 하나임
 - 근본적으로는 중요문제에 대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여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매회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요약하며 그것을 다시 전문가들에게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견해나 평정을 수정함
 - 일반적으로 5~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들은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조합해 합의를 유도해내는 방법임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이후 이력관리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전문가 델파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력관리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 필요성, 관리 대상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델파이분석의 대상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함
 - 델파이 조사 대상은 총 16명을 위촉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중앙 및 지역의 예산담당 공무원 3인, 중앙투자심사위원 5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연구원 2인, 지방공공투자센터에서 지역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함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력관리 필요성, 목적, 평가항목, 환류관련, 타유사제도와의 연계, 이력관리 대상, 범위 확대,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전문기관의 역할 및 책임, 자료의 신뢰성 제고, 전반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오픈형으로 답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적인 취합 자료를 정리하여 위촉된 델파이 위원에게 공유하고, 1차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대안들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함

〈표 III-1〉 투자사업 이력관리 델파이 조사 개요

조사기간	1차 : 2023년 5~10월
	2차 : 2023년 10~11월
조사방법	서면 조사지를 통한 의견기술 및 심층면담
조사대상	총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투자심사위원 5인, 중앙 및 지방 예산담당 공무원 4인 ▪ 타당성조사 전문가 3인, 시도연구원 연구원 8인

2. 주요 쟁점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앞서, 사전에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이력관리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활용 및 환류방안을 고려하여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이력관리 결과는 공개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사업(중점관리사업)에 대한 기준 및 조치가 명확하지 않음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체관리계획 수립 외에는 어떠한 패널티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력관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결과가 구속력 있는 제도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료 제출 협조도 원활하지 않음
- (관리대상) 이력관리대상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 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투자심사사업 대한 이력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 매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은 400여 건, 자체심사 의뢰 사업(시도 의뢰심사 포함)은 4,000여 건임
- (관리범위) 현행 이력관리 제도의 관리범위는 사업준공단계까지 사업비 및 일정 변경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의 운영단계에서의 지역 수혜도 및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관리범위를 확대할 경우,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유형 및 운영단계 관리 방향, 데이터 수집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료의 정확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이력관리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관련 자료 재확인과 수정을 위한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큼
 - 향후 차세대 e-호조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할 예정이나, 사업규모, 일정, 운영실적 등 정보는 여전히 수기작성이 필요함

- 향후 차세대 e-호조 접근권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체계,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문기관)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법적 지정 및 시도연구원 등과 협업한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 상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현행 이력관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나 이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별도 전담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1. 조사내용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메타평가 4단계 구성요소인 ‘환경-투입-과정-결과 및 활용’측면과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조사하고자 함
 - 제도적 측면 : (환경) 이력관리 제도의 필요성, 목적, 이력관리 평가항목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포함)의 적절성,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 운영적 측면 : (투입 및 과정) 전문기관의 역할 및 책임,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결과 및 환류) 이력관리 결과 환류방안, 타 유사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표 III-2〉 주요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환경	이력관리 필요성	이력관리의 도입은 필요한가?/
	이력관리 목적	목적이 적절한가?/적절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력관리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적절한가?/적절하지 않다면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이력관리 대상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범위가 적절한가?/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대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이력관리 범위 확대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가 필요한가?/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어떤 사업유형 위주로 관리가 필요한가?
	중점관리사업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고려해야 할 지표 및 기준은 무엇인가?

구분		조사항목
투입 및 과정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책임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력관리 자료의 신뢰성 제고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결과 및 환류	환류관련	어떻게 환류 및 활용되어야 하나?
	타 유사제도와 연계	유사제도와 연계가 필요한가?/환류관련하여 연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기타	기타	이력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1차 델파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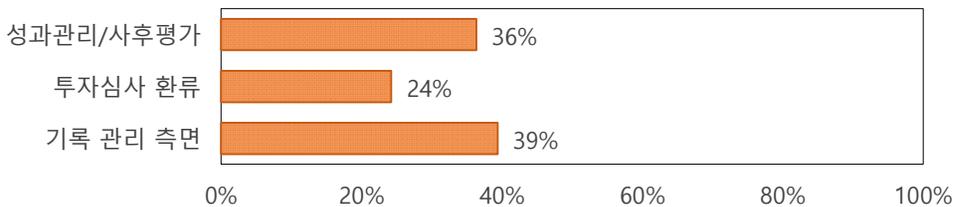
가. 제도 환경요소에 대한 평가

1) 이력관리 제도의 필요성

- 투자사업 이력관리 근거법령은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2 제2항으로, 해당 규칙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명명함
- 이러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 100%가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다음 3가지로 답변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응답유형을 중복적으로 답변하기도 함
 - 첫 번째 응답유형의 경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록·관리 측면에서 투자심사 내용 대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할 필

- 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이러한 기록·관리의 측면은 특히 사업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의 필요성, 현재 진행단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두 번째로는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환류** 측면에서 “조건부 이행여부 확인”,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나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의 24%를 차지함
- 이력관리를 통해 투자심사위원회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력관리 결과를 활용하여 유사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세 번째로는 **투자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특히 사업계획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지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독려하고, 사후적인 수요 및 편익 분석을 통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그림 III-1] 이력관리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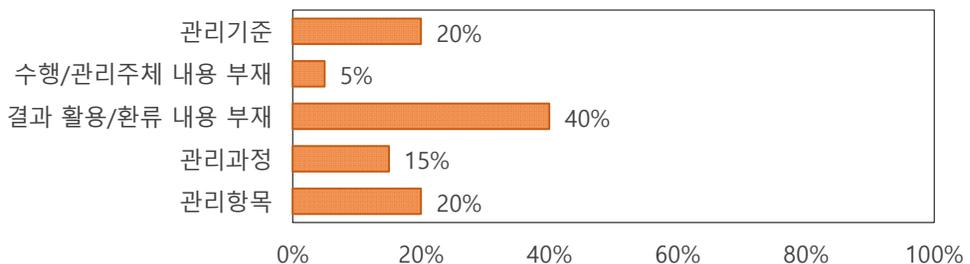
2) 이력관리 제도 목적의 적절성

- 현재 규칙상에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여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제시됨
- 이러한 내용이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으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법령상에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목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20%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0%,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함
- 적절하지 않은 이유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5가지로 답변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응답유형을 중복적으로 답변하기도 함
 - 결과 활용 및 환류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높았음
 - 이력관리 항목이 구체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를 차지함
 - 예를 들어 투입현황, 사업내용 등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특히 사업성과 측면에서 운영단계 관련 항목인 운영비용, 이용인원(이용도)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반면 관리항목 중 운영손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제도의 도입 시점과 활성화 정도를 감안할 때 단계별로 접근하거나, 완공 시까지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익성이 크지 않아서 공공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면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력관리 과정 측면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로 이력관리 결과를 심의·평가한다는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함
 -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과 관

련하여, 자체관리계획 수립은 필요하지만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이 실효적이기 않을 수 있으므로 작성된 자체관리계획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각 사업단계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평가를 통해 적절성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관리기준에 대한 응답은 20%로 당초 사업계획이 비교 및 검토기준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를 들어,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여”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투자심사 단계의 사업계획과 비교하여”로 변경하여 비교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수행/관리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5%)
 - 예를 들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관리단계는 해당 자치단체가 하고, 심의·평가하는 주체는 상위 기관(시·군·구의 경우 시·도, 시·도는 주무장관)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임

[그림 Ⅲ-2] 이력관리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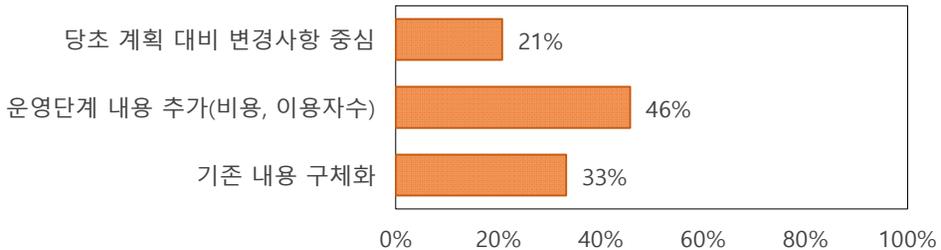


3) 현재 규칙상 제시된 평가항목의 적절성

- 이력관리의 평가항목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이력관리에서는 주로 사업비 투입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
 - 현재는 운영손익 등 운영단계 정보는 투자심사 이후 사업추진주체와 운영 주체의 분리, 이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따라 투자심사와 연계한 이력관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규칙상 제시된 평가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20%,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5%를 차지함
- 적절하지 않은 이유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로 답변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응답유형을 중복적으로 답변하기도 함
 - 운영단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임
 - 운영비용, 운영인력, 이용자수(활용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며, 그 외 이력관리 목적을 성과평가까지 고려한다면, 사업목적, 공간구성, 사업입지 등의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함
 - 기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남
 - “사업내용”을 사업량,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함
 -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을 보는 관점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로 나타남
 - 그 외 사업유형별로(특히 운영단계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사업추진과정 : 예산 투입, 토지 매입, 각종 사전 절차 이행,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 사업완료 후 운영 : 예측한 수요(수익) 대비 실제 수요(수익), 예측한 운영비 대비 실제 운영비 등
- 사업목적 평가 : 대규모 투자에 따른 당초 사업목적 달성여부(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효과 등)
- 투자심사 타당성 환류 : 사업 완료 후 운영수지, 사업목적 평가 등으로 투자심사의 타당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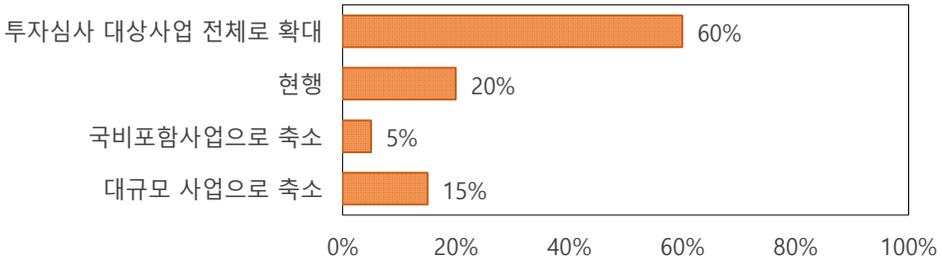
[그림 Ⅲ-3] 이력관리에 추가 및 수정되어야 할 평가항목



4)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적절성

- 현재 이력관리 대상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사유와 적절한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현재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으며, 현행보다 축소하자는 의견이 20%, 확대하자는 의견이 60%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다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중 20%는 이력관리 관련 인력 및 예산, 수행주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현재 이력관리 대상사업도 매년 축적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력관리 제도가 정착 및 활성화된 후에 전체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이후에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확대 대상에 대한 관리는 기존 전문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투자센터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현행보다 축소하자는 응답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 외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림 III-4] 이력관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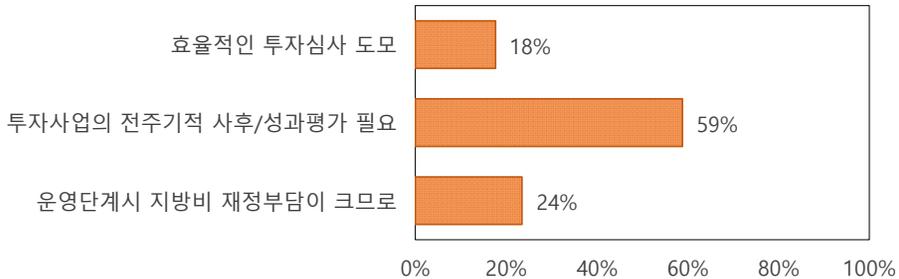


5) 이력관리 범위 확대(운영단계 관리)

- 현재는 준공단계(당초 총사업비 집행완료)까지만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규칙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손실까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단계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함
- 응답자 대부분은 운영단계까지의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다만 필요는 하나 현재 주어진 인력 및 예산 하에서는 운영단계까지 확대가 어렵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있음
 - 현 시점에서 운영단계 관리의 한계를 지적한 응답자는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이나 적자 등을 예상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익(實益)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투자사업의 전주기적 평가 및 성과평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활용 측면에서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임
 - 운영단계까지 관리되어야 투자사업의 성과가 관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또한 건설공사 이후 운영비는 100%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단계 이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동일한 맥락에서 공공사업 추진시 건설만 하고 운영에 대해 소홀하기 때문에 운영적자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그림 Ⅲ-5]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이유



- 추가로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어떤 사업유형 위주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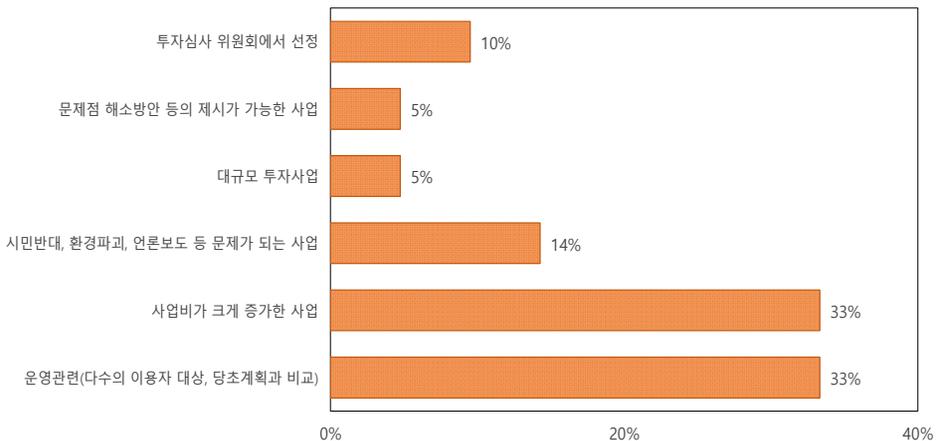
- 대부분 문화·체육·관광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나 수송 및 교통 부문 사업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됨
- 청사의 경우, 수요추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운영단계 이력관리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시 고려사항

- 이력관리 결과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을 현재 중점관리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현재는 의뢰서상 총사업비, 일정 등과 비교하여 변동이 크고 재심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검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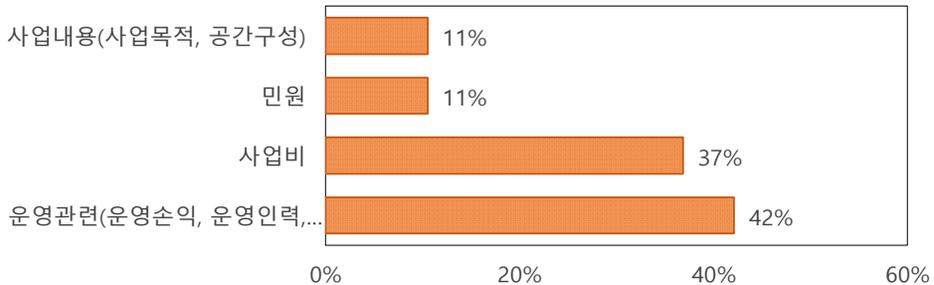
- 전문가 델파이 결과,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다음 7가지로 답변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응답유형을 중복적으로 답변하기도 함
 -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기준은 재정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식별하는 문제임
 - 따라서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운영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를 차지함
 - 또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업 등 재심사 대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일한 비중인 33%를 차지함
 - 시민의 반대나 민원, 환경파괴 문제가 있는 사업, 언론에 보도된 문제사업, 또는 지자체 공약사업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를 차지함
 - 그 외 기타 의견으로 문제점 해소방안 제시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 한다는 의견,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그림 III-6]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지표로는 현재는 준공 전까지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함**
 -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와 연계되어 당연한 응답결과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준공 시점 전까지의 사업추진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Ⅲ-7]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지표



- 예를 들어, 각 추진단계별(완공 전까지 추진단계와 운영단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함

- 완공 전까지 추진단계
 - 사업목적: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 공간구성: 당초 계획했던 공간구조의 30% 이상 변경
- 운영단계
 - 운영손익: 당초 계획한 운영손익(특히 적자)이 30% 이상 초과
 - 운영인력: 당초 계획한 인력의 10% 초과 여부
 - 운영방식의 변화: 지역 및 위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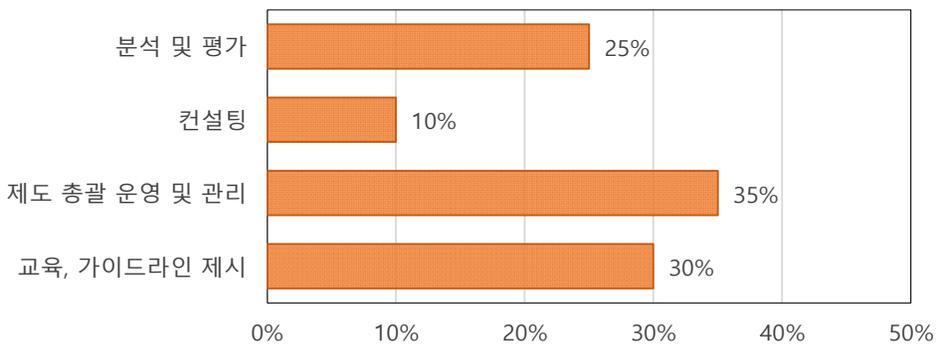
나. 투입 및 과정

1) 이력관리 법정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 이력관리 수행주체는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이후 LIMAC이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
 - 즉 법정 타당성조사 기관이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지원기능의 일부로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그러나 이력관리 제도의 업무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현재 LIMAC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력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이력관리 법정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권한 및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함
 - ① 제도 총괄 운영 및 관리
 - 이력관리 제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나, 전문기관으로서 적정 인력 및 예산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e-호조 등 이력관리 DB 관련 시스템 접근을 부여받아야 하며, 지자체 연구원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투센터 등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이력관리 전문기관(LIMAC)은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③ 전문기관으로서 분석 및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심층분석, 유형별 사례 조사 등 실시
 - 다만 이력관리 전반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④ 지자체 대상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컨설팅

[그림 Ⅲ-8]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 그 외에 이력관리 수행주체 선택과 관련해서 몇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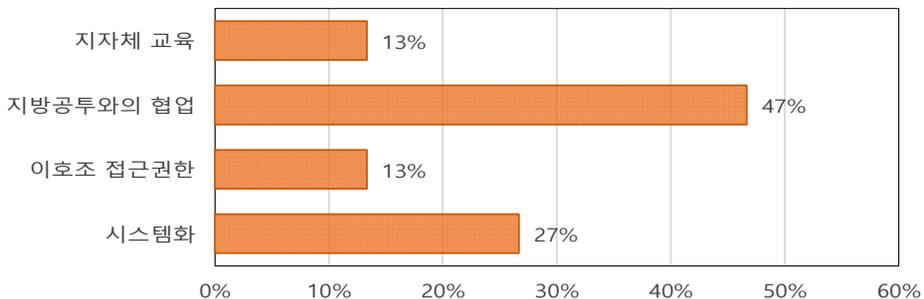
- (수행주체의 통일성) 이력관리 수행주체가 분산되었을 때, 다시 말해 2개 이상의 기관이 이력관리 제도를 관리 및 운영할 경우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신뢰성) 이력관리 수행을 위해 기록·관리 업무는 향후 차세대 e-호조 등 시스템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 및 평가하는 업무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기관이 아닌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보유한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
- (전문성) 향후 이력관리 결과 활용을 강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확인 및 기준초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따라서, 이력관리 제도를 기초로 한 사업판단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

2) 이력관리 자료의 신뢰성 제고

- 현재 이력관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시 각종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 신속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자료 제출시 시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와와 협업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를 차지함
 - 다만 지역별로 공공투자센터의 규모와 업무 소화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e-호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3%, e-호조와 연계뿐만 아니라 자체 시스템화에 대한 의견이 27%를 차지함
- 그 외 지자체 교육이 13%를 차지함

[그림 III-9]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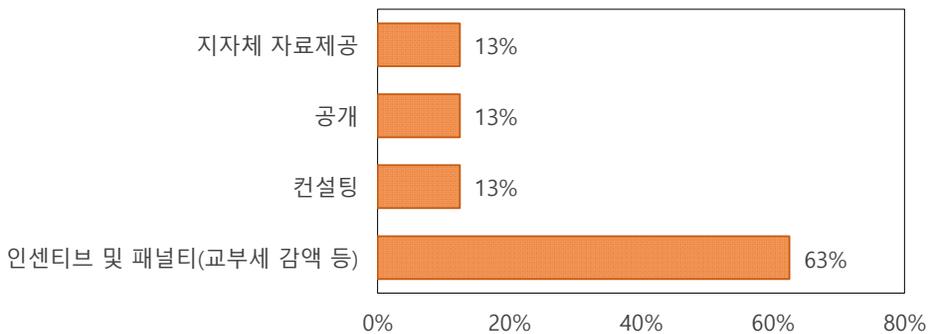


다. 결과 및 환류

1) 이력관리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방안

- 현재 규칙상에는 이력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칙상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력관리 평가결과가 어떻게 환류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함
- 우선 개별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환류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조사됨
 - 이력관리 결과에서 문제성 있는 사업은 패널티(예: 교부세 감액, 수요산정 등에서 반영)를 주는 등 상벌 제도 도입을 제시한 의견이 63%를 차지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됨
 - 그 다음으로 이력관리 결과 공개와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각각 1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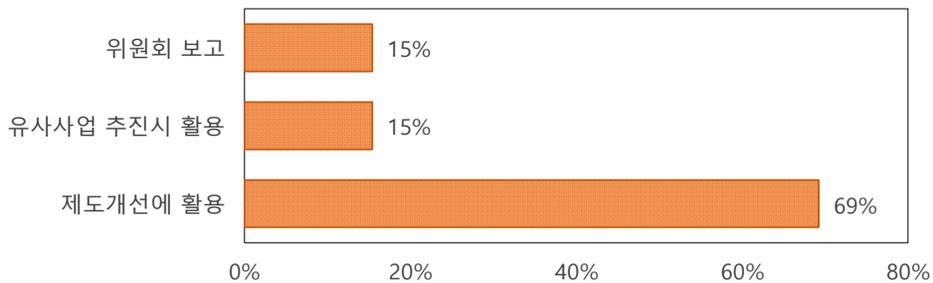
[그림 Ⅲ-10] 이력관리 결과 환류방식



□ 이력관리 결과의 전반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조사됨

- 우선 제도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9%를 차지함. 즉 향후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그 다음으로 유사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5%를 차지함

[그림 III-11] 투자사업 이력관리 활용방법



2) 유사제도와와의 연계 필요성

□ 이력관리와 유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가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및 500억원 자체심사 사업
- 평가주체 : 지자체는 사업정보 기록·관리를 담당, 행안부와 LIMAC이 분석 및 관리
- 평가내용 : 매년 당초 투자심사 대비 사업수행 변경내용(공사비, 일정, 재원 등)
- 평가결과 환류 : 부실사업에 대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재정사업평가

- 대상 : (투자사업) 시도 5억원이상/ 시군구 2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시도 및 시군구 2억원 이상

- 평가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기도 함
- 평가내용 : 사업의 “계획-관리-성과/환류” 등 측면에서 지자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구분함
- 평가결과 환류: ‘미흡’이하 등급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대부분 도로사업)
- 평가주체 : 사업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
- 평가내용 :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평가(공사비, 일정, 안전성 등) 수행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수요 및 B/C) 및 사업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를 평가하도록 함
- 평가결과 환류 :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건설기술진흥법」 제 52조)

- 일부 투자사업은 중복하여 사후평가를 받고 있으나, 각 제도별로 평가주체 및 방법, 환류체계는 다름
- 이력관리 제도가 유사제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는지, 특히 환류측면에서 연계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44%,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1%로 조사됨
- 특히 주요재정사업평가와 연계하여 예산부서가 일괄관리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69%)
- 다만 일부는 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제도의 목적과 환류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제시함
- 또한 금액기준 및 사업규모, 검토규정 및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간 연계로 얻어질 실익이 적다는 점이 지적됨

- 특히 현재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와도 목적이 상이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평가주체와 대상사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보다는 투자심사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외에 제시된 유사제도 외에 지자체 합동평가, 자체평가, 재정분석에 이력관리 수행여부 관련 항목을 넣어 지방자치단체의 이력관리 수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라. 기타 개선사항

- 기타 이력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문기관의 역할,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함

〈표 Ⅲ-3〉 기타 제도개선 사항 관련 의견

구분	세부 내용
법적 기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력관리의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이력관리 제도의 운용지침이나 운용규정 등 마련 필요 - 이력관리 매뉴얼에는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 예산 부서의 권한과 책임, 지방공투센터의 지원역할 등 제시 필요
과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투자심사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을 '(가칭)이력관리 자문위원회'나 '(가칭)이력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필요 -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의 사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와의 업무 협약과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
결과 활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력관리를 통한 데이터 및 자료를 공유하고 지방공투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들이 제시 필요 -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력관리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LIMAC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면서 전 자치단체의 이력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 - 이력관리 제도는 중장기적 과제로서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추진부서에 사업추진 표준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투자심사 시 사업추진 표준 및 운영 기준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효율적인 심사에 기여 필요
전문기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만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별도 지정 및 운영 필요 -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 지원, 예산 지원 등 필수 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적 관리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의 주체에 대한 고민 필요(예:지방자치단체, 지방공투의 역할 등). -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서 LIMAC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입력, DB 관리 · LIMAC: 데이터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재확인과 수정, 결과 활용 - 투자심사 내용(이력관리, 중점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시스템)의 도입 필요

제3절 2차 델파이 조사

1. 조사내용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타당한 대안을 조사함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이력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내용, 환류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도출되어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항목은 ①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확대 여부, ②이력관리 관리 범위 및 관리내용, ③이력관리 결과 환류 및 환류방안, ④전문기관의 역할로 구성함
- 각 조사항목별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으며, 대안별 장단점을 간략하게 제시함

가. 이력관리 대상사업

1) 1안(현행유지)

- 1안(현행유지)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및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업(2022년 기준 1,666건)을 모두 포함하는 안임
 - 다만 ①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에 현실적 한계 및 ② 매년 약 4,000여건의 시도 의뢰심사 또는 자체심사, 시군구 자체심사는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음

2) 2안(축소)

- 2안(축소)은 (2-1안: 대규모 사업)과 (2-2안: 국비포함 사업)으로 구분함
- (2-1안: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임
 - 현행 관리대상의 20%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DB 수집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함
- (2-2안: 국비포함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4(국고보조금의 관리)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교부 및 집행실적을 취합 및 공표하는 국비 지원사업만 집중 관리하는 안임
 - (2-2안)에 따른 사후관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가능하나, 자체재원 대규모 사업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3) 3안(확대)

- 3안(확대)은 (3-1안: 전면 확대)와 (3-2안: 단계적 확대)로 구분함
- (3-1안: 전면 확대)는 전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안임
 - 관리대상을 전면 확대 시 현행 대상 사업은 LIMAC이 관리하고, 확대 대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 전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나, 이력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대상, 수행기관, 업무범위 등) 부재 및 위상이 낮은 상태에서 대상 확대 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불투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됨

□ (3-2안: 단계적 확대)는 1~3단계로 이력관리 제도 제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전체로 확대시, 전체 관리대상 사업은 약 4,000여건임
- 이력관리 제도의 근거법령 전문기관 지정, 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제도 운용 제반여건에 따른 단계적 확대임
 - 1단계 (현행보다 축소)
 - 2단계 (현행 수준으로 회복) 전문기관 법적 지정 및 별도 인력/예산 확보 후
 - 3단계 (확대) 시도 의뢰심사 및 자체심사, 시군구 자체심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 기관 지정 등 수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후

나.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1) 1안(현행유지)

□ 1안(현행유지)은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집행단계(사업 준공/완료)까지 관리하는 안으로 제시함

- 이력관리 기간이 사업완료로 한정되어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2) 2안(운영단계까지 확대)

□ 2안은 관리범위를 투자사업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안임

- 운영단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할 경우, 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성과 파악이 가능함
- 다만, 이력관리 제도의 법적근거(대상, 수행기관, 업무범위 등) 부재 및 제도의 위상이 낮은 상태에서 관리범위 확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불투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며, 주요재정사업평가와 중복될 수 있음

- 주요재정사업평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로 수행되며, 이력 관리의 목적과 환류방식(해당사업 예산삭감)이 상이함

다. 이력관리 결과 환류 및 환류방안

1) 1안(현행유지)

- 1안(현행유지)은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집행단계(사업 준공/완료)까지 관리하며,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자체관리계획 수립 요청 및 이행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라 할 수 있음
 -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관리계획만 세우며,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사항도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2안(적극적 환류)

- 2안은 현행보다 적극적인 환류방안으로 (2-1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와 (2-2안: 컨설팅), (2-3안: 자료 공개)로 구분하여 제시함
 - (2-1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는 다음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시함
 - ①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감액 또는 보정수요에 반영)
 -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수용도 제고 효과가 있으나, 감액 시 감사제도와 중복되고, 감액 또는 보정수요 반영 시 불교부단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함
 -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효과가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 설계에 한계가 있음
 -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연계가 강화될 수 있으나, 보통교부세나 합동평가지표 반영 방안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수용도가 낮음

- ④ 행정안전부 각종 포상제도에 반영(행안부 지방재정대상 등 시상)
 - 인센티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효과가 크지만, 중점관리사업 등 패널티 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함
- ⑤ 투자심사시 반영
 - 당해연도 투자심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예: 심사의뢰 제한 등)을 주는 방안으로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효과가 있음
- (2-2안: 컨설팅)은 다음 방식을 제시함
 -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정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재로 관심도가 낮을 수 있고,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2-3안: 자료 공개)는 자료 공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방재정365에 중점관리사업 공개
 - 지방재정365에 전체 이력관리 자료 공개

라. 전문기관의 역할

□ 1차 델파이에서 조사된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도록 함

- ① 제도 총괄운영 및 관리
- ②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 ③ 이력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 ④ 컨설팅

2. 2차 델파이 분석결과

가.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확대 여부

1) 이력관리 대상사업 개편방안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①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현행유지하는 것과 ②대규모 사업 또는 국비포함 사업으로의 축소방안, ③지방 재정투자사업 전체로의 확대하는 개편안 중 타당성이 높은 대안과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함
- 응답자의 70%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고, 25%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표 Ⅲ-4〉 이력관리 대상사업 개편방안에 관한 델파이 결과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개편방안 중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① (1안) 현행 유지(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25%
	② (2안) 축소	5%
	③ (3안) 확대	70%
	계	100%

- 현행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현재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 후 인력 충원 등 상황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력관리 대상 사업은 현행 유지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 예산, 관련 자료와 정보 협조 없이 업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여, 점진적 확대를 모색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확대를 답변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금액, 주민요구도 등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시·도 및 시·군·구 심사 대상이 건수도 많고 전체 금액도 많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이력관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만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규모가 적은 사업이 오히려 건수가 많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또한 지역에서 투자심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추진되는 것이 많아 담당자들은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노력하고 통과 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력관리를 통해 시도 심사 또는 시군구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축소를 답변한 의견으로 국비를 포함한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자체심사 대상까지 확대해야 함을 제시함

2) 관리대상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의견

- 만약 관리대상을 축소 또는 확대할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안 별로 타당성을 조사함
 - 축소의 경우는 심사기관과 상관없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74%,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21%로 타당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200억 원, 시군구는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관리대상 확대의 경우는 전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하고, 법정 전문기관 지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제도의 운용

- 을 위한 제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단계적 확대가 타당하나, 관리 대상사업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유형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Ⅲ-5〉 관리대상 축소 또는 확대의 대안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관리대상을 축소할 경우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① (2-1안) 심사기관과 상관없이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4%
	② (2-2안)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국비가 포함된 사업	21%
	③ 기타 시도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사업과 시군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5%
	계	100%
관리대상을 확대할 경우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① (3-1안) 확대	10%
	② (3-2안) 단계적 확대	85%
	③ 기타 단계적 확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대상사업의 확대(추가)는 전체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유형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한정 검토가 필요함	5%
	계	100%

나.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1) 이력관리 관리범위 개편방안

- 이력관리의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개편방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집행단계까지 관리 중인 현행 유지보다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85%를 차지함
- 다만, 운영단계에서의 관리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리범위에 따라 관리항목, 사업유형,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음

〈표 III-6〉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개편방안에 관한 델파이 결과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개편방안 중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① (1안) 현행 유지	15%
	② (2안) 운영단계까지 확대	85%
	계	100%

2) 관리범위 현행유지

□ 관리범위를 현행 유지할 경우, 관리항목으로 적절한 항목을 7가지로 제시하였고,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질의함

-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항목별 정보 포함) 및 집행내역이 17%, 다음으로 사업량 및 추진 시 변경사항과 투자심사 결과 및 조건별 이행 여부가 16%로 나타남

〈표 III-7〉 관리항목(중복선택)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관리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관리항목으로 적절한 항목은?	①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항목별 정보 포함) 및 집행내역	17%
	②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12%
	③ 사업량(부지 및 연면적, 세대수, 도로연장, 시설용량 등) 및 추진 시 변경사항	16%
	④ 일정정보(보상, 착공, 준공 등) 및 추진 시 변경사항	13%
	⑤ 투자심사 결과 및 조건별 이행 여부	16%
	⑥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
	⑦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 여부 및 조치사항	12%
	⑧ 기타	2%
	지방의회 및 언론 등 동향	2%
	미추진 사유, 투자심사 제출 사업비 및 규모 및 실시실계 사업비 및 규모	
	계	100%

□ 관리범위를 현행 유지할 경우,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기타 의견을 포함하여 9개의 의견에 순위를 요청하였고, 각 응답자의 답변에 가중치를 두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계산한 후 최종 순위를 결정함
-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으로 응답됨

〈표 III-8〉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현행 유지)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순위
관리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①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14%	1
	② 총사업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사업	13%	4
	③ 투자심사 조건 이행에 대해 추적이 필요한 사업	14%	3
	④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11%	6
	⑤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11%	7
	⑥ 국비 포함 사업	10%	8
	⑦ 사업이 일정 개월(년도) 이상 지연된 사업(준공 기준)	12%	5
	⑧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사업지연(착공기준) 4년 이상, 재원계획 변경, 사업부지 변경)	14%	2
	⑨ 기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비용적정성 검토결과 비용과 소 추정으로 의심되는 사업 지방채 발행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사업	1%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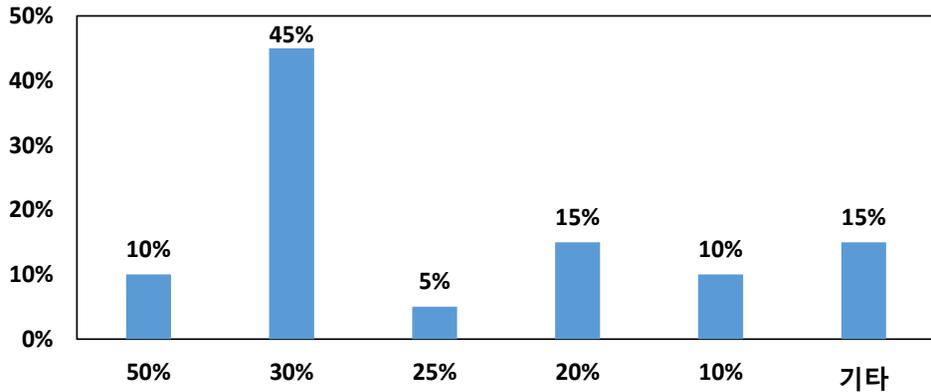
〈표 III-9〉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①	44%	6%	6%	11%	11%	11%	11%	-	-
②	17%	22%	17%	11%	6%	11%	11%	6%	-
③	6%	22%	33%	22%	6%	11%	-	-	-
④	-	11%	17%	17%	6%	11%	11%	22%	-
⑤	6%	-	11%	11%	17%	11%	33%	6%	-
⑥	6%	6%	-	-	6%	11%	17%	44%	6%
⑦	-	6%	11%	11%	33%	17%	11%	11%	-
⑧	22%	28%	6%	11%	17%	11%	-	6%	-
⑨	-	-	-	6%	-	-	-	-	6%
계	100%	100%	100%	100%	100%	94%	94%	95%	12%

□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는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3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총사업비 증가 20%, 50%, 10% 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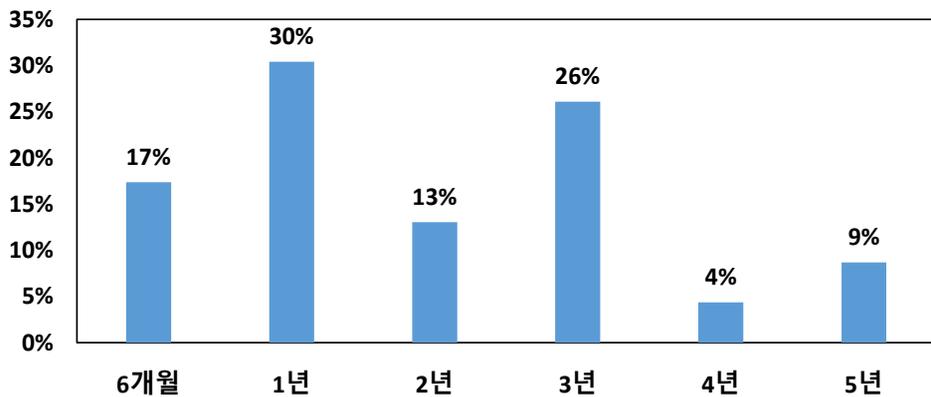
- 30%의 경우 재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2,000억원 이상은 10%, 이하는 15% 이상 증가하는 사업, 25% 또는 30% 이하 모든 사업 중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 25% 이상 증가하는 사업, 10%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사업이 있음
- 또한 총사업비 증가는 1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유형과 특성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림 III-12]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총사업비 증가 정도



- 중점관리 선정기준으로 사업지연(준공 기준)은 어느 정도 지연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으로 1년이 30%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함
 - 사업지연은 1년을 기준으로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예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림 III-13]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지연(준공 기준) 정도



3) 관리범위 운영단계까지 확대

□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중점관리사업 선정은 사업의 진행단계상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사업준공/완료시점 이전 추진단계와 이후 운영단계 모두에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현행과 같은 사업준공/완료시점 이전의 추진단계가 40%로 나타남

〈표 III-10〉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적절한 진행단계

항목	답변내용	응답비율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적절한 진행단계는?	① (1안) 사업준공/완료시점 이전 추진단계	40%
	② (2안) 사업준공/완료 이후 운영단계	15%
	③ (1안)과 (2안) 단계 각각 중점관리사업 선정	45%
	계	100%

□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의 우선순위를 요청하였고, 마찬가지로 각 응답자의 답변에 가중치를 두어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을 계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함

〈표 III-11〉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의 우선순위

항목	답변내용	응답비율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은?	① 주민대상 각종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65%	25%	5%	5%	-	1	
	② 관광시설	25%	35%	35%	0%	-	2	
	③ 청사	5%	5%	10%	60%	5%	4	
	④ 도시개발, 산업단지(자산센터 포함)	5%	30%	40%	5%	10%	3	
	⑤ 기타	1-4번까지 포함되지 않는 BTL, BTO 사업	-	-	-	10%	5%	5
		대규모 기업지원사업 혹은 일자리 지원사업	-	-	-	10%	5%	
	연론 보도 등 주민 관심 높은 시설	-	-	-	10%	5%		
	계	100%	95%	90%	80%	20%		

-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사업유형별 적절한 관리항목에 대한 의견은 주민대상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비가 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영수익이 17%임

〈표 III-12〉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사업 유형별 관리항목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별 관리항목은?	① 주민대상 각종 공공 시설(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비(인건비, 운영과리비, 유지보수비 항목별)	20%	
		운영수익(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 항목별)	17%	
		이용객 수	15%	
		기타	할인 및 면제정책	5%
			운영적자 규모 및 추이	
			관리가 아닌 정책에 관한 인사이트 제공 등을 위해 여러 항목 추가 필요	
	가동률- 부실시공 사례 고려			
	② 산단 및 지식센터	분양률 및 가동률(입주율) 우발채무(보증채무, 예산 외 의무부담) 잔액 추이	16%	
	③ 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률, 상부건축 관련 진행상황	15%	
		우발채무(보증채무, 예산 외 의무부담) 잔액 추이		
	④ 펀드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능성 및 부담 규모	6%	
		수익률		
		지자체의 재정자원부담		
		수익성(원금대비 수익 비율), 회수금액 등 회수기간의 회수율		
	⑤ 기타	농어촌 유동지원시설	생산량대비 실제 소화량, 어업인 공판장의 경우 부수시설들의 본래목적 활용정도	6%
		축제행사성사업	축제행사 운영비, 이용객, 축제 필수경비와 호객경비 구분	
		관광시설	방문자 수, 운영적자 규모	
이용객수				
도로, 철도 관련사업		교통량 및 이용객 수		
주차장	운영비, 운영수익, 주차수요 지표(점유율, 회전율, 주차시간)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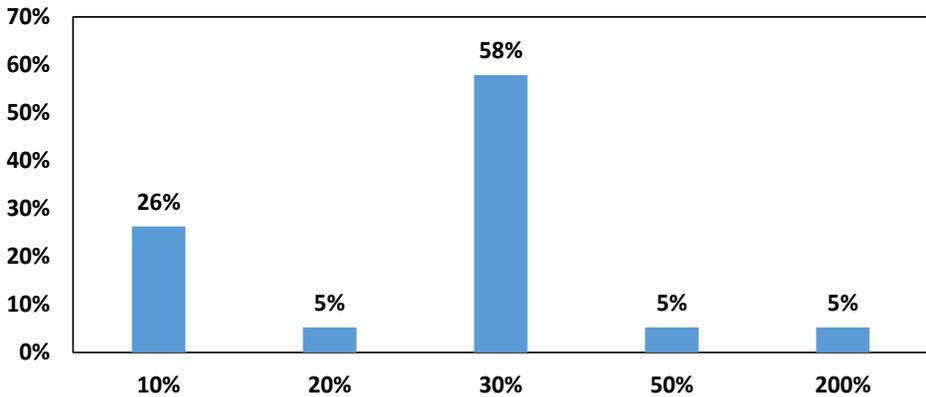
-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기준으로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운영비 과다, 운영실적 달성 미흡 사업이 57%로 가장 많이 선택됨
- 유사시설과의 비교에서 운영비 과다, 운영실적 미흡사업도 29%로, 투자심사 뿐 아니라 유사시설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의견으로 투자심사 시와 유사시설과의 비교를 조합하여 고려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유사시설 비교의 객관적 기준, 자료,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도 제시함
 - 기타 의견으로 사업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주민대상 각종 공공시설에 대하여 운영수지로 50%이상 적자 또는 100억원 이상 적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발생 여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III-13〉 적절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운영단계로의 확대)

항목	답변내용	응답비율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적절한 기준은?	①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하여 운영비 과다, 운영실적 달성 미흡 사업	57%	
	② 유사시설 비교하여 운영비가 과다, 운영실적 미흡 사업	29%	
	③ 기타	사업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시설의 경우 유사시설 비교 필요함	14%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운영수지만 50%이상 적자인 경우, 혹은 100억원이상 적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발생 여부에 따라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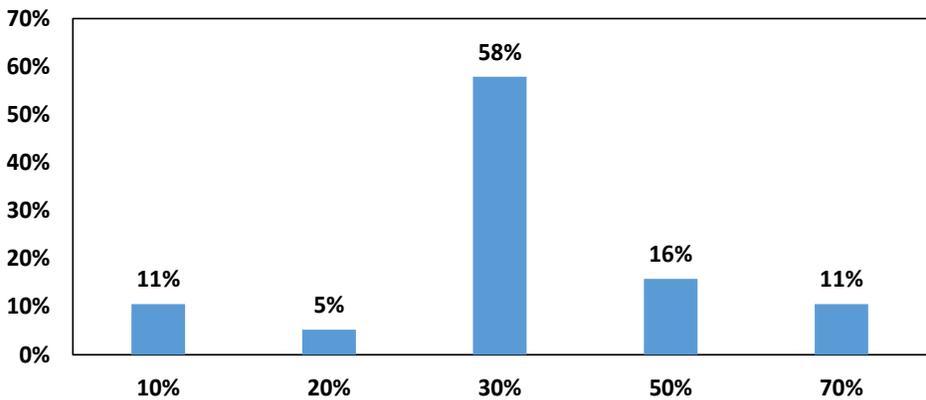
-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운영비 과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3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 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남

[그림 III-14] 투자심사 당시 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운영비 과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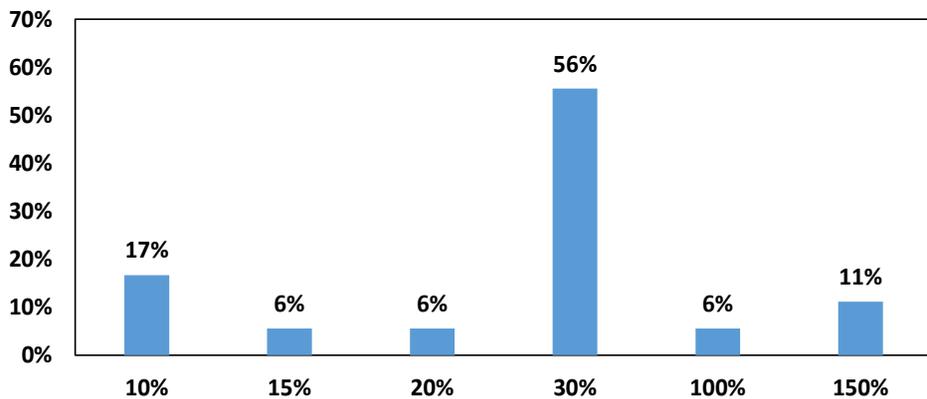
- 운영실적 목표 대비하여, 미흡의 기준으로 30% 달성 미만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림 III-15] 투자심사 당시 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운영실적 미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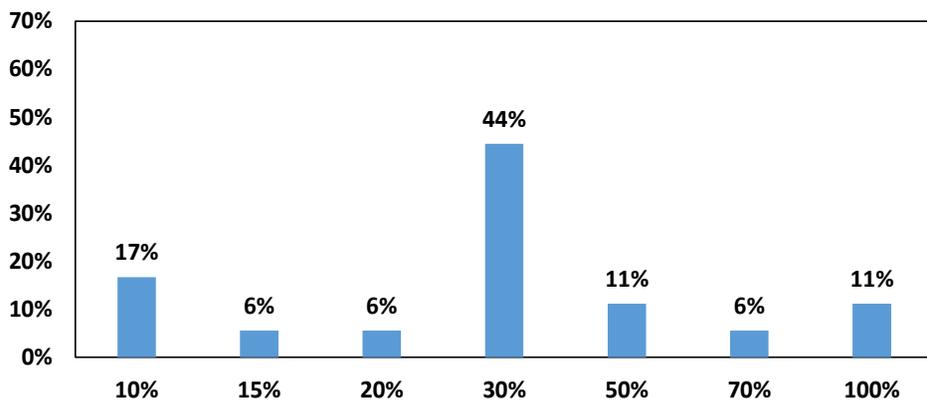


- 유사시설과 비교할 때, 운영비 과다 기준과 운영실적 미흡의 기준은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30%를 가장 많이 응답됨
- 평균 운영비 대비 30%이상사업, 평균 운영실적 대비 30% 달성 미만 사업의 답변이 가장 많았음

[그림 III-16] 유사시설과 비교할 시, 운영비 과다 기준



[그림 III-17] 유사시설과 비교할 시, 운영실적 미흡 기준



□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관리기간 및 주기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준공 후 3년 1회 실시가 36%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됨

- 다음으로 준공후 5년 1회, 매년 실시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III-14〉 관리 기간 및 주기(운영단계로의 확대)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적절한 관리기간 및 주기는?	① 준공 후 3년 1회 실시	36%	
	② 준공 후 5년 1회 실시	27%	
	③ 매년 실시	14%	
	④ 기타	격년제 2년마다 실시	23%
		2~3년 주기로 시행하되 사업기간 10년 정도 이력관리 필요	
		준공 첫해, 매 5년, 민간투자 사업의 종합평가, 성과평가 참고 주체를 지자체로 해서 매년 실시가 바람직함	
		준공 후 5년 내에 3회 실시(1년차, 3년차, 5년차)	
	매년 모니터링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평가		
	계	100%	

다. 이력관리 결과 환류 및 환류방안

- 이력관리 결과의 환류 및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컨설팅, 자료 공개 등 현행보다 적극적인 결과 환류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임

〈표 III-15〉 이력관리 결과 환류/활용 방안에 대한 델파이 결과

항목	답변내용	응답 비율
개편방안 중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① (1안) 현행유지	11%
	② (2안) 현행보다 적극적인 결과 환류방안	89%
	계	100%

-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환류할 경우, 제시된 항목을 중복으로 선택한 결과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타남**

〈표 III-16〉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결과를 환류할 경우 적절한 대안(중복선택)

답변내용	응답 비율
(2-1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	
①-1 보통교부세 감액	5%
①-2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2%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5%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반영	5%
④ 행정안전부 각종 포상제도에 반영	10%
⑤ 투자심사시 반영	15%
(2-2안) 컨설팅	
⑥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23%
(2-3안) 자료 공개	
⑦ 지방재정365에 중점관리사업 공개	20%
⑧ 지방재정365에 전체 이력관리 자료 공개	15%
계	100%

라. 전문기관의 역할

-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제도 총괄 운영 및 관리, 이력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컨설팅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모두 중요하다는 것과 이력관리 분석을 통해 법령과 제도의 개선안 검토가 있음

〈표 III-17〉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답변내용	응답비율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제도 총괄운영 및 관리	65%	10%	5%	15%	5%	1	
②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10%	40%	30%	20%	-	3	
③ 이력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20%	45%	35%	-	-	2	
④ 컨설팅	-	5%	30%	60%	5%	4	
⑤ 기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 설계 및 공유	5%	-	-	5%	10%	5
	운영에 대한 이력관리 시 사업 유형별 우수사례 견학 및 교육						
	모두 중요함						
	이력관리 분석을 통해 법령, 제도 개선안 검토						
계	100%	100%	100%	100%	20%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기타 이력관리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표 III-18〉 기타 제도개선 사항 의견(2차 델파이 조사)

구분		세부 내용
환류 및 활용 관련 방향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와 연관시키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함 -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사업 추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에 앞서서 현행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급하게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임
	단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는 우선 축소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이력관리 제도 마련 및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후 단계별 확대 검토 필요 - 이력관리 제도의 가장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제약(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인센티브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도입한 후 추후 패널티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면 사업 기획단계에서 운영계획을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줄일 수 있음 -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강력한 제재 및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함 - 환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실천이 어려운 구조임 - 환류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과 운영기간의 체계적 이행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개선과 환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환류 방안 별 의견	우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 공유제도를 운영하여 유사 사업추진시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재정 건정성 도모가 필요함 - 사업계획단계부터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토록 우수사례 및 표준안 제시와 관련 교육이 필요함

구분	세부 내용
패널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부서에 직접 패널티를 주지 않고, 사업부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체 교부세에 패널티를 간접적으로 주게 된다면, 사업부서가 받는 패널티 영향은 감소하게 됨 - 투자심사 통과이후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장 신규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이후 투자심사 평가 지표에 반영'이 필요함. - 정치적 비용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직접 패널티는 될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도록 부서 실링 예산을 삭감토록 하는 지침이 필요함 - 투자심사 통과 이후 실제 착공되지 않은 사업의 부서별 총액 규모에 대한 제약도 필요함 - 개별 사업운영의 결과를 합동평가지표나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이력관리 데이터를 관련 분야 학자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하여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의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심사에 대한 제약조건도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 내 의회 및 언론에 의한 정치적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력관리 제도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기능의 역할이 필요함
법적·제도적 기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임 - 행안부에서 이력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의 특성(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등 보상비 실비 투입 여부 관련) 등 총 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 - 이력관리 제도 구현 내용을 면밀하게 차세대 e-호조 등에 탑재하여 사업부서(작성), 예산총괄부(승인)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필요함 - 추후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제도의 적용방식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관련 논의 필요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AC이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인력 총원 및 예산 확충 필요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채용 및 양성 필요 -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총원 및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전문기관은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 - 행정 안전부 및 각 지자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초기제도를 마련·운영 후 실효성 있는 제도 확대 검토 필요 - 지방공투와 업무 분담을 통해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가 필요함 - 공투센터가 없는 시도의 사정도 감안되어야 함

바. 소결

-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수행한 결과 중 응답 비율이 높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전체로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법적 지정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관리범위는 운영단계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유형으로는 주민 대상의 공공시설에서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하고 운영비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때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계획대비 운영비 과다, 운영실적 달성 미흡 사업이 가장 많이 응답됨
 - 관리기간 및 주기는 준공 후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이력 관리 결과 환류 및 환류는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패널티, 컨설팅 자료 공개 등이 필요하고, 전문 기관은 제도의 총괄 운영 및 관리와 이력 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기타의견으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조사 대상 중 공무원과 시도연구원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제Ⅳ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단계적 발전방안

제1절 환경적 측면

제2절 투입 및 과정적 측면

제3절 활용적 측면

제4절 종합

제1절 환경적 측면

- 본 절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결과 및 관련 현황을 토대로 이력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이력관리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재정규모 확대와 함께 증가 추세이나,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으므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이력관리의 대상사업을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 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시·도 의뢰심사와 시·도 자체심사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도 개편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다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함윤주 외(2022)에서 수행한 이력관리 담당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업무과중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력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직, 인력, 예산 등과 연계하여 접근이 필요함
 - 현행 이력관리 제도는 중앙투자심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향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예정임. 현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LIMAC이 전문기관 역할을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시도의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시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이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함

□ 대상 확대시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시도의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시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요구되므로 해당 기관을 전문기관 지정하고 실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해당기관에 마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 가능함
- 또한 차세대 e-호조를 이용한 투자심사 활성화 및 이력관리 DB 구축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 즉 전문기관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정확한 자료 구축이 가능한 시점에 제도 도입이 가능함

□ 단계별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 1단계(~2024년) : 2023년부터 차세대 e-호조를 오픈할 예정이나, 투자심사 부문에 시스템 정착 및 이용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대상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기간으로 설정함
 - 이력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제로는 전문기관 지정과 역할 확대에 대한 명문화, 이력관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대상 교육 등임
- 2단계(2025년~) : 2025년부터 차세대 e-호조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안정화가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 실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2025년에는 시범지역 선정하여 실시하고, 시행착오 및 제도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 이력관리 범위 확대는 이력관리 투자사업의 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력관리 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다만 함윤주 외(2022)에 제안한 바와 같이 투자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으며, 모든 사업이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순차적으로 시급한 사업유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운영단계 관리가 시급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유형별 운영단계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계량화 가능한 성과 평가지표를 사업유형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업유형별로 의뢰서에 공통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공통성과지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자율성과지표로 구성할 수 있음
 - 성과지표는 사전계획단계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운영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여야 함
 -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등 관련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운영단계 평가 기준은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①투자심사 의뢰서 대비 성과 평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되, 사업유형에 따라 ②유사사례 대비 우수/미흡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단계별 세부계획은 함윤주 외(2022)에 제시된 세부계획(안)을 참고하되 최근 여건 변경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1단계(2024년) : 운영단계 평가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역할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 수집 체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의 정착 및 이용 활성화와 연계하여 운영단계 평가를 위한 기반 조성 기간이 필요함
 - 2단계(2025년) : 시범적으로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개발사업, 펀드사업, 산업단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검토 및 관련 실적 수집하고 평가를 실시함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DB 수집 방안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함
 - 3단계(2026년~) : 2단계에서 수행한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운영단계 이력 관리가 필요한 사업유형을 재검토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DB 수집 방안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단계 이력관리 시범 실시할 수 있음

3.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중점관리사업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사업비 변경이며, 그 다음으로 사업량 변경과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별 이행 여부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점관리사업 기준에서도 총사업비 변경은 사업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정교하게 검토되고 있음
 - 다만 사업량의 경우,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량 변경내용을 기준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기에 정량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문제가 있음

- 투자심사 결과 조건별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건 유형별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사업의 주요 이행사항을 분석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2008~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결과를 받은 투자사업의 조건부 이행 항에 대한 단어 빈도수 검토를 수행함
 - 10번 이상 언급된 단어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유형(산업단지, 공원, 도서관 등), 조사, 부사 등은 제외하고 유의미한 단어 위주로 빈도수 검토를 수행함
 - 검토 결과, 운영과 관련한 단어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건부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시 운영단계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이력관리 범위 확대 관련 연차별 세부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단계까지 고려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점 검토가 필요함
 - 운영단계까지 확대 관리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총사업비, 자원, 일정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1〉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사항 단어 빈도분석

분류	빈도	세부 단어
운영	8,524	수입, 수익(창출), 수익금, 임대, 입주, 유치(방안) 비용(최소화), 인건비, 운영계획, 운영(관리)방안, 세부계획, 관리계획, 홍보방안, 프로그램, 콘텐츠, 수요(이용수요, 이용객, 관람객, 방문객, 관광객 등), 적자(최소화), 운영수지, 수지전망, 사후활용, 운용, 차별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1,414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1,366	국비 확보, 도비 확보, 예산
구체성	1,059	구체적인, 명확히, 구체적으로 등
관련 법령	630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령, 제반규정, 법령 등
사전절차	537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예비타당성 등
민원	519	민원, 주민, 주민설명회, 소음, 민원최소화, 지역주민 등
효율화	421	효율적인, 효율화, 효율적
타당성조사	362	재산정, 일반지침, 편익(추정), 할인율, 분석기간, 재분석 등
사업비	352	사업비, 총사업비, 신축비용 등
확보	329	확보, 확보방안 등
지방채	304	지방채, 발행, 발행액, 상환계획 등
공유재산	248	공유재산(관련)
규모	169	사업규모, 규모, 시설규모 등
이력관리	187	이력관리, 사후관리
안전	110	안전사고, 안전관리, 안전대책
협약	68	협약체결, 협약
일정	61	사업기간, 공사기간, 지연 등
기타		시설배치, 공정, 공공성, 미분양, 매입확약 등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2008~2022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분석

제2절 투입 및 과정적 측면

- 본 절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투자심사위원회 역할,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여건 변화를 토대로 이력관리 관련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이력관리 전문기관 역할

-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조문 신설(입법예고, ~2023.12.14.)에 따라 지정이 가능함
 - 따라서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법적 지정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역할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① 제도의 총괄 운영 및 관리, ② 이력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③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순으로 제시됨
 - 이력관리 대상사업 확대시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확대 대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시·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함윤주 외(2022)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시를 고려하여 제도를 총괄하는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함
 - ①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사업은 직접 이력관리 수행
 - ② 500억원 이하 자체심사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결과 상위평가 또는 메타평가 수행
 - ③ 이력관리 총괄기관으로 이력관리정보 축적·관리, 분석·연구 수행
 -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시도연구원 교육
 - ⑤ 운영단계 관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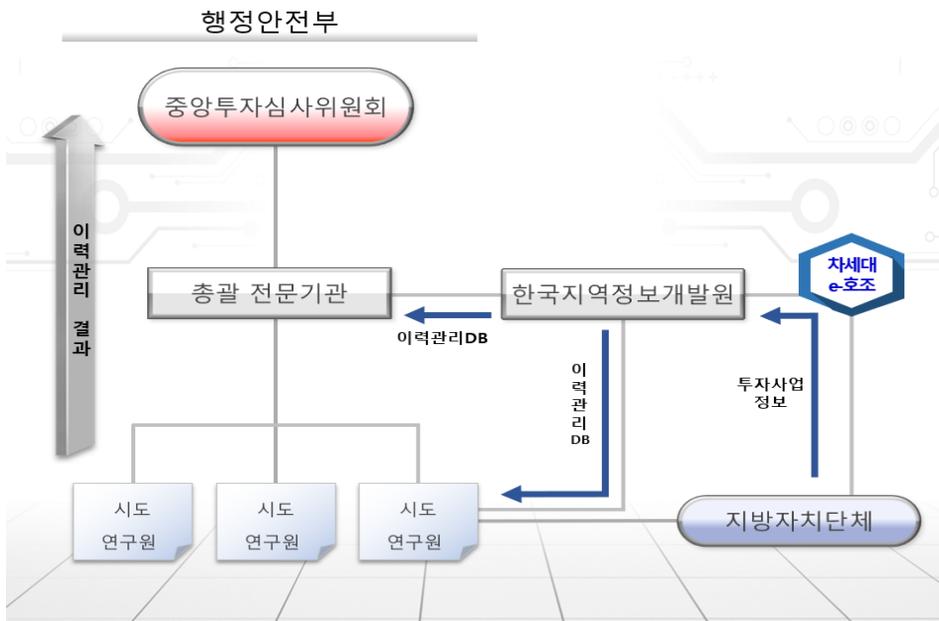
- 따라서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단계적 확대방향(관리대상 및 관리범위)과 연계하여 법적 위상 및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2.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

-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개편을 위해 향후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다음 2가지 안으로 이력관리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안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임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력관리 결과 보고 대상이자,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운영단계 이력관리 등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력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투자심사와 사후관리 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2안은 별도 이력관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임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외에 이력관리 전담기관 및 지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전담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전문가가 이력관리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하고, 투자사업의 관리 지속성 및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를 위해서는 시·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다만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연구원 내 공공투자센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대신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 신설 또는 기타 유관기관 내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우선 투자사업 이력관리 법정 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이력관리 대상 확대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함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4년에는 전담기관 관련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며, 2025년 차세대 e-호조 시스템 활성화 및 정착시기와 맞물려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1] 이력관리 거버넌스 구축(함윤주 외, 2022)



자료: 함윤주 외(2022), p.222, 그림 IV-3

제3절 활용적 측면

1. 환류방안 대안별 영향 검토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반영

1) 보통교부세 개요

-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현재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함(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됨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이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핵심이며,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임

- 2023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의 약 88.5%를 차지함

〈표 IV-2〉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2019	57,709,283 (100.0)	52,602,827 (91.2)	1,626,892 (2.8)	2,942,062 (5.1)	537,502 (0.9)
2020	50,322,101 (100.0)	44,926,519 (89.3)	1,389,478 (2.8)	3,320,970 (6.6)	685,134 (1.4)
2021	59,169,926 (100.0)	51,331,840 (86.8)	1,587,583 (2.7)	5,215,345 (8.8)	1,035,158 (1.7)
2022	81,044,923 (100.0)	70,414,236 (86.9)	2,177,760 (2.7)	7,567,673 (9.3)	888,254 (1.1)
2023	75,288,266 (100.0)	66,644,552 (88.5)	2,061,172 (2.7)	5,713,300 (7.6)	869,242 (1.2)

주: 2022년까지는 최종교부액, 2023년은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현황」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함(「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수요 자체노력으로 구성됨(행정안전부, 2023a)

- 기초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와 단위비용,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지방교부세법」 제7조)
 - 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해주는 방식임
 - ‘법정수요’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요 등으로 구분됨
 - ‘지역균형 등 수요’는 지역균형 수요, 지역관리 수요, 사회복지 수요, 시책수요로 구분됨
 - 이 중에서 시책수요는 일자리수요, 재난안전투자 등 범국가적 현안 사항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정수요임
 - 수요 자체노력은 세출 절감 및 예산 집행률 제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별 노력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가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 다음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으로 구성됨(행정안전부, 2023a)
- 기초수입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수입액의 80%로 산정함(「지방교부세법」 제8조)
 - 보정수입액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수입액 등의 80%로 산정함(「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
 - 수입 자체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항목으로 산정함

2) 보통교부세를 통한 환류방안

가) 기준재정수요액 중 보정수요(시책수요) 반영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방안으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시책수요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요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비용을 시책수요로 보전하는 방안임
 - 기초수요액의 일반행정비(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신규 시책수요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책수요는 보정수요의 ‘지역균형 등 수요’ 분야 중 하나로, 일자리수요, 재난안전투자 등 범국가적 현안 사항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신규로 도입된 수요임**
- 시책수요는 법령에 근거를 둔 정책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나 수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가적 필요나 정책방향에 더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보정수요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저하 가능성의 이유로 일몰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해 시책수요는 일몰제 적용 대상임
-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매년 시책수요의 신설 또는 통·폐합이 이루어지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시책수요의 신설도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가능함**
- 2023년 기준 시책수요는 취약계층보호구역, 고용감소지역, 일자리, 재난안전투자, 버스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미세먼지, 재해복구 대응,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업 지방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11개 항목임
 - 시책수요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2개와 11개가 적용되었으며, 그 중 9개 시책수요는 2년 연속 반영됨
 - 2022년 시책수요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수요, 지역균형뉴딜 수요, 정규직 전환수요는 2023년에 통합 또는 폐지되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 수요는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요는 미세먼지 수요로 통폐합, 정규직 전환수요는 시의성 부족으로 폐지되었음

○ 2023년에는 기업 지방이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수요가 신설됨

〈표 IV-3〉 보통교부세 시책수요 항목

시책수요	2022	2023
정규직전환	○	
취약계층보호구역	○	○
고용감소지역	○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	
일자리	○	○
재난안전투자	○	○
버스재정지원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
미세먼지	○	○
지역균형뉴딜	○	
재해복구 대응	○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	○
기업 지방이전 지원		○
소상공인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2023b).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2023년 기준 시책수요의 규모와 기준재정수요액 및 보정수요 대비 비중은 2022년 보다 증가함

- 2023년 기준 시책수요 총액은 3,002,850백만원이며, 2022년의 2,463,402백만원보다 539,448백만 원 증가하였음
 - 시·도 시책수요 총액은 2022년 1,002,409백만원에서 2023년 1,093,956백만원으로 91,547백만 원 증가하였음
 - 시·군 시책수요 총액은 2022년 1,460,993백만원에서 2023년 1,908,894백만원으로 447,901백만 원 증가하였음
- 2023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책수요 비중은 1.65%이며, 보정수요 대비 시책수요 비중은 9.33% 수준임

- 합계 기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책수요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3년 1.65%로 0.05%p 증가하였음
- 합계 기준 보정수요 대비 시책수요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23년 9.33%로 2.22%p 증가하였음
- 개별 시책수요의 평균 규모는 2022년 205,284백만 원에서 2023년 272,986백만원으로 67,702백만원 증가하였음
- 2023년 기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용 수요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고용감소지역·특별재난지역 수요 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됨

〈표 IV-4〉 연도별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중 시책수요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시·도	시·군	합계	시·도	시·군	합계	
시책수요(A)	1,002,409	1,460,993	2,463,402	1,093,956	1,908,894	3,002,850	
보정 수요	총액(B)	18,557,350	16,077,158	34,634,508	12,695,959	19,472,462	32,168,421
	비율(A/B)	5.40	9.09	7.11	8.62	9.80	9.33
기준 재정 수요액	총액(C)	72,390,485	81,738,337	154,128,822	85,741,043	96,119,853	181,860,896
	비율(A/C)	1.38	1.79	1.60	1.28	1.99	1.65

주: 불교부단체 수요 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책수요 신설을 통한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시책수요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시책수요 신설은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선연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4] 개정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책수요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책수요 신설을 통한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짐

-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형평성 측면에서의 한계)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서울특별시·경기도 분청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자치구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을 경우, 시책수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둘째,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중심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효과성 측면에서의 한계)
 - 셋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시책수요 신설을 통한 환류방안은 단기적 방안보다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적합함(시의성 측면에서의 한계)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될 경우,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신규 시책수요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인센티브 중심의 환류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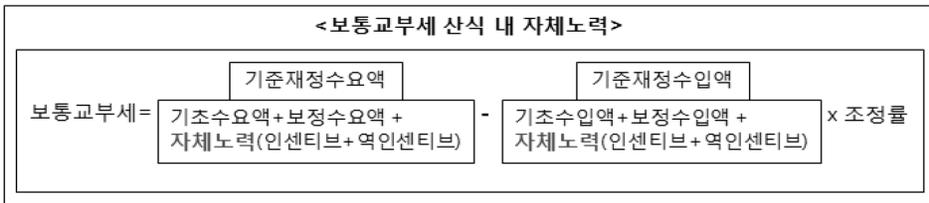
나) 기준재정수요액 중 자체노력 반영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활용도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방안으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적 지출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한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임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통해 상대적인 비율 기준을 설정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항목 중 ‘지방세 감면액 축소’는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은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함(최정우, 2020)
 -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각각에 대하여 자체노력 정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으면 패널티라고 부름(류영아, 2017)

- 세출효율화 노력에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 노력,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의 7가지 항목이 반영됨(「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 세입확충 노력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의 6 가지 항목이 반영됨(「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그림 IV-2]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개념도



자료: 류영아(2017)

- **자체노력 항목은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며, 2020년 16개에서 2023년 13개로 3개 항목이 감소하였음(행정안전부, 2023a)**
 - 2020년에는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 항목 중 1개 항목(지방청사 관리·운영)을 일몰폐지하고, 1개 항목(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신설함
 - 2021년에는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 항목 중 2개 항목(정규직 전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보정수요로 이관하여 폐지함
 - 2022년에는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 항목 중 1개 항목(민간위탁금 절감)을 폐지하였으며, 기준재정수입 자체노력 항목 중 2개 항목(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탄력세율 적용)을 통합하였음
 - 2023년에는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 항목 중 1개 항목(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을 신설하였음

〈표 IV-5〉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자체노력		2020	2021	2022	2023
기준재정수요의 세출 효율화	인건비 건전운영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	○	○
	업무추진비 절감	○	○	○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	○	○	○
	지방보조금 절감	○	○	○	○
	민간위탁금 절감	○	○		
	일자리 창출	○			
	예산집행 노력	○	○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기준재정수입의 세입 확충	지방세 징수율 제고	○	○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	○	○
	탄력세율 적용	○	○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	○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1-2023)』.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2022년 598,682백만 원에서 2023년 75,273백만 원으로 523,409백만 원 감소하였음

- 2023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자체노력 항목 비중은 0.04% 수준임
-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2022년 257,128백만 원에서 2023년 108,329백만 원으로 148,799백만 원 감소하였음
-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2022년 341,555백만 원에서 2023년 -33,055백만 원으로 374,610백만 원 감소하였음
- 특히 2023년 기준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33,055백만 원으로 인센티브보다 패널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IV-6〉 연도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시·도	시·군	합계	시·도	시·군	합계
자체노력(수요)	257,128	341,555	598,682	108,329	-33,055	75,273
기준재정수요액	72,390,485	81,738,337	154,128,822	85,741,043	96,119,853	181,860,896
자체노력(수입)	158,316	442,740	601,056	81,317	390,983	472,300
기준재정수입액	63,201,438	37,065,559	100,266,997	76,020,937	39,563,460	115,584,397

주: 불교부단체 수요 포함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사례처럼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향후 보정수요의 시책수요 항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며,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 신설도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6] 개정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체노력 항목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넷째, 경제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두 부여할 수 있는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효과성 측면)

□ **반면에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형평성 측면에서의 한계)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서울특별시·경기도 본청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자치구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음
 - 다만, 시책수요 신설 방안과는 달리 자체노력 항목 신설 방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의 산정방식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를 위한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운영 목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적극적 수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자체노력 산정방식의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을 수 있음

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른 반환 또는 감액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활용도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방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규정을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동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투자심사 결과와 다르게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보통교부세 감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할 때,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에 따른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은 별도의 법령 개정없이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 5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의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함

□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

-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요건은 2001년 4개로 시작하여, 2013년 6개 및 2016년 18개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01년 신설된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요건은 지방채발행 미승인, 투·융자심사 미실시, 예산편성기본지침 위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 4개임

〈표 IV-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2001년 신설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2013년에 추가된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요건은 2개로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임

〈표 IV-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2013년 개정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규정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부터 포함되었음
 -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의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규정하고 있었음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은 2015년부터 적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에 추가된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요건은 12개로 다음과 같음

〈표 IV-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2016년 개정)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생략

1. 생략
-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 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2의2. 생략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생략
5. 생략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생략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명,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및 위반지출내역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지방재정통합공시)에 공시되고 있음

〈표 IV-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023년 기준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는 59건이며, 3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3,182백만 원을 감액하였음
 -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감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1건당 감액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건당 평균 감액 규모는 2014년 71백만 원에서 2023년 223백만 원으로 152백만 원 증가하였음

〈표 IV-11〉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및 규모 추이

(단위: 개, 건,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수	감액 건수	감액 규모	1건당 감액 규모
2014	98	255	18,096	71
2015	134	263	30,272	115
2016	105	297	38,207	129
2017	105	251	48,911	195
2018	103	209	30,883	148
2019	89	221	25,977	118
2020	42	66	6,612	100
2021	21	32	6,210	194
2022	32	44	7,827	178
2023	36	59	13,182	223

자료: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7) 지방재정365_ 지방재정통합공시_항목별현황(예산기준)_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참조
<https://www.lofin365.go.kr/portal/LF2210000.do?tab=gov&byatcClsTy=LCTBBBDG31&pfalndcCd=A017&rgnzDvCd=02&fyr=2023>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는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에 따른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시행할 수 있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없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음(시의성, 실행 가능성)
- 셋째,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업에 대해 경제적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는 환류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형평성 측면에서의 한계)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내에서의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시책수요 신설 및 자체노력 항목 신설 방안과는 다르게 서울특별시·경기도 본청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2023년 기준으로 4개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343,589백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음
 -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은 보통교부세 산정·교부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함
 - 그리고 자체노력 항목 신설 방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서만 경제적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경제적 패널티 중심의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정책 수용성 측면에서의 한계)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임

□ 다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포함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06년 3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1999년 2개 분야 5개 부문에 대한 시범평가와 2000년 10개 부처 50개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음(류영아, 2012)

○ 2001년 1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합동평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기초가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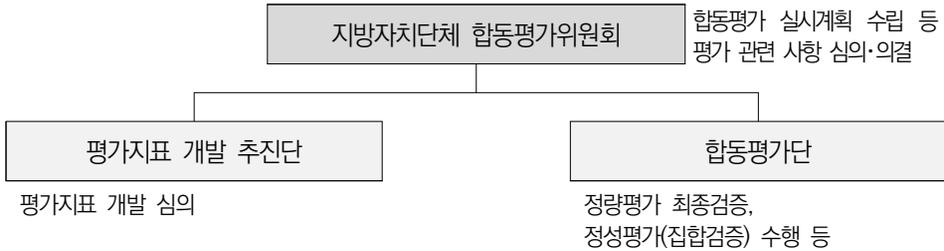
○ 현행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법적 근거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2006년 3월에 제정되면서, 기존의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폐지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상 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각종 정부업무평가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 통합성 및 효율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됨(주희진·박현욱, 2022)**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21조 제1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은 ①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을 의미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2009년부터는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주관의 합동평가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류영아, 2012)**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임⁸⁾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그 산하의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및 합동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직안내에서 담당업무로 확인(https://www.mois.go.kr/frt/a07/searchStaff.do?pageIndex=1&selectedTeamId=&orgnzt_id=&mgrDetailFlag=&searchWrd=&searchWrd2=%ED%95%A9%EB%8F%99%ED%8F%89%EA%B0%80&searchWrd3=&searchWrd4=, 2023.11.10. 검색)

[그림 IV-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자료: 행정안전부(2022a). 2023년(2022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산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합동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합동평가단의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행정 컨설팅 수행,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운영,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음
 -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
 -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제한 없음

□ 합동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합동평가단을 설치하여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합동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1년 임기에 2회 연임 가능함
 - 합동평가 분야별 민간 및 공공부문 전문가와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합동평가 관련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을 통한 환류방안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활용도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운영방식 및 성과 측면에서의 우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안임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대상을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정 중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대한민국정부, 2022)
 -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확대·강화는 국정과제 112번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는 '6-21-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또는 '6-23-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집에 포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벤치마킹을 유도할 수 있음
- 2024년(2023년 실적 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는 31개 부처에서 제출한 137개 지표(안) 중 최종적으로 29개 부처의 106개 지표로 선정되었음(행정안전부, 2022b)
- 국정목표별로는 6대 국정목표-20대 국민약속-46대 국정과제 관련 지표를 반영함
 - 지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3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14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58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8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6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과위원회별 지표는 일반행정(12개), 지역혁신(9개), 지역경제(11개), 문화체육(7개), 사회복지(7개), 사회보장(8개), 보건위생(12개), 안전관리(9개), 지역개발(21개), 환경산림(1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관부처별 지표는 행안부(18개), 복지부(14개), 농식품부(12개), 문체부(6개), 산림청(6개), 여가부(5개), 국토부(5개), 환경부(4개), 고용부(4개), 질병청(4개), 중기부(3개), 국정원(3개), 통일부(2개), 병무청(2개), 보훈부(2개), 식약처(2개), 기타(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에는 부처 공동지표 4개 및 산업부·문화재청·법제처·통계청·농진청·해경청·개인정보위·경찰청·교육부·공정위 소관 지표가 각 1개씩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2024년(2023년 실적 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체를 국정목표에 기초하여 정리·제시하였음(〈부표 1〉 참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지표 초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평가지표는 ①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② 적합성, ③ 연계·협력성, ④ 효과성, ⑤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음
- 기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평가지표 선정의 1차적인 목적으로 하였음

〈표 IV-12〉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평가지표(안)

평가기준	평가내용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이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행정역량 투입정도 (계획마련, 제도정비, 관련 인력·조직 마련,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기관장 및 조직 내 관심도 (단체장 및 주요간부 등의 현장행보, 간담회, 지시사항 등)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과 환경·여건 등 현황 분석에 기초한 시책 개발, 적용 노력 ▪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창출한 정도
연계·협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연계·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 해당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정도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 해당 우수사례 시행에 따른 확인 가능한 구체적 성과(통계 자료 등)
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우수사례의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 ▪ 해당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도

자료: 주희진·박현욱(202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등에 공개함**

- 시와 도 지역을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공개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성과급 지급·표창수여 등의 보상도 지급되고 있음
- 평가 분야별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2023년(2022년 실적 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총 18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음
 - 또한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등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표 IV-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규모 및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규모	지급기준
2019년 (18년 실적)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가 등급 1개당 2억원(54개, 108억원) ▪ (중점과제 및 일자리창출) 가 등급 1개당 3.5억원(12개, 42억원)
2020년 (19년 실적)	1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달성지표 비율(1% 당 7.8백원) ▪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비율(1%당 약 34백만 원) ▪ (국민평가) 정성지표 중 국민평가단 선정 1건당 1억원 ▪ (주민만족도) 대상지표 7개중 주민만족도 1위 건당 2천만원
2021 (20년 실적)	1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달성지표 비율(1% 당 7.87백원) ▪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비율(1%당 약 9.5백만 원) ▪ (국민평가) 정성지표 중 국민평가단 우수사례(1건당 20백만원) ▪ (노력도) 전년대비 결과 증감률, 기준액 5억원(정량 4억, 정성 1억)
2022년 (21년 실적)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평가) 국민평가 선정 우수사례에 대해 지급(3천만원)
2023년 (22년 실적)	1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정량지표 목표달성 비율에 따라 지급 ▪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비율에 따라 지급 ▪ (국민평가) 국민평가 선정 우수사례에 대해 지급(6천만원) ▪ (노력도) 전년대비 정량·정성평가 실적 상승률에 따라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19-2023)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은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선연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할 때,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등에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둘째,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중심의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효과성 측면에서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 확산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 측면의 환류방안이기에 때문에 문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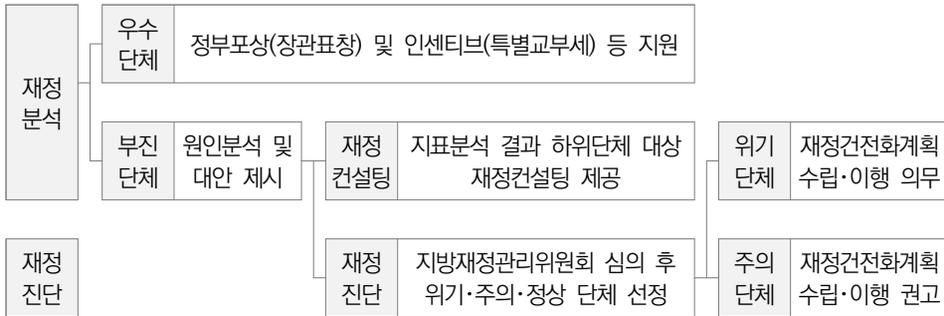
다.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포함

1)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요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임(한재명·유승주, 2022)
 -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됨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예산절감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윤태섭 외, 2019)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재정진단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5조의4에 근거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선정하며, 부진단체에 대하여 재정컨설팅 및 재정진단을 실시함
 - 재정분석 평가지표체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재무 관련 결산 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 상태 및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파악함
 - 재정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재정운영이 우수한 단체와 미흡한 단체를 선정함
 -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
 -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하위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제공하되,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함

[그림 IV-4]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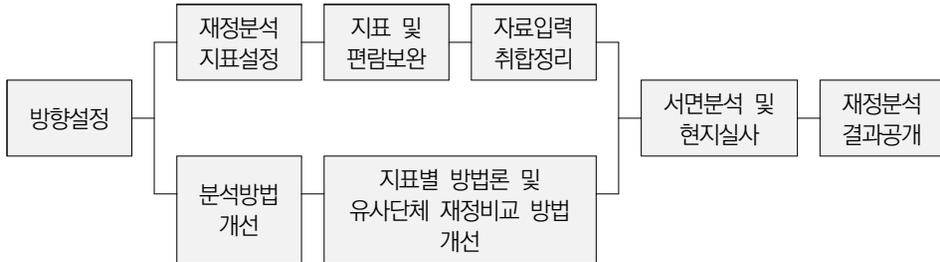


자료: 한재명·유승주(2022: 11) 토대로 일부 수정

주: 「지방재정법」 개정(2023.8.16.)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수정

- 2022년 기준(FY2021) 재정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음
 - ① 방향설정, ② 지방·중앙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표 설정 및 분석방법 개선,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서면제출 자료 분석 및 현지실사, ④ 결과 도출 및 공개의 순서로 실시함

[그림 IV-5] 지방재정분석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사용한 2022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의 13개 지표로 구성됨(한재명·유승주, 2022)
 - 재정분석 지표체계는 크게 평가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되며, 보조지표는 다시 분석지표와 참고지표로 구분됨(보조지표까지 포함한 지표체계는 <부표 2> 참고)
 - 재정건전성은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되며, 크게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리 지표로 세분됨
 - 재정효율성은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며, 크게 세입관리와 세출관리 지표로 세분됨
 - 재정계획성은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며, 크게 재정계획과 재정집행 지표로 세분
- 각 지표별 산출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0점 만점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함(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표 IV-14〉 2022년(FY2021) 지방재정분석 평가비중

분야		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개선도 반영비율
건전성 (20%)	수지관리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4%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6%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4%	
효율성 (60%)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지방세	6%	비율:증감률 4:6
			세외수입	6%	
		⑥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비율:제고율 4:6
	세출관리	⑦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지방세체납액	6%	비율:증감률 4:6
			세외수입체납액	12%	
		⑧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6%		
	⑩ 자체경비비율(증감률)		10%		
계획성 (20%)	재정계획	⑪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4%	
		⑫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비율	4%	비율:개선도 8:2
			개선도	1%	
	재정집행	⑬ 이·불용액비율		11%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2)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반영을 통한 환류방안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료 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추진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한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체계와의 정합성 및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는 '자료 입력 기한 준수 여부'와 '입력 자료 정확성 정도'를 기준으로 감점을 하는 지표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2016년(2015 회계연도 결산자료)부터 2018년(2017 회계연도 결산자료)까지 재정책임성 분야에서 '재정공시 노력도', '재정분석 대응도' 등의 평가지표가 사용되었음
- 특히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는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며,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및 오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거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음

〈표 IV-15〉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 기준	배점
1. 자료 입력 기한 준수 여부 (-5점)	• 준수	0점
	• 미준수	-5점
2. 입력 자료 정확성 정도 (-5점)	• 누락 또는 오류 없음	0점
	• 누락 또는 오류 있음	-5점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는 2016년 28개에서 2022년 13개로 감소하였음

〈표 IV-16〉 연도별 재정분석 평가지표 비교

구분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지표(종합)		28개	22개	22개	14개	13개	13개	13개
건 정 성	통합재정수지비율	○	○	○	○	○	○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	○	○	○			
	관리채무비율	○	○	○	○	○	○	○
	실질채무비율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	○				
	통합유동부채비율	○	○	○	○	○	○	○
	공기업부채비율	○	○	○	○	○	○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	○	○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						
효 율 성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	○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	○	○	○	○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	○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관리비율				○	○	○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	○	○	○	○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	○	○	○	○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						
	인건비 절감 노력도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	○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	○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	○				
	자체경비비율					○	○	○
책 임 성	재정법령준수	○	○	○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						
	재정공시노력도	○	○	○				
	재정분석대응도	○	○	○				
계 획 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	○
	세수오차비율					○	○	○
	이월불용액비율					○	○	○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분석

-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를 신설하는 경우 초기에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해당 지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본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체계는 ① 본 평가지표, ② 보조지표 중 분석지표, ③ 보조지표 중 참고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의 경우 초기에는 보조지표 중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초기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를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향후 본 평가지표에 포함할 경우 해당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도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됨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함

〈표 IV-17〉 「지방재정법」 제57조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 2022년(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13곳), 효율성(13곳) 및 계획성(13곳) 분야별 최우수단체, 전년대비 분석결과의 상승폭이 큰 특별상(2곳) 등 총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7억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지급됨

□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반영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즉,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의 반영이 가능함
- 둘째,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지방재정공시 대상이며, 지방재정 365(<https://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료 입력 오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재정진단 컨설팅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짐
 - 첫째,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도입 초기에는 보조지표 중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규모는 다른 방안들에 비해 작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의 효과는 다른 방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재정분석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응도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자료 입력 오류 문제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초기에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인센티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라.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 관련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⁹⁾

9)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lofin365.go.kr/portal/LF210000>)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임(이창균, 2013)
-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함(행정안전부, 2023c)

□ 지방재정의 운용상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공통공시는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시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 ② 재무제표, ③ 채권관리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 지역통합재정통계, ⑦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⑧ 중기지방재정계획, ⑨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⑩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⑪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 의견서, ⑫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⑬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⑭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⑮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⑯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등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는 ①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됨
- 특수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시를 의미함
 -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 공시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활용(행정안전부, 2023c)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춰 추가적인 공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하거나, 주민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책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최소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동종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인구 및 재정여건)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통합하여 공시하는 통합공시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매년 4월과 10월 ‘지방재정 365’를 통해 통합공시하고 있음
 -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수정공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음

2) 통합공시를 통한 환류방안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추진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한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공통공시 항목에 투자심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통합공시 항목은 공통공시 항목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둘째,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통합공시를 준비하면서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료 입력 오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넷째,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 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짐**

- 첫째, 통합공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수반되지 않는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둘째, 통합공시의 효과성은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압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강제성 측면에서의 한계)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통합공시 항목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료 입력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자료 입력 오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다만, 통합공시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통합공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마. 기타 환류방안

1) 각종 포상제도를 통한 환류방안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관련 포상제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할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관련 각종 포상제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방안임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2022년에 개최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기타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92억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우수사례 선정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확산이 가능한 재정효율성 제고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음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출 효율화 분야의 세부 평가분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포상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포상 분야의 신설 방안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
- 둘째,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포상 분야의 신설 방안은 해당 우수사례가 지방재정 365(<https://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시책수요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다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우수사례 포상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음

- 첫째,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중심의 환류방안이기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효과성 측면에서의 한계)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형평성 측면에서의 한계)

2) 중점관리사업 컨설팅을 통한 환류방안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이 방안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경제적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기 어려우며, 중점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중점관리사업에 선정된 일부 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3)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투자심사 반영을 통한 환류방안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투자심사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예를 들어 중점관리사업에 선정된 투자사업의 수에 비례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제한하거나, 투자심사 시 평가기준(정량적, 정성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방안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중점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중점관리사업에 선정된 당해연도에만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투자사업 의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패널티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점관리사업에 선정된 일부 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바. 종합 검토

1)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

가) 정책수단 유형 분류 및 조합

- 정책수단은 바람직한 결과 또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기법, 도구, 방법 등을 의미함(김윤승, 2020)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환류방안들은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은 정책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의 도구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책수단 유형의 차이는 정책 집행방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침(Bobrow and Dryzek, 1987)
-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 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류 중 Vedung(1998)의 분류에 기초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환류방안을 종합·검토하고자 함

□ Vedung(1998)은 공공부문의 정책수단을 “채찍(stick)”, “당근(carrot)”, “설교(sermon)”의 3가지 상징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첫째, “채찍(stick)”은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권위적·강압적 의무를 부과하여 정책대상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함
 - Schneider and Ingram(1990)은 이를 권위(authority) 수단으로 분류하였음
 - 정부가 권위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정책대상은 정부에 의해 부과된 법적·행정적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
 - 이러한 유형의 정책수단은 정책지침, 의무, 권장사항, 행정명령, 인허가, 금지, 절차기준, 감사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함
- 둘째, “당근(carrot)”은 정책대상에게 경제적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박탈하여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정책대상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임
 - Schneider and Ingram(1990)은 이를 유인(incentive) 수단으로 분류하였음
 - 경제적·재정적 지원 수단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대상은 경제적·재정적 지원 수단이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으로 정책에 대한 순응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됨
 - 경제적·재정적 지원 수단은 보조금, 교부금, 정책금융, 조세지출 등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포함함
- 셋째, “설교(sermon)”는 정책대상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제공을 통해 정책대상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는 방식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통을 통해 정책대상을 설득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정보제공은 권위적 또는 재정적 정책수단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합을 통해 정책순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됨(문명재, 2009)
 - 이와 관련하여 Vedung and Doelen(1998)은 정보제공이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연성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제공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특정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사용되는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 정보제공은 협의의 정보제공(정보공시), 정책홍보, 상담, 교육,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정책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의 정책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함
- 이와 관련하여 Bemelamans-Videc and Vedung(1998)은 정책수단 조합을 수직적 조합(vertical mixing), 수평적 조합(horizontal mixing), 순차적 조합(chronological mixing)으로 구분하였음

- 첫째, 수직적 조합은 정부와 최종 정책대상 사이에 여러 계층의 행위자가 존재할 경우 각각의 행위자에게 복수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음
- 둘째, 수평적 조합은 정부가 정책대상에게 동시에 다른 성격을 지닌 다수의 정책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병렬적 조합 또는 도구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기도 함(오민수·김재일, 2009)
 -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순응을 확보하기도 함(오민수, 2013)
- 셋째, 순차적 조합은 복수의 정책수단을 특정한 시간순서에 따른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정부가 정책 초기에는 정보제공을 활용하고 다음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같은 유인수단을 사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규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Vedung, 1998; 김윤승, 2020에서 재인용)

〈표 IV-18〉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과 적용방식

정책수단 유형	적용방식
규제적 수단 (채찍, stick)	사전계획, 정책지침, 의무 및 권장사항, 행정명령, 인허가, 금지, 절차 기준, 사후규제, 감사 등
경제적 수단 (당근, carrot)	보조금, 교부금, 정책금융, 조세지출, 세급, 사용료·수수료, 부담금, 물리적 장애물 등
정보제공 (설교, sermon)	협의를 정보제공(정보공시), 정책홍보, 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 경고 등

자료: 김윤승(2020).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박재희(2022). 정책수단으로써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간 정합성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나) 본 연구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

□ 본 연구에서 검토한 투자심사 이력관리 환류방안을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규제적 수단(stick)에는 ‘중점관리사업 투자심사 반영’ 방안이 포함됨
- 둘째, 경제적 수단(carrot)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3개 세부 방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반영’,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 등 6개 방안이 포함됨
- 셋째, 정보제공(sermon)에는 ‘통합공시 항목 반영’과 ‘중점관리사업 컨설팅 실시’ 방안이 포함됨

〈표 Ⅳ-19〉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

환류방안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시책수요 신설	경제적 수단(인센티브)
	자체노력 신설	경제적 수단(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반환 또는 감액	경제적 수단(패널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경제적 수단(인센티브), 정보제공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반영		경제적 수단(인센티브), 정보제공
통합공시 항목 반영		정보제공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		경제적 수단(인센티브), 정보제공
중점관리사업 컨설팅 실시		정보제공
중점관리사업 투자심사 반영		규제적 수단(심사의뢰 제한)

□ 한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반영’,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 등 3개 방안은 경제적 수단(인센티브)과 정보제공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이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수단이라는 Vedung and Doelen(1998)의 주장과 일치함

- Bemelamans-Videc and Vedung(1998)이 제시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단일 정책수단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수의 정책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류방안들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수직적 조합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고려하여 각 대상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합공시 항목 반영’,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을 적용할 수 있음
 - 수평적 조합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지방재정 분석 평가지표 반영’,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 등과 같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특성을 지닌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순차적 조합의 측면에서는 환류방안별 실행 가능성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 방안 및 중장기적 방안을 구분·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도입 초기에는 ‘통합공시 항목 반영’이나 ‘중점관리사업 컨설팅 실시’ 등과 같은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다음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이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통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이나 ‘중점관리사업 투자심사 반영’ 등과 같은 규제적 수단을 통해 제도의 정착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안별 영향 비교

□ Salamon(2002)은 정책수단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를 앞에서 살펴본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 분류와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강제성 정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규제적 수단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와 정보제공 등의 순서로 정책수단의 강제성이 부과됨

〈표 IV-20〉 강제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 정책수단

강제성	정책수단	예상되는 영향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형평성 (Equity)	관리 가능성 (Manage-ability)	정당성/ 정치적지지 (Legitimacy/Political Support)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책임 (Tort Liability) ▪ 정보제공 (Information) ▪ 조세지출 (Tax Expenditure)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Voucher) ▪ 보험(Insurance) ▪ 보조금(Grants-in-aid)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 대출보증 (Loan guarantees) ▪ 계약(Contracting) ▪ 라벨링(Label requirements) ▪ 교정적조세 (Corrective Tax) 	중간	낮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규제 (Economic regulation) ▪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자료: Salamon(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 강제성이 높은 규제적 수단이나 경제적 수단 중 패널티의 경우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관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남
 - 강제성이 중간 정도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대부분의 영향이 중간 수준이나, 효율성은 낮게 나타남
 - 강제성이 낮은 정도인 정보제공은 효과성은 낮은 수준이나, 정당성이나 정치적 지지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Salamon(2002)과 Vedung(1998)의 분류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강제성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아래 제시된 것처럼, 각각의 환류방안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현행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대안(one best way)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환류방안의 특성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 조합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IV-21〉 대안별 영향 비교

강제성	대안	정책 수용도	실행 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시의성
낮음	보통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신설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중간
	통합공시 항목 반영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행정안전부 포상제도 반영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중점관리사업 컨설팅 실시	중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높음
중간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신설	중간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신설	중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보통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점관리사업 투자심사 반영	중간	중간	낮음	높음	높음	높음

2. 단계별 환류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컨설팅 > 정보공개(중점관리사업 공개 > 전체 자료 공개) > 투자심사시 반영 > 포상제도 활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또는 재정분석 반영 > 보통교부세 감액 >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각 환류방안별 실행가능성 및 시의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① 정보공개 → ② 컨설팅 및 포상제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③ 적극적 인센티브(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또는 재정분석 반영)→ ④ 적극적 패널티(투자심사 제한,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함
 - 이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 델파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적극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안함
- 단기적으로는 정보 공개, 컨설팅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대상과 범위에 대한 상세 검토가 요구됨
 -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정책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순차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자료 수집 체계 및 방식 등 관련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함윤주 외(2022)에서는 이력관리 담당 공무원(302명)을 대상으로 공

개 여부, 공개 범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공개 결과에 대한 찬성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대상이 상위기관(행정안전부 또는 광역 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시민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상위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컨설팅 제도의 경우 이력관리 전담기관 인력 및 기능 확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전담기관의 관련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포상제도의 경우, 우수사례 선정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

가. 정보 공개

□ 이력관리 결과 공개범위는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 ②상위기관(광역 시도, 행정안전부)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에는 사업 개별 세부정보와 중점관리사업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되, 제도 정착 및 안정화 전까지는 상위기관과 지역주민에는 일부 정보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장기적으로는 이력관리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안함

□ 정보 공개 관련 단계적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 1단계(~2024년) : 현행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하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함
 - ①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 ②상위기관(광역 시도, 행정안전부)에게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이력관리 연차보고서를 제공하여, 이력관리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필요가 있음

- 추후 연차보고서를 17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기존 연차보고서보다 세분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역주민의 경우 현재 재정정책과에서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사업의 주요 정보 : 사업명, 투자심사 주체, 총사업비, 기집행액, 사업 진행단계 등)을 공개하고 있어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한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유지함
- 2단계(2025년 이후) : 향후 지자체에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차세대 e-호조 안정화로 이력관리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우선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이 용이한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3단계(2026년 이후) :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대국민 정보공개를 검토할 수 있음
 -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국민 정보공개까지 가능할 것을 사료됨
 - 통합공시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료검증에 더 노력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이력관리 정보의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해지며,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로의 환류 또한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추가로 이력관리 정보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단계의 정보도 같이 제공되어야 해야 하나, 사업유형별로 운영단계에서 축적되는 정보가 상이하고, 어떤 항목의 정보를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3단계 이후 운영단계 공개 관련 일정 설정이 필요함

나. 컨설팅 및 포상제도

1) 컨설팅 제도 운영

- 컨설팅 제도 운영대상은 추진단계 사업 및 운영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추진단계보다는 운영단계 컨설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추진단계의 경우,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또한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까지 점검하므로, 추진단계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 선정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그 외 추진단계에서는 재심사, 타당성재조사 등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의 영역이 좁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운영단계 사업의 컨설팅 제도 운영이 투자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해야 할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컨설팅 제도 도입은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담기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조문신설(입법예고, ~2023.12.14.)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이 가능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이후,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최소한 2024년까지는 해소될 수 없는 사항임

- 따라서 컨설팅 제도 도입은 2025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2024년부터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유형별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2) 포상제도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등 포상제도의 대상은 추진단계 사업 및 운영단계 사업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추진단계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 이후 운영단계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단계 사업을 포상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운영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시 가장 타당한 기준은 투자심사 당시 운영계획과의 비교로 조사됨
- 그 외 사업유형에 따라 유사시설 실적과의 비교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향후 운영단계 평가기준에 대한 사업유형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하여 이력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역할 확대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포상제도 및 평가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함

제4절 종합

□ 본 장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둘러싼 환경적 측면, 투입 및 과정적 측면, 활용적 측면에서 향후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환류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자료 공개 및 컨설팅 제도 안정화 및 보상체계가 보편화 되면 합동평가, 재정분석 등 이미 정착된 다른 제도에 추가하여 이력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IV-22〉 연차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기반조성 : 전문기관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공무원 교육 등	시범실시 (단, 전문기관 역할 확대, 차세대 e-호조 이용 안정화,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라 시기 결정)	단계적 확대
범위	기반조성 : 전문기관 지정 및 역할 확대, 자료 수집체계, 방식 등 검토			
중점관리사업 기준	현행 유지 : 완료 시점까지 주요지표 검토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정	업무 범위 및 역할 확대		
거버넌스	-	차세대 e-호조 시스템 활성화 및 정착시기와 맞물려서 협력체계 구축		
환류	공개	정보공개 1단계 : 지방자치단체 연차보고서 공개, 대규모 사업 진행상황 공시	정보공개 2단계 : 차세대 e-호조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개	정보공개 3단계 : 통합공시에 포함
	컨설팅	-	사업유형별 단계적 실시 (단, 운영단계 관련 이력관리 범위 확대 여부, 전문기관의 예산 확보, 인력 충원 여건에 따라 시기 결정)	
	포상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검토 및 단계적 실시 (단, 운영단계 관련 이력관리 범위 확대 여부, 전문기관의 예산 확보, 인력 충원 여건에 따라 시기 결정)	

제 V 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제1절 기존 매뉴얼 및 지침 현황

제2절 유사·관련제도 매뉴얼 현황

제3절 현행 이력관리 각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제4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단계
확대시 추가 반영사항

제1절 기존 매뉴얼 및 지침 현황

1. 기존 매뉴얼 및 세부지침 내용

-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개요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제Ⅳ장에 제시되어 있음
 - 관련 배용은 ‘개요’, ‘절차 및 주요내용’, ‘이력관리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있으며, ‘개요’에는 이력관리의 도입취지와 주요 개념을 제시함
 - ‘절차 및 주요내용’에는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로 이력관리 절차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제시함
 - ‘이력관리 전문기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범위를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업무까지 하도록 제시함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①항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함
 - 매년 1회 실시하며, 행안부 및 17개 시도 투자심사 담당자들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취합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불통과한 사업(부적정, 재검토)도 포함하여 예산반영여부 및 반영률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진도, 부진시 부진사유에 대해 조사함

〈표 V-1〉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①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단계 정보입력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정보입력 ※ 결산 기준 추진내용반영 자가진단 결과입력 ※ 자가진단 기준 토대로 입력 	지자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 (LIMAC) 검토
②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 →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 →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 → 중투위 보고
③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 → 지자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2.09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1단계] DB 구축시 사업추진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제출해야 하는 주요사업정보 항목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그 외 [2단계] 사업검토 시 중점관리사업의 정의 및 선정절차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관리단계에서 중점관리사업의 자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표로 간략히 제시함

〈표 V-2〉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정보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추진단계 / [3단계]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p>※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 : 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가진단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2.09

〈표 V-3〉 자가진단 항목

구분	2016년	2017~2022년	비고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동일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세분화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세분화
	②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동일
	③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동일
사업내용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신설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사업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동일
기타	⑤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사업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사업	동일
	⑥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동일
		⑥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신설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신설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신설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신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2.09

-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요청시 공문상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
 - [1단계] DB 구축단계 : 『00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배포된 양식(엑셀)에 자료입력 항목, 입력기준, 입력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며, 관련하여 매년 행안부와 LIMAC이 주관하는 투자심사 관련 공무원 교육시 이력관리 교육을 추가하여 입력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2단계] 사업검토단계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결과 알림시 후보사업 선정기준과 소명자료 작성요령을 안내함
 - [3단계] 사업관리단계 : 중점관리사업 선정 결과 알림시, 자체관리계획 양식 배포와 함께 연차별 이행계획 등 주요정보 작성요령과 샘플을 제공하고 있음
- [2단계] 사업검토단계에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은 매년 개선하고 있으며, 소명자료 검토 기준에 대해서도 정량적 기준 외에 정성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

2. 2016~2022년 이력관리 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2016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2016년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은 투자사업별 ① 지자체 1차 평가 결과 및 지연사유, ② 제시된 사업단계 및 핵심정보, ③ 관련 민원 및 언론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설정함
- 선정기준에서 채무부담행위 등 매입확약 존재 여부, 감사원 지적 여부,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의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1차 평가 기준에는 없는 사항으로, 2016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핵심정보에 상기 사항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함함

〈표 V-4〉 2016년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항목	세부기준
①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체심사대상은 제외
② 투자심사 전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중지 또는 중단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실시실계 등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한 경우 제외 • 부지변경 등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이 변경된 사업 • 총사업비 증가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사업비 증가액이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거나 총사업비 중 보상비가 100%인 사업 제외 • 지방채가 증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발행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므로 제외 • 채무부담행위 및 매입 확약이 존재하는 사업 •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계 및 행정관련 단순 지적사항인 경우는 제외 •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조건을 불이행한 사업
③ 중점관리 실효성이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심사 대상사업이거나 직전년도 사업, 기투자금액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인 사업, 사후관리 실익이 없는 행사·축제사업 제외 • 철도사업과 같은 국비매칭사업이나 국비 투입이 지연된 사업 등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사업 제외
④ 전문기관의 컨설팅 필요/심각한 민원 및 사회적 갈등 유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정여건·규모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 • 사업규모 변경 및 총사업비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 재정 여건·규모 상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나. 2017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2017년도에는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투자사업을 평가함

- 자체평가 기준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변동 기준 변화, 입력자료 검토,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점검함
 - 자체평가항목은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평가 기준만을 가지고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수 없음
-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며, 자체평가에 입력된 사유를 확인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함
- 선정된 사업의 선정 사유에 대해 지자체의 소명 및 확인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LIMAC의 의견을 담아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함

○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하여 기준을 마련함

〈표 V-5〉 중점관리 후보군 선정 항목(2017년)

구분	2017년 자체평가 항목	LIMAC 중점관리 후보군 선정	비고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정량적 평가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①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 지방비 20% 이상 증가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③ 지방채 10% 이상 증가	
	②-4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④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 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 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 완공연도 변경 사업	⑤ 공사완공연도 3년 이상 지연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정성적 평가
	⑥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 분쟁이 있는 사업 중 단순 민원 및 민원 해결 사업 제외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해결된 사업 제외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하여 해결된 사업 제외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주체	자치단체	행안부, LIMAC, 자문회의 의견검토	

다. 2018년~2019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2018년도부터는 자체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점검함

- 지방자치단체가 입력한 자체평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평가 결과가 달라 자체평가결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따라서 자체평가 항목을 참고하되, 자체평가결과가 아닌 별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함
 -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은 자체평가 항목의 사업비 변동, 사업내용 변경, 사업 중단 및 지연 여부, 사업기간 변경,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관련 민원/소송/분쟁 여부,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함
 - 또한 재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함
-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별로 배점 점수를 부여하고 배점의 합계가 3점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명 및 확인절차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자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 소명은 입력사항으로 확인하기 힘든 민원/소송/분쟁 진행 상황, 각종 협의 상황, 사업비 변동 및 사업 지연의 이유,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임
 - 지방자치단체의 소명결과를 검토하여 소명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향후 자체관리계획을 통해 추진상황에 대해 추적이 필요한 사업을 최종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함
-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명 과정을 거쳐 입력 자료를 최대한 검토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함
 - 정량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실제 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어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함

- 특히 민원/소송/분쟁의 경우 신문기사 등의 검색을 통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고 사업의 지연 및 중단여부를 확인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에 반영하고자 함

〈표 V-6〉 2018년도 중점관리 후보사업 도출을 위한 기준 및 배점

구분	선정기준		배점
1	준공연월 지연(12개월 이상)		1
2	총사업비 증가(10% 이상)		1
3	시도비 증가(10% 이상)		1
4	시군비 증가(10% 이상)		1
5	지방채 증가(10% 이상)		1
6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5
7	재심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 -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추가 발행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시행이 지연된 사업 - 당초 전액 자체재원에서 복합재원으로 변경된 사업 - 사업부지 변경 	5

라. 2020년 이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2020년부터는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기존 선정과정에서 각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1점이라는 획일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총사업비의 규모, 사업비 증가 및 일정지연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중점관리 후보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됨
 - 최종적인 중점관리 후보사업은 각 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 배점이 전체 사업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과, 재심사 기준(지방채 신규 투입)에 해당되는 경우도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기존에 고려되었던 기타 기준(감사원 지적사항, 민원, 재심사 대상 여부 등)은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에서 제외하되, 후보사업 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명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함
- 기타 기준 중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민원의 경우 자가진단 시 지방자치단체가 누락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심사 대상 여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비 증가항목, 준공시점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자료를 요청할 때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반영함

〈표 V-7〉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변경

구분	기존(~2019년)		변경(2020년~)		
사업비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 0점 10% 이상 증가: 1점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 0점 20% 미만 증가: 1점 30% 미만 증가: 2점 ...	[가중치] 100억원 미만: 1배 200억원 미만: 1.1배 300억원 미만: 1.2배 400억원 미만: 1.3배 ...
	시군구비		자체재원		-
	시도비		지방채		-
	지방채				
사업기간	준공시기	12개월 미만 증가: 0점 12개월 이상 증가: 1점	준공시기	12개월 미만 증가: 0점 24개월 미만 증가: 1점 36개월 미만 증가: 2점 ...	-
기타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민원, 재심사대상 여부 등	기타	좌동	
▼▼▼					
종합	합계 3점 이상 중점관리 후보사업		합계 N점 이상(상위 10% 사업) 중점관리 후보사업		

〈표 V-8〉 중점관리 후보사업 중 선정의 실효성이 낮아 제외된 사업

2017년

- 지연 또는 변동사유가 명확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중점관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18년

-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4건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입력시, 입력 오류 1건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된 사업 9건

2019년

- 추가로 확인된 투자심사 제외 사업
- 2019년 말 기준(중점관리사업 선정 시점) 준공 사업
- 2020년 상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 재심사 또는 2단계 심사 완료 사업
-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 사업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2020년

- 2020년 말 기준(중점관리사업 선정 시점) 준공 및 중단 사업
- 2021년 상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 재심사 또는 2단계 심사 완료 사업
-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 매입사업, 펀드사업, 타 사업과 통합, 기타 입력 오류 등)

2021년

- 준공: 이미 준공되었거나, 2022년 하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 재심사: 재심사 완료 사업(21년 1차 투자심사 의뢰 포함) 및 재심사 또는 2단계 심사 예정 사업
- 선정사유 해소: 소명자료를 통해 후보사업 선정사유를 해소한 사업
- 중단 및 보류: 중단, 보류 또는 사업 취소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투심면제: 현재 기준 투자심사 및 재심사 면제사업
- 기타: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 토지매입사업, 펀드사업, 코로나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방식 변경 등)

마. 소결

- 2016년부터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방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2017년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평가 기준을 통해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점검함

- 2018년부터는 자체평가 항목을 참고하되, 별도의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선정기준별 배점 점수를 부여하여 배점의 합계가 3점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2020년부터는 선정기준별 점수를 차등화 하여 대규모 사업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함
- 중점관리 후보사업 담당자(지방자치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함. 이때, 선정되는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함

3.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문제점

-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상에 관련 개요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동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각 단계에 따라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기준, 특히 사업정보 작성기준,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소명자료 제출 관련 가이드라인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각 단계별 구체적인 작성지침 및 검토내용을 종합한 통합매뉴얼이 필요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요청시 공문 등에 각 단계별 별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만,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고, 가이드라인의 이해도가 떨어져 유선상의 문의가 많은 실정임
 -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취합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도 떨어져 재확인과 수정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수기(엑셀)로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하며,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낮은 편임
 - 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각 단계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 및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목적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유사·관련제도 매뉴얼 현황

- 본 절에서는 유사제도의 매뉴얼 현황과 비교검토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 현행 이력관리 각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유사제도의 매뉴얼 현황을 검토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매뉴얼의 구성을 검토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관리제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등이 있음
- 각 제도의 대상사업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과 일부 중복되며,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일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평가과정, 환류 및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1) 유사·관련제도 운영 현황

- 투자사업 이력관리, 총사업비관리제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주요재정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추진근거, 평가주체 및 주체가 상이하하나 대상은 일부 중복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재정사업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통해 실시설계 이후 물량변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목적과 유사함

-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변경사항 발생시 관계기관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유사하게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및 제13조(타당성재조사)에 의거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변경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대규모 사업에서 역시 총사업비 관리제도나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대상과 중복되나, 준공 이후 기록/관리, 사후적인 B/C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 피드백은 어려움

〈표 V-9〉 투자사업 이력관리 및 유사·관련제도 운영 현황

구분	투자사업 이력관리	총사업비관리제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주요재정사업평가
추진 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2의 2항	「국가재정법」 제5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지방재정법」 제5조3항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자체심사/의뢰심사 사업 -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하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목 및 정보화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투자사업) 시도 5억원/시군구 2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시도 및 시군구 2억원 이상
목적	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사업단계별 사업지연,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공공건설사업 수행성적을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평가(또는 관리)주체	자체 기록·관리, 자가진단, LIMAC 및 행정안전부가 중점관리사업 선정	총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사업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	- (투자사업) 자체평가(필요시 전문연구기관 지원 가능) - (행사성사업)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평가(또는 관리)절차	매년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적용 및 소명자료 검토 후 중점관리사업 선정	사업진행 단계별 (①사업구상→②예비타당성조사→③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④실시설계→⑤발주 및 계약/시공) 관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①사업수행 성과평가→②사업효율 평가→③파급효과분석) 수행	자체평가(또는 민간위원회) 후 예산부서 확인·점검→ 평가결과 예산 반영(예: 미흡 이하 사업 예산 삭감)
비고	2016~2017년 e-호조→LIMAC 자체 DB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을 구축하여 운영	①은 준공후 60일 이내, ②③은 준공후 5년 이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평가 결과 등록	자체평가는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가능

-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자율평가제도로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평가의 주요 목적이 차년도 예산 존치 및 삭감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상 측면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일부 중복되나, 현행 이력관리 대상 사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복합재원 사업(국·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외부평가로 시행되는 자치단체도 있으나 외부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는 자체평가로 시행하기도 함
 - 따라서 일부 선형연구(이상미 외, 2021)에서 투자심사 사후관리제도로써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주요재정사업평가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단계에서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3)”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미시행 시 별도의 패널티가 없어, 사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사업부처가 시행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발주처 요구에 맞는 사후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용역 종료 후 보고서를 입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후평가 결과 입력 또는 자료 입력 오류 등 제도운용상 각종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5년 후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시 사업수행성과 평가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의 망실, 순환보직, 관리부서의 상이(사업수행성과는 발주부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는 본청)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유사·관련 제도 매뉴얼 관련 현황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상에 개요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통합매뉴얼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각 단계별로 자료제출 요청시 별도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세부사항을 일부 안내하고 있음
-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제317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경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를 통해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경우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5.8)을 배포하여 시행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 및 각 평가단계별 수행방법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제시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5.8)은 『건설사업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국토해양부(2009.12)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해설 및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2013.12)을 토대로 작성됨
- 주요재정사업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함

〈표 V-10〉 유사·관련 제도 운영 현황

구분	총사업비관리제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주요재정사업평가
매뉴얼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제317호, 시행 2017. 1.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시행 2021. 7. 30.)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시행 2020.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목적, 범위, 관리대상 사업 등) -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 총사업비 관리절차 - 수요예측재조사 - 총사업비 조정기준 - 중앙관서 자율조정 -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목적 및 적용범위 등) -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 건설공사 사후평가 위원회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도 개요 -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 추진 일정 -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 시행일
구성	※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 - 부문별 표준내역서 -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 - 부문별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 -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의 구성(예시) - 총사업비 신규등록 보고서 -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 	※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통합평가)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분리평가-1단계) -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 -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소요인력 산정기준 - 건설공사 사후평가 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 (붙임 및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회적가치 항목 가점부여 서식

3) 시사점

- 유사제도의 지침을 검토한 결과, 지침의 구성은 목적, 대상, 범위 등 제도 전반에 소개가 명확해야 하며, 각 수행단계별 시기, 절차, 수행주체, 수행기준, 용어 정의 등이 명확해야 함
- 또한 각종 작성양식이 지침의 별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작성양식별로 작성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경우, 각 단계별 작성요령에 대해 별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상황으로 이를 종합하여 지침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각종 작성 서식에 대한 안내도 같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작성해야 각종 양식을 검토하고, 작성의 편리성 제고하고, 보다 상세한 작성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이력관리 확대에 따른 추가 전담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력관리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도 매뉴얼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향후 차세대 e-호조 안정화 및 본격 활용시에는 차세대 e-호조를 활용한 자료입력 및 관리를 포함한 지침 업데이트가 필요함

제3절 현행 이력관리 각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 본 절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에서 이력관리 세부단계별로 실질적인 수행 지침 제시를 위해 기존 매뉴얼 또는 배포자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DB 구축단계, 사업검토단계, 사업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과정에서 파악된 각 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 DB 구축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DB를 구축하는 단계이며, 사업검토단계는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사업관리단계는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이전년도에 기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임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부록 1>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매뉴얼(안)”을 제시함

1. DB 구축단계

- ‘DB 구축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통해 당해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를 구축하는 단계임
- 이를 위해, 먼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당연도 이력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제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사업을 확인하도록 하며, 각 사업별로 이력관리 기초자료 입력양식을 배포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사업담당자가 해당 양식에 맞춰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력관리 기초자료 입력양식 배포시 『00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 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항목별로 자료입력 기준, 입력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와 LIMAC이 주관하는 투자심사 관련 공무원 교육시 이력관리 자료 입력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이력관리 기초자료는 이력관리 주요결과물인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허위로 사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수기작성으로 인한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력관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정보 관리 및 기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허위기재 또는 부정확한 기재 등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허위기재나 오기의 문제는 차세대 e-호조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활용가능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함
- 다음에서는 이후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에 활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DB 구축단계’ 매뉴얼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가. 유형별 입력대상

- 투자심사 이력관리 대상은 2013년 이후 투자심사가 완료(적정, 조건부 결과)된 사업 중 ① 중앙투자심사 완료 사업, 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자체투자심사 완료 사업임
-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는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구분되며, 준비단계는 투자심사 시의 자료로, 직전년도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준비단계 자료입력이 필요함
- 다만, 기존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이미 준비단계 자료를 작성했던 사업이더라도 재심사 및 2단계 심사 등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경우 준비단계 자료의 재작성이 필요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는 재심사 및 2단계 심사로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가장 최근의 투자심사 정보를 준비단계로 하기 때문에 자료 수정이 필요함
 - 2단계 심사 : 이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조건부 항목에서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조건부 사항을 충족하여 다시 심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재심사의 경우 기존의 투자심사 결과를 투자사업 이력관리 DB에서 고려하지는 않으나, 2단계 심사의 경우 최종 투자심사 결과(2단계 심사결과)를 준비단계로 고려하기는 하나, 이전의 최초심사 결과 또한 자료를 축적함
 - 직전년도에 재심사를 받은 경우 준비단계는 직전년도 재심사시의 사업내용을 준비단계에 새롭게 입력할 필요가 있으며, 직전년도에 2단계 심사를 받은 경우 준비단계(2단계)에 2단계 심사시의 내용을 추가 입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 입력대상에 대해 매년 『00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준비단계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표 <Ⅲ-11>은 『2022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별 입력사항임

<표 V-11>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별 입력사항

구분	심사시기 및 결과						입력 사항		
							준비단계		추진단계
							최초	2단계	
준비 단계 사업 유형	유형 1	2021.1차 통과					2021.1차 (의뢰서)	-	-
	유형 2	2021.1차 통과 (조건부 2단계)		2021.3차 2단계 심사 통과			2021.1차 (의뢰서)	2021.3차 (2단계 의뢰서)	-
	유형 3	2014.1차 통과	2015.3차 재심사 재검토	2016.2차 재심사 통과 (조건부 2단계)	2017.2차 2단계 심사 재검토	2021.1차 재심사 통과	2021.1차 (의뢰서)	-	-
추진 단계 사업 유형	유형 4	2017.1차 통과					2017.1차 (의뢰서)	-	2021년 결산기준
	유형 5	2013.1차 통과		2014.2차 재심사 통과			2014.2차 (의뢰서)	-	2021년 결산기준
	유형 6	2015.1차 통과	2016.2차 재심사 재검토	2018.1차 재심사 통과 (조건부 2단계)	2021.2차 2단계 심사 통과	2018.1차 (의뢰서)	2021.2차 (2단계 의뢰서)	2021년 결산기준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도 이력관리 입력사항임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 가이드라인

- 이에 기존의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입력사항 설명을 활용하여, 좀 더 간략히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별도로 설명하는 등 관련 설명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함

〈표 V-12〉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별 입력사항 개선(안)

구분		2022년 이력관리 입력기준		
		준비단계		추진단계
		최초	2단계	
2021년 이전 투자 심사	최초심사통과 (조건부, 적정 등)	2021년 이전 해당 투자심사 의뢰서		2021년 결산기준
	재심사			
	최초심사 +2단계 심사	2021년 이전 투자심사 (최초심사) 의뢰서	2021년 이전 해당 투자심사(2단계) 의뢰서	
2021년 투자 심사	최초심사통과 (조건부, 적정 등)	2021년 투자심사 의뢰서		-
	재심사			-
	2단계		2021년 2단계 심사 의뢰서	2021년 결산기준
	최초심사 +2단계 심사	2021년 투자심사 (최초심사) 의뢰서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도 이력관리 입력사항임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 사례(안)〉

1. 준비단계 입력대상 사업유형

- (1) 2021년 1~4차 통과(조건부, 적정 등)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2) 2021년 1~4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3) 2021년 이전에 통과 또는 조건부 2단계 통과하였으나, 이후 2021년에 재심사를 받은 경우
 - 2021년 이전 통과 후 2021년 1~4차 재심사 통과(조건부, 적정 등)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2021년 이전 조건부 2단계 통과 후 2021년 이전에 2단계 심사에서 재검토를 받고 2021년 1~4차 중 재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 준비단계 최초 입력

2. 추진단계 입력대상 사업 유형

- (1) 2021년 이전 투자심사 통과 :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 (2) 2021년 이전 투자심사 통과 후 2021년 이전 재심사 통과 :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3. 2단계 심사 관련 사업유형

- (1) 2021년 중 조건부 2단계 통과 후 2단계 심사 통과
 - 2021년 1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2021년 3차 2단계 심사 통과
: 준비단계 최초(2021-1차 기준), 준비단계 2단계(2021년 3차 기준) 입력
- (2) 2021년 이전 최초 심사 통과 후 2021년 1~4차 2단계 심사 통과 :
 - 2018년 1차 조건부 통과 → 2019년 3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2021년 3차 2단계 심사 통과
: 준비단계 2단계(2021년 3차 기준),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나. 대상사업 목록 배포파일

- 대상사업 목록은 추진단계와 준비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추가로 누락된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하도록 별도 엑셀시트 양식을 제공함
 - 각 사업은 개별 입력파일 제출 여부, 사업 진행상황(추진중, 완료, 보류, 취소 중 택1), 전년도 말 기준 기집행액 및 공정률, 재심사 의뢰(예정) 여부, 기타 지자체 의견사항(재심사 및 취소 사유, 재심사 의뢰 또는 예정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함
 - 특히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이력관리 자료에서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기집행액 및 공정률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추진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명과 다를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작성하도록 함
 - 그 외 자체심사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전년도 이력관리 결과, 2022년 말 기준 완료될 것으로 제시하였던 사업에 대한 준공 및 공사완료 여부와 잠정 보류 등으로 제시한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함

(표 V-13) 대상사업 목록 배포파일 주요 작성 내용

구분	기재 항목	비고
심사정보	심사구분, 심사차수, 2단계 심사여부, 2단계 심사차수, 지자체(광역, 기초), 투자심사명	작성하여 배포
파일 제출여부	입력파일 제출여부(o/x)	지자체 작성 필요 항목
사업진행상황	추진중, 완료, 보류, 취소중 택	
	기집행액	
	사업 종료/준공 완료 시점(완료 사업의 경우)	
	공정률	
심사 변경사항	재심사 의뢰(예정) 여부(o/x 중 택1)	
지자체 의견사항	재심사 및 취소 사유, 재심사 의뢰 또는 예정시기 등 기재	

다. 투자사업 이력관리 입력양식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기초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엑셀양식을 통해 배포하여 수집하고 있음
 - 동 양식은 준비단계, 추진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비단계는 최초심사와 2단계로 구분됨
 - 준비단계의 최초심사와 2단계의 입력내용은 동일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개요, 투자심사정보, 사전절차 이행정보, 사업량 및 규모 정보, 일정(예정)정보,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자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추진단계의 경우 사업량 및 규모정보, 일정(실제, 예정)정보,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 등의 정보는 준비단계와 동일하나,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자체평가정보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심사 시기 및 2단계 심사 여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해야 하는 단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양식배포시에는 추진단계 만을 입력해야 하는 사업(직전년도 이전에 투자심사 완료 사업¹⁰⁾)의 경우 기제출한 준비단계 자료를 포함하여 양식을 배포하고 있음
- 이때 기제출한 준비단계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직전년도에 재심사 또는 2단계 심사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단계의 수정 및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할 수 있음

10)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추진단계 사업은 2013~2020년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의미함

- 다만, 준비단계의 수정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준비단계 수정 및 갱신 필요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오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제출자료의 오류판단의 정확성 및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 및 갱신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배포양식 상에는 관련 기제출 자료(준비단계)의 수정 및 갱신 사유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으나, 배포 양식 상에 사유입력란을 별도로 추가하여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그림 V-1] 준비단계(최초심사) 입력양식

준비단계					
사업개요					
작성희제년도					
지자체					
구역					
기초					
회계					
유형					
회계명					
근거법령					
분류					
분야					
부문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시작일	년	월	일		
원료예정일	년	월	일		
사업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투자심사정보					
심사시기	년	차			
심사유형					
심사결과					
조건					
1					
2					
3					
4					
5					
6					
7					
사전절차이행정보					
타당성조사	(직접입력 선택시 상세등록)				
조사기관					
결과					
B/C					
P/I					
기타					
의견					
사업량, 규모정보					
사업량	(중등) 부지면적 m ²				
주요 사업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m ²	층수	층(지하/지상)		
도로	길이 km	목원	차로(양쪽)		
주택	세대수	세대			
환경시설	시설용량	m ² (톤)/일	연수		
주차관련시설	(유형)	(단위)			
기타					
일정(예정)정보					
기공계획	년	월			
실시설계	년	월			
보상	년	월			
공사착공	년	월			
공사준공	년	월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운영인력 명				
구분	금액	운영비	- 백만원/년		
공사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기타		
총역비		(단위: 백만원)			
운영설비비		운영수입	- 백만원/년		
예비비		사용료	임징료		
기타		임대료	기타		
합계	-	(단위: 백만원)			
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분양가격	원/m ²				
분양면적	m ²				
분양시점	년	월			
분양종료시점	년	월	(누적분양률 기준, %)		
연도	0	1	2		
분양률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예산관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1	2	3-
(부처명)					
국비					
기타					
시도비					
지방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기타					
예산외					
합계					
(단위: 백)					
지방채 조건					
기발행액	백만원	발행년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시점
신규발행	백만원				

[그림 V-2] 준비단계(2단계) 입력양식

준비단계(2단계 심사사)	
사업개요 작성회계연도 지자체 광역 기초 회계 유형 회계영 근거법령 분류 분야 부문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시작일 완료예정일 사업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량,규모정보 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m ² 주요 사업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m ² 층수 층(지하/지상) 도로 길이 km 폭 m 차로(양쪽) 주택 세대수 세대 환경시설 시설용량 m ² (총V일 주차관련시설 면수 면수 기타 (유형) (단위)
투자심사정보 심사시기 년 차 심사유형 심사결과 조건 1 2 3 4 5 6 7	입정(예정)정보 진성상황 기본계획 년 월 실시계획 년 월 보상 년 월 공사착공 년 월 공사준공 년 월
사전절차이행정보 타당성조사 (독립연구 선택시 상세용거임) 조사기관 결과 B/C P/A 기타 의견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운영인력 명 운영비 백만원/년 운영수입 백만원/년 구분 금액 공사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보상비 운영수입 사용료 임차료 임대료 기타 용역비 기타 운영성비비 합계 예비비 -
사업절차이행정보 타당성조사 (독립연구 선택시 상세용거임) 조사기관 결과 B/C P/A 기타 의견	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분양가격 원/m ² 분양면적 m ² 분양시점 년 월 분양종료시점 년 월 (누적분양률 기준, %) 연도 0 1 2 3 4 5 6 분양률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예산원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1 2 3- 국비 (부처명) 기타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기타 예산외 합계 - - - - - - (단위: 백)	지방채 조건 기발행액 백만원 신규발행 백만원 발행년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시점

[그림 V-3] 추진단계 입력양식

추진단계(입력기준 : 2021년 말 기준) - 2021년 결산자료 활용										
사업량,규모정보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사업량 (중등) 부지면적	m ²		번호	투자심사 조건						
주요 사업내용			여부	이행여부 세부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m ²	층수	1							
		층(지하/지상)	2							
도로 길이	km	폭원	3							
주책 세대수	세대	차로(양쪽)	4							
환경시설 주차관련시설 기타 (유형)	시설용량 m ² (은)/일 면수 (단위)		5							
사업위치 (변동시)	시도	시군구	6							
		읍면동	7							
일정(일제, 예정)정보			진행상황							
기본계획	년	월								
실시계획	년	월								
보상	년	월								
공사착공	년	월								
공사준공	년	월								
총사업비 및 자체평가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평가항목			여부	기재사항				
구분	금액	1 최근 사업비 투입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 없음								
공사비		2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보상비		-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용역비		-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운영설비비		- 용도별(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10% 이상 변동								
예비비		- 재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등 있음								
기타		3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 변경있음								
합계	-	4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원공연도 변경								
		5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6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7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8 투자심사(조건부승인) 조건 불이행 여부								
		9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자원조달계획										
연차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0	1	2	3	4	5	6	7
국비	(부채연)	-								
	기타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지방채	-								
기타	민간자본	-								
	기타 예산외	-								
합계	-	-	-	-	-	-	-	-	-	-
검증										
1.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 합계		누락		검증 결과 불일치, 누락된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2. 일정정보(진행상황) 누락		누락								
3. 자체평가항목 누락		누락								

1) 사업명

- 사업명은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각 사업을 식별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키값으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식상에는 준비단계의 경우 투자심사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 단계에는 사업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준비단계의 경우 해당사업의 최종 투자심사 당시의 의뢰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투자심사 결과파일의 투자심사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결과파일의 사업명과 의뢰서상의 사업명과 일부 띄어쓰기 등에서 차이가 있기도 함
 - 추진단계의 경우 투자심사 이후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입력양식의 파일명에도 사업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파일의 파일명과 투자심사명, 사업명이 모두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데이터와 매칭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와 투자심사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와 동일한 사업명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메뉴얼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사업명을 지칭하는 명칭이 ‘투자심사명’과 ‘사업명’으로 상이하여 동일한 항목에 대해 변경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의사항 등이 있어, 이와 관련해서 항목명을 준비단계의 경우 사업명(투자심사 기준), 추진단계의 경우 사업명(변경)으로 수정하도록 함

[그림 V-4]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사업명 작성 양식

투자심사명		사업명	
-------	--	-----	--

2)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작성회계년도, 지자체(광역시, 기초), 회계유형 및 회계명, 근거법령, 분류(분야 및 부문),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사업시작일, 완료예정일),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준비단계에서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개요 상에 포함되는 지자체(광역시, 기초) 정보는 사업명과 함께 개별 사업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하나, 지자체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림 V-5] 사업개요 양식

준비단계	
사업개요	
① 작성회계년도	2014
② 지자체	경기도
광역시	고양시
기초	
③ 회계	일반
유형	일반회계
회계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④ 근거법령	
⑤ 분류	문화및관광
분야	체육
부문	자치단체
⑥ 시행주체	시설관리공단
⑦ 운영주체	
⑧ 사업기간	
사업시작일	2014년 01월 01일
완료예정일	2018년 12월 19일
⑨ 사업위치	시도: 경기도 시군구: 고양시 읍면동: OO동 231

3) 투자심사정보

- 투자심사 정보는 준비단계에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사업명, 지자체 정보와 함께 개별 사업을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됨
- 또한,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준비단계는 최종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심사를

[그림 V-6] 투자심사 정보 양식

투자심사정보	
① 심사시기	2014년 01자
② 심사유형	중앙의뢰
③ 심사결과	조건부
④ 조건	1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2 센터 건립 후 운영시 구체적인 수익금 처리 및 손실금 환
3	
4	
5	
6	
7	

받은 경우 2단계 심사시의 정보를 준비단계로 활용하고 있음

- 즉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준비단계 작성시점에 2단계 심사를 받았을 경우 기존 준비단계 데이터가 있더라도 준비단계 데이터가 현시점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2단계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준비단계 정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즉, 준비단계의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 조건부(2단계)¹¹⁾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건부(2단계)임에도 단순히 조건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4) 일정정보

- 일정정보는 향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상의 일정지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일정정보는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에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공사 착공시점을 비교하여 일정지연에 따른 재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준공시점을 비교하여 일정지연 정도에 따른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여부를 결정함
- 따라서, 월단위까지의 일정 및 진행상황 등의 일정정보를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작성시 월단위까지 작성을 하지 않거나, 진행상황을 누락하거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존재함
- 이에 매뉴얼 상에 일정정보의 중요성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활용함을 제시하여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투자심사 결과 조건사항에 향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명시한 사업

[그림 V-7] 일정정보 양식

준비단계				추진단계			
일정(예정)정보			진행상황	일정(실제, 예정)정보			진행상황
기본계획	2015년	11월	완료	기본계획	2015년	11월	완료
실시실제	2018년	03월		실시실제	2020년	12월	완료
보상	2017년	08월		보상	2022년	06월	완료
공사착공	2018년	04월		공사착공	2022년	10월	미시행
공사준공	2022년	12월		공사준공	2023년	12월	미시행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향후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상의 사업비 증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총사업비는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에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총사업비, 자체재원, 지방채 발행 여부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및 재심사 가능성에 따른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여부를 결정함

[그림 V-8] 총사업비 양식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공사비	10,630
보상비	6,110
용역비	500
운영설비비	2,020
예비비	113
기타	427
합계	19,800

- 총사업비는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기타 등 재원구성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구성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총액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준비단계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와 금액 및 재원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오류없이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이외에 준비단계의 경우 투자심사 시점의 기투자 및 연차별 투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단계의 경우 추진단계 작성시점(전년도 말 기준)으로 기투자 및 연차별 투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기투자의 경우, 대상사업 목록 배포파일에서 공정률과 함께 취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복 확인이 가능함
- 또한 2023년부터 기투자비와 공정률은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의 주요자료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양식상에는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의 자원조달계획상의 연도가 동일하게 입력되도록 되어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양식의 수정 및 작성상의 주의사항 등을 매뉴얼 상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그림 V-9] 재원조달계획 양식

구분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국비	문화체육관광	3,800	-			1,000	2,800
		-					
	기타	-					
지방비	시도비	4,400	-	-	-	1,100	3,300
	시군구비	11,600	-	300	6,900	1,100	3,300
	지방채	-	-	-	-	-	-
기타	민간자본	-	-	-	-	-	-
	기타	-	-	-	-	-	-
	예산외	-	-	-	-	-	-
합계		19,800	-	300	6,900	3,200	9,400

(단위: 백만원)

지방채 조건	발행년도
기발행액	거치기간
신규발행	상환기간
	상환시점

(단위: 백만원)

구분		연차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비	문화체육관광	3,870					700	2,400	770		
		-									
	기타	-									
지방비	시도비	4,515					817	3,698			
	시군구비	19,615			6,900	817		3,698	6,900	1,300	
	지방채	-									
기타	민간자본	-									
	기타	-									
	예산외	-									
합계		28,000	-	-	-	6,900	2,334	6,098	4,468	6,900	1,300

라. DB 검토

-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엑셀입력양식으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작성오류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
나, 단계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시스템 활용이 요구됨
- 기존 엑셀양식에서는 사업비(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의 누락 또는 불
일치, 일정정보 누락 등 일부 핵심정보에 대한 작성 오류사항에 대해 간단
하게 자동검증한 내용을 보여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함
 - 또한 LIMAC의 이력관리 DB 구축 시스템상 필수정보 누락 및 작성 오류
사항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재제출 대상을 검토하여 2차 사업정보
제출을 요청하기도 함
 - 준비단계의 경우 일부 누락사항에 대해 의뢰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추진단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작성이 필수적인 항목이 다수임

〈표 V-14〉 추진단계 필수정보 및 오류 검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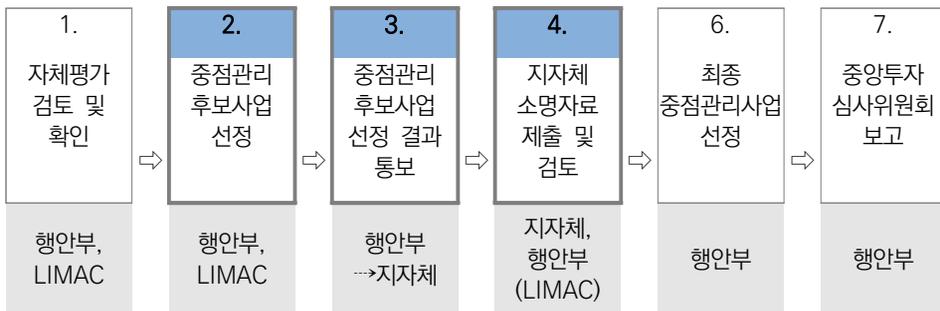
추진단계 재제출 사항		
구분		세부항목
필수항목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	준비단계 투자심사정보에서 심사결과가 조건부일 경우 작성 필요
	사업량	부지면적
		연면적
	일정정보	공사착공
		공사준공
	총사업비	합계
	재원조달계획	예산편성 시작년도
합계		
자체평가정보	여부	
	기재사항(여부가 O일때)	
오류사항	총사업비와 연차별 예산편성 합계 상이 오류	추진단계 총사업비 합계와 집행내역의 합계가 불일치
	재원조달계획의 연도 오류	초기년도 확인 후, 1 등으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연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출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에는 엑셀양식 상 표시형식 및 양식 등을 고정시켜 1차적으로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임
 - 예를 들어 2021년(2020년 말 기준)과 2022년(2021년 기준) 이력관리에서 재제출을 요청한 사업 건수는 각각 100~200여건에 달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e-호조에서 투자심사부터 이력관리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전반의 DB 입력기능을 고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입력 수작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투자사업은 투자사업과 지방재정 전주기(편성-지출-결산) 업무와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실제 수행사업(관리사업) 단위로 관리할 예정임
 - (가칭) 관리사업: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관리가 필요한 정책·단위·세부사업 및 산출부기 분류 구조내에서 관리사업으로 구성 예정임
 - 현재 투자사업은 기존 세출예산 사업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산출근거를 수작업으로 별도 관리함
 - 투자심사 업무의 수작업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명시하고 심사 의뢰시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임. 또한 예산편성시 투자심사 관리사업과의 매핑하고, 이력관리시에도 기존 매핑된 관리사업 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 (가칭)관리사업 단위로 투자사업이 기록 및 관리될 경우 수집 관련 지자체 수작업이 최소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차세대 e-호조의 이력관리 관련 부문 개선은 개발단계(~2022년)에 포함되지 않아 2024년 이후 운영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2. 사업 검토단계

- ‘사업 검토단계’는 ‘DB 구축단계’를 통해 확보 및 최종 확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임
- 중점관리사업은 당초 준비단계(투자심사 의뢰 기준) 대비 추진단계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증가,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DB 등을 검토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먼저 투자사업 이력관리 DB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선정사유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해당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결과 및 소명자료(선정사유별 의견제출) 양식배포 시 안내하고 있음

[그림 V-10] 중점관리사업 선정 절차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결과 -』

- **중점관리사업 선정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를 토대로 이루어지나, 앞서 DB 구축 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DB 오류, 자료제출 및 선정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중점관리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의가 있을 수 있어 후보사업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소명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DB 구축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위기재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해 DB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자료제출시점과 중점관리사업 선정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자료제출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등이 존재함
 -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사유에 대해 사유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후보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자료 제출시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사유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중점관리사업 확정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체관리계획 작성 단계에서 관련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존재함**
 - 중점관리사업 선정은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따른 점수 및 재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후보사업 선정결과 배포시 선정기준 및 개별사업의 선정사유를 기재하여 배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시 개별 사유에 대해 모두 소명하기보다는 재심사 가능성 여부 등에 치중하여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자료 작성 및 중점관리사업 최종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매뉴얼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가.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 중점관리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은 후보사업 선정결과 및 소명의견 요청 양식 배포시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선정과정에서의 제외기준 및 제외사유는 중점관리사업 선정결과 배포시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제외기준이 개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제외기준의 경우 중점관리사업 선정 후 배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명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 상에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기준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 함
-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업비 증가 및 일정지연,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사업비 증가는 총사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조달계획 상의 자체재원의 증가, 지방채의 증가를 포함함
 - 일정지연의 경우 준비단계(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의 준공시점과 추진단계의 준공시점을 비교하여 일정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함
 - 또한,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의 경우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표 V-15〉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2020년 이후)

구분		선정기준	
		배점	기준치
사업비	총사업비	- 10% 미만 증가: 0점 - 20% 미만 증가: 1점 - 30% 미만 증가: 2점 ...	[총사업비 규모] - 100억원 미만: 1배 - 200억원 미만: 1.1배 - 300억원 미만: 1.2배 - 400억원 미만: 1.3배 ...
	자체재원		-
	지방채		-
사업기간	준공시기	- 12개월 미만 증가: 0점 - 24개월 미만 증가: 1점 - 36개월 미만 증가: 2점 ...	-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민원, 재심사대상 여부 등	
▼▼▼			
종합	합계 N점 이상(상위 10% 사업) 및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 중점관리 후보사업		

- 상기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함
- 이후 소명자료를 통해 후보사업 선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함
 -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준공 완료 및 예정, 재심사 완료 및 예정, 사업 중단 또는 보류 사업, 투자심사 면제 대상 사업, 기타 자체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이 있음

〈표 V-16〉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2022년 기준)

구분		내용
선정사유 해소		소명자료를 통해 후보사업 선정사유를 해소한 사업
실효성 낮음	준공	이미 준공되었거나, 2022년 하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재심사	재심사 완료 사업(21년 1차 투자심사 의뢰 포함) 및 재심사 또는 2 단계 심사 예정 사업
	중단 및 보류	중단, 보류 또는 사업 취소 가능성이 있는 사업
	투심면제	현재 기준 투자심사 및 재심사 면제사업
	기타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 토지매입사업, 펀드사업, 코로나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방식 변경 등)

- 다만,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은 매년 자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성적 판단기준이 요구되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 관련

- 중점관리 후보사업은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선정사유를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소명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점관리 후보사업이 선정되면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관리 후보사업 목록 및 선정사유 등을 알리고 선정사유별 자치단체 의견을 요청함

[그림 V-11] 중점관리 후보사업 배포 양식

순번	광역	기초	투자심사 유형	투자심사 시기	투자심사 결과	투자사업명	사업비1) (억원)	선정사유	선정사유별 자치단체 의견제출
1	00	분청	중앙의회	0000년3차	조건부	0000 육성사업	410	1. 계획대비 총사업비 00억원(40.7%) 증가 (00억원 → 00억원) 2. 계획대비 시도비 00억원(41.9%) 증가 (00억원 → 00억원) ※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 대상 가능성 있음	
2	00	분청	중앙의회	0000년1차	적정	00 도로 조성사업	350	1. 계획대비 지방채00억원(100%) 증가 (00억원 → 00억원) 2. 계획대비 시도비 00억원(60.1%) 증가 (00억원 → 00억원)	
3	00	00구	중앙의회	0000년1차	조건부	00 도로 개설사업	262	※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관련 세부 내용 작성 필요	
4	00	00군	중앙의회	0000년1차	적정	00 도로 확포장사업	155	1. 계획대비 총사업비 00억원(31.7%) 증가 (00억원 → 00억원) 2. 계획대비 시군구비 00억원(86.1%) 증가 (00억원 → 00억원) ※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 대상 가능성 있음	

□ 이때 선정사유는 사업비 증가(총사업비, 지방채, 자체재원), 일정지연, 재심사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사업비 증가는 총사업비, 지방채, 자체재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준비단계를 기준으로 각 사업비 증가액 및 증가율을 제시함
- 일정지연은 준비단계를 기준으로 공사준공시점을 비교하여 제시함
- 재심사 가능성의 경우 총사업비, 지방채 증가, 신규지방채 발행, 일정지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보를 통해 확인된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유무에 따라 관련 세부내용 확인을 요청함

<표 V-17>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사유 예시

구분		선정사유 예시
사업비 증가	총사업비	1. 계획대비 총사업비 00억원(00%) 증가(00억원→00억원)
	지방채	2. 계획대비 지방채 00억원(00%) 증가(00억원→00억원)
	자체재원	3. 계획대비 시도비(또는 시군구비 등) 00억원(00%) 증가(00억원→00억원)
일정지연		4. 계획대비 공사준공 00개월 지연('00.00→'00.00)
재심사 가능성	총사업비	※ 사업비 증가로 재심사 대상 가능성 있음
	지방채	※ 지방채 30% 증가로 재심사 가능성 있음
	신규 지방채	※ 신규 지방채 50% 이상 증가로 재심사 가능성 있음
	일정지연	※ 사업추진 4년 이상 지연으로 재심사 대상 가능성 있음
기타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 세부내용 작성 필요 ※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관련 세부 내용 작성 필요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사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의견은 중점관리사업 최종 선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중점관리 후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 및 자체평가 정보 등을 토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 이외에는 개별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명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함

- **따라서, 각 선정사유별 소명의견 및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사업의 준공, 투자재심사, 중단 및 보류, 투심면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실효성이 낮은 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에 포함되는 준공완료 및 예정, 투자재심사 완료 및 예정, 중단 및 보류 등의 경우 기초자료 제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기초자료 작성시 관련 내용이 누락하거나, 기초자료 제출시기와 중점관리사업 선정시기의 차이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재심사 가능성에 치중하여 소명의견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중점관리사업은 투자재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비 증가, 일정지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포함하나, 사업비 증가 및 일정지연이 투자재심사 사유에도 포함되다보니, 개별사유에 대한 소명보다는 재심사 대상 여부에 소명의견이 치중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소명의견 배포 양식상의 선정사유별로 답변작성란을 구분하고,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시 선정사유를 각 항목별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소명의견에는 별도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표 V-18〉 중점관리 후보사업 소명의견 작성 양식(안)

순번	광역	기초	투자심사 유형	투자심사 시기	투자심사 결과	투자 사업명	사업비 ¹²⁾ (억원)	선정사유	선정사유별 자치단체 의견제출
1	00	분청	00의뢰	0000년 00차	조건부	0000사업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제외대상	

12) 총사업비는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3. 사업 관리단계

- ‘사업 관리단계’는 ‘사업 검토단계’에서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자체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는 단계임
 - 또한 이전년도에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관리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재심사 대상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 자체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자체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중점관리사업 선정 사유 및 사실 확인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분기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공정률 제시)임
- 특히 연차별 종합이행계획의 경우 향후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임
- 자체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 선정결과 배포시 양식 및 작성요령을 배포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체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자체관리계획 작성요령의 경우 연차별 종합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세부항목별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체관리계획 검토시 확인된 오류 등을 토대로 항목별 매뉴얼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가. 사업 추진현황 관련

- 자체관리계획 양식은 크게 사업추진현황과 중점관리대상사업 자체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이중 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사업개요, 사업비(연차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 투자심사 이력,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상에서는 사업목적, 근거, 시행주체, 사업위치,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내용,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등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개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시 자체관리계획 상의 준비 단계 내용과 투자심사의뢰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추진단계의 경우 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초자료 작성시 요청한 추진단계 자료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특히 추진단계의 경우 기초자료 작성시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자체관리계획 작성시점의 현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기초자료작성 시점과 자체관리계획 작성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관리계획 작성시점의 자료를 최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에서 준비단계와 추진단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검토상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에 당초 제출한 투자사업이력관리와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점관리사업 선정 상 주요 항목인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DB와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표 V-19〉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개요)

구분	내용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현재(0000.12.)
사업목적	- (신명조12)	
시행근거		
시행주체		
사업위치		
총사업비		
사업기간	- 건설기간 - 운영기간	
사업내용		
채무부담 행위		
매입확약		

2) 사업비

- 사업비의 경우 연차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 사유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연차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의 경우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기투자 금액은 준비단계(최종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이후 추진단계에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투자 이외의 연차별 투입금액은 준비단계의 경우 투자심사 시점 이후, 추진단계의 경우 작성시점의 시점 이후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즉,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앞서 검토한 사업개요와 동일하게 추진단계의 사업비를 기초자료 제출시의 추진단계가 아닌 자체관리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함
-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경우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중 재원별 사업비에 대해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와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의 경우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데, 오류로 금액을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자체관리계획 상에서 사업비 이외에 사업개요 및 투자심사 이력에서도 총사업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항목에서 총사업비를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존재함
 - 따라서 자체관리계획 전체에서 총사업비가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표 V-20〉 자체관리계획 양식(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	(추진단계) 현재(2018. 12.)	변경사유	
재원별 투자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표 V-21〉 자체관리계획 양식(연차별 자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0000. 12.)						
		계	기투자	0000년	0000년	0000년		
자원별 투자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구분		(추진단계) 현재(0000. 12.)						
		계	기투자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자원별 투자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3) 투자심사 이력

□ 투자심사 이력상에는 투자심사 시기 및 결과, 판정사유 등 투자심사 경과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의 변경내역, 투자심사 통과조건의 이행내역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심사 이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받은 최종 심사 및 2단계 심사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특히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내역은 투자심사 경과상의 판정사유에 대한 이행내역을 의미하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임에도 판정사유 및 이와 관련한 이행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표 V-22) 자체관리계획 양식(투자심사 이력)

5) 투자심사 이력

1) 투자심사 경과 ※ 최종심사 및 2단계 심사에 한해 작성

- '00년 00월(또는 0차)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
 - 판정 사유 :
- '00년 00월(또는 0차)
 - 판정 사유 :

2) 변경 내역

- 사업비 / 사업기간 변경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지방채	기	타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증·감											

〈표 계속〉

○ 사업규모 변경 내역		
구 분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사업비		
변경사유		
사업규모		
변경사유		

3)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내역

구 분	투자심사 조치사항	이행내역	비고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나. 중점관리대상사업 자체관리계획

- 중점관리대상사업 자체관리계획은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 사업추진의지 항목으로 구분됨

1)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사업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 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임
 - 즉 사업비 증가 및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현 상황 파악 및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임
- 따라서 중점관리사업 선정결과에 제시된 모든 선정사유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시 투자재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종합의견의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설명 등을 메뉴얼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V-23〉 자체관리계획 양식(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구분		내용	비고
①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종합의견		
②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종합의견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추진상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자원 미확보, 민원 및 갈등, 행정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보완, 외부여건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중점관리 사업 선정사유별 원인규명을 통해 확인된 원인 등과 중점관리사업 선정사유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임
 - 이에 따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가능성에 대해 적시하며, 해결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상추진, 지연, 중단, 사업취소 등의 판단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과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함
- 따라서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및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과의 내용상의 관계 등에 대해 매뉴얼상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V-24〉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구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가능성	비고
재원 미확보	문제점		
	해결가능성		
민원 및 갈등	문제점		
	해결가능성		
행정 및 절차	문제점		
	해결가능성		
사업계획 변경/보완	문제점		
	해결가능성		
외부여건 변동	문제점		
	해결가능성		



향후 추진상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 결과			
정상추진 (완공년도 불변)	지연 (완공년도 변경)	중단 (장기추진)	사업취소 (사업철회)
	○		

3)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는 앞서 제시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해결가능성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계획은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나, 해결방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표 V-25〉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문제점 ①	• 사업지연 / 일시중단
	↓
해결방안	• 준공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재수립
	↓
이행계획	•
문제점 ②	• 토지 및 지장물 수용 관련 소송 존재
	↓
해결방안	• 토지수용 재결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
	↓
이행계획	•

4)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은 사업추진현황과 자체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의미함
- 따라서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은 자체관리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로 상세하게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은 사업완료년도까지 분기별로 작성하되, 공사단계에서는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차년도 이력관리시 여기서 제시된 연차별 종합이행계획 토대로 이력관리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시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제시 없이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나, 선정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체관리계획을 미수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례 등을 매뉴얼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점관리사업 선정사유 소명 여부와 관계 없이 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경우 연차별 종합이행계획에 대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표 V-26〉 자체관리계획(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사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완공년도
1/4분기	•건축설계공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심의”- (재심의)	•공사계약절차 이행	•지상1층 골조 공사 •지상2층골조공 사	•마감공사
2/4분기	•문화재 표본조사 •기본및실시설 계용역 착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GB관 리계획심의”	•공사착공	•지상2층 골조 공사 •지상3층 골조 공사 •마감공사	•토목공사 •마감공사
3/4분기	•기본및실시설 계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토공사 •지하1층 골조 공사	•지붕골조공사 •마감공사	
4/4분기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GB관 리계획심의”- (심의유보)	•기본및실시설 계용역 완료 •공사계약의뢰 (조달청)	•지하1층 골조 공사	•마감공사	
예정공정율 (%)	20%	40%	55%	80%	100%

제4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단계 확대시 추가 반영사항

1. 운영단계 자료 수집 현황

- 2022년도 지침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이력관리 관리범위를 운영단계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단계 실적 데이터를 검토함
-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세부자료를 입력하는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16~2019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공공시설의 운영현황 관련 자료를 중앙투자심사자료와 비교하여 사전심사 이후 사후 운영행태에 대해 비교검토하고자 함
 - 다만 약 970개에 이르는 지방재정 365 등재 공공시설 중 약 82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만이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재정365에 등재된 공공시설의 경우에 건축 이전 예상되었던 각종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하는 작업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는 현재 지방재정365의 데이터만으로는 투자심사 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 2022년부터 지방재정365의 공시대상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단계 관리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365의 데이터 확대 및 투자사업과의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에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해 각 시설유형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실적 통계를 일부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통계와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문화·체육시설 외 다른 유형의 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검토도 요구됨
- 운영단계를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 있으며, 그 외 공원, 주차장,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일부 실적들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시설별로 수집되는 운영실적 관련 항목이 상이하며,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주요 항목인 이용인원, 운영비용, 운영수익 등 이력관리에서 필수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항목이 수집되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임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경우, 9개 유형의 문화시설에 대한 통계를 매년 공시하고 있는데, 시설 중 일부 시설(예: 도서관, 문화예술회관)만 운영예산 관련 정보가 공개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에서는 위치, 면적 등 물리적 현황만 제시될 뿐 운영예산, 이용인원 등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도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취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표 V-27〉 공공시설 운영현황 통계

공공시설명	공통항목	특수항목	출처
국립도서관	시설명,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건립일, 인력현황	설립주체, 홈페이지, 건물면적, 부지면적, 운영예산, 열람석, 이용자수, 이용책수, 소장자료,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공공도서관			
박물관		종구분, 연면적, 부지면적, 관람료, 관람인원, 소장자료, 등록정보, 온라인서비스 현황, 개관정보, 시설 공간별 면적,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유형	
미술관		등록구분, 연면적, 부지면적, 관람료, 관람인원, 소장자료, 등록정보, 온라인서비스 현황, 개관정보, 시설 공간별 면적,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 운영주체, 홈페이지, 총면적, 이용자수, 개관정보, 예산현황, 운영프로그램 수, 공간유형	
문예회관		건립주체, 운영방식, 운영주체, 홈페이지, 연면적, 결산운영비, 수입액, 객석 수, 관객/교육참여자 수, 시설 공간별 면적, 프로그램 가동일	
지방문화원		원장, 홈페이지, 시설면적, 참여자수, 예산현황, 시설 공간별 면적, 주요 운영프로그램, 회원수	
문화의집		운영방식, 운영주체, 홈페이지, 총면적, 예산총액, 이용자수, 개관정보, 시군구청 담당부서, 시설 공간별 면적,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현황, 동아리 현황	

공공시설명	공통항목	특수항목	출처
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연면적, 최초출연금, 기금규모, 예산현황, 주요사업, 사업현황, 조직현황, 설치조례, 이사장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명, 입소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양로시설		운영주체, 시설장, 입소자수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시설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운영주체, 시설장, 이용인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구분, 시설종류, 입소현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명, 주소, 시도, 연락처, 건립일	인력현황, 시설장, 법인명, 근로장애인, 관할 시군구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인력현황, 시설장, 법인명, 관할 시군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시군구, 법인명, 정원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시군구, 법인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관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시군구, 설립구분, 급여유형	
노인복지주택		주소, 연락처, 설치일, 종사자수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장, 운영현황, 분양현황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공공체육시설	시설명, 준공연도	시도, 시군구, 관리주체,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건설사업비, 관람석, 소유기관, 경기장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공공시설명	공통항목	특수항목	출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명, 주소, 연락처, 최초등록연월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설치주체, 운영방법, 운영단체, 시설종류, 설치자, 홈페이지, 연면적, 부지면적, 수용정원, 건물층수, 건물동수, 공공/민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 설 세부현황』
공동육아나눔터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전국 『공동육아나눔 터 현황』
해바라기센터	시설명,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시설 현황정보』
특수학교	시설명, 주소, 연락처, 인가년월일, 개교년월일	시도, 설립별, 장애영역, 교장명, 홈페이지	교육부, 특수학교 현황
공공시설	시설명, 건립일, 관리인력	건물면적, 토지면적, 운영비용, 운영수익,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 (지방재정365)

주1) 공통항목에서 건립일은 개관일, 설립일, 설치(신고)일, 지정일, 개소일 등 포함

주2) 공통항목에서 인력현황은 직원(현원, 정원), 전담운영인력, 종사자수 등 포함

2. 운영단계 작성 지침

- 2022년 지침연구에서는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데이터 및 실제 인천시 담당공무원의 작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공시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이력관리 운영단계 작성기준을 제시함
- 따라서 향후 이력관리 운영단계 범위 확대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되나, 2022년 지침연구의 작성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표 V-28〉 운영단계 작성기준

별표. 운영단계 작성기준**1.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작성에 있어 예산자료가 아닌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② 비용 및 수익은 세부항목별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특히 금액 단위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비용 및 수익이 전년도 자료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큰 값이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계산원칙

- ① 비용과 수익은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과 최종 귀속된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민간이 관리주체인 경우(민간위탁 등) 전체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공시설 운영관련 세출예산은 조직(실·과·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기초(설정) 등으로 편성될 수 있으므로, 비용 산정시 공공시설과 관련 없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비용의 구분

- ① 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② 비용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비용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
계	xxx	xxx	xxx	xxx

4. 운영방식에 따른 비용 반영

- ① 공공시설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직영과 민간 등에 맡기는 위탁으로 나누어진다.
- ② 직영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본청의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소에서 여러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및 경비 중 개별 공공시설 운영에 관련된 직접인력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
- ③ 본청 내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먼저 부서별 인건비 금액을 파악한 후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위탁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맡기는 경우와 민간에 맡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위수탁협약 등에 따라 산정된 계약금액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성격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⑤ 위탁금액을 다음해에 정산함에 따라 반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 운영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제 지급한 연도의 위탁사업비(운영비용)로 본다.

5. 공동비와 간접비

- ① 동일 인력이 여러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전용면적, 기타 증빙서류 참고)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산정한다.

- ② 동일인력이 공공시설 운영업무와 기타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직접인력에 포함되는지)과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 ③ 다른 공공시설 등과 공통으로 부과되는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예: 전용면적, 사용량)에 따라 배부한다.

6. 인건비

- 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인건비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③ 공공시설 운영에 직접 관련된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을 인건비로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관리감독에 따른 인건비는 제외한다.

7. 직접인력의 범위

- ① 공공시설 운영관련 직접인력에는 일반인력과 콘텐츠운영인력이 포함된다. 다만 예술단원은 제외한다.
- ② 일반인력 및 콘텐츠운영인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일반인력	행정업무 인력, 시설물의 유지보수 인력 (예) 팀장, 일반관리(운영지원 및 부대시설 관리, 입주단체 관리, 시설대관 관리, 공무직 관리 등) 시설물관리(기계, 전기, 건축, 토목, 조경 등), 회원관리, 청소, 안내
콘텐츠 운영인력	특정 프로그램 운영관련 강사비, 공연 및 행사관련 인건비 (예) 스포츠 강습, 문화교양 수업, 문화예술 공연

8. 유지보수비

- ① 유지보수비는 공공시설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 ② 리모델링이 아닌 시설보수 및 수리비용 등 회계결산 상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계상한 것은 유지보수비에 포함한다.
- ③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한 경우 리모델링 등 사업비를 위탁사업비에 포함한 경우(공기관 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에는 이를 유지보수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운영관리비와 기타비용

- ① 운영관리비란 운영비 중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한다.
- ② 각종 사업비 및 행사비용도 운영관리비에 포함한다.
- ③ 공공시설의 개관에 소요된 도서, 미술품, 서가구입비 등은 건립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관 이후에 시설운영을 위해 도서, 미술품, 서가구입비 등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 ④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임대료 및 이자비용은 원리금 분할상환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수익의 구분

- ① 수익은 해당 공공시설의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직접수익을 말한다.
- ② 수익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운영수익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수익	기타수익
계	xxx	xxx	xxx	xxx	xxx

11.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 ① 입장료는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예산목 212-07)을 말하며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 ② 대관료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경우의 수입을 말한다(관련 예산목: 212-09 기타사용료).
- ③ 임대료는 공공시설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수입으로 대관료를 제외한다(관련 예산목: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2. 귀속된 수익

- ① 귀속된 수익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계약(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수익을 말한다.
- ②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입액 또는 업무 효율성 향상, 이자 발생 등으로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계약이 된 경우를 말한다.

13. 기타수익

- ① 기타수익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말한다(관련 예산목: 224-07 그외수입).
- ② 공사, 공단, 민간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지급한 사업비의 반납액이므로 기타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예술단의 외부출연에 따른 수익금은 기타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수익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공연프로그램의 판매수익금
 - 공공시설 재해복구와 관련된 보험금 수령액
 - 공공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불용장비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자료 : 함윤주 외(2022) pp.226~228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5.8).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 김윤승. (2020).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 29-66.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류영아. (20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류영아. (201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보고서 제311호 국회입법조사처.
- 문명재. (2009).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보제공 (Public Information) -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인석·박재희. (2022). 정책수단으로써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간 정합성 분석: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3): 67-104.
- 송지영 외. (2016)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심층점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양지숙.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여규동·최성원·박선영. (2019)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민수·김재일. (2009).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309-332.
- 오민수. (2013). 영국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정책사례연구: 정책도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1-32.
- 윤태섭·서정섭·이장욱.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창균. (2013).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희진·박현욱. (202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정우. (202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9(1): 1-23.
- 한재명·유승주.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명주
- 함윤주·김상기·김도영·최성원·주재문. (2022).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2.9)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0).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
- 행정안전부. (2022a). 2023년(2022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 행정안전부. (2022b). 2024년(2023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
- 행정안전부. (2022c).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3a).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행정안전부. (2023b).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행정안전부. (2023c).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
- Bobrow, D. B., & Dryzek, J. S. (1987). Policy Analysis by Desig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alamon, L. M.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 Vedung, E. (1998).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M.-L. Bemelmans-Videc, R. C. Rist, & E. Vedung (Eds.).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Vedung, E., & van der Doelen, F. C. (1998). "The Sermon: Information Programs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Choice, Effects and Evaluation." in M.-L. Bemelmans-Videc, R. C. Rist, & E. Vedung (Eds.).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부록 1〉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매뉴얼(안)

본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매뉴얼』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수행단계별 수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자료제출 항목 및 수행방식 변경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2023. 12.

〈목 차〉

1. 개괄	235
1.1. 제도의 개요	235
1.2. 대상 및 관리범위	237
1.3. 용어의 정의	239
1.4. 주요내용	240
1.5. 전담기관	241
1.6. 추진시기 및 절차	243
2. 각 단계별 수행 매뉴얼	245
2.1. DB 구축단계	245
2.2. 사업 검토단계	252
2.2.1.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252
2.2.2. 중점관리사업 선정	254
2.3. 사업 관리단계	255
2.4. 단계별 이력관리 자료 작성지침	256
2.4.1. 이력관리 정보	256
2.4.2. 소명자료	277
2.4.3. 자체관리계획	278

I. 개괄

1.1. 제도의 개요

□ 개념

-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사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 투자심사 통과 이후 다음연도부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투자심사 시 사업계획 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 추적 및 관리

[그림 부록-1] 지방재정투자사업 주요 추진절차



- 주 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2)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의뢰
- 3) 투자심사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 목적

-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
-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투자심사 제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하여 제도권 내로 회귀하도록 유도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6항 (2024.1.12. 시행)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의 및 대상, 전담기관, 세부 지침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2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연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 신설(2015.12.24. 개정·조문신설)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관련 내용 신설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의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2항 신설(2023.4.11. 개정·
조문신설, 24.1.12. 시행)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활용 내용 신설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
 - 전담기관은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

1.2. 대상 및 관리범위

□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중앙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투자심사 통과사업(적정, 조건부 통과)
 - 「지방재정법」 제37조2(타당성조사)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이후 차년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에 해당함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0호, 2022. 7. 11., 일부개정]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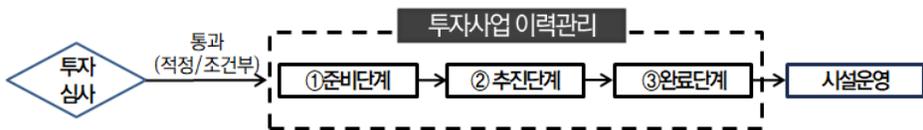
□ 적용시점

- 매해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13년~직전년도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관리함
 - 예: 2023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13~2022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 2016년 이력관리 제도 수행 기준, 최근 3년간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3년 투자심사 통과사업부터 포함함

□ 관리범위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투자사업의 심사통과 이후 사업 진행단계별 사업정보를 기록·관리하며, 이때 투자심사 통과시점부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관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는 1건의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기준으로 각종 사업정보를 수집 및 관리함
 - 투자심사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주요 변경사항 및 추진경과에 대한 내용을 점검함

[그림 부록-2] 투자사업 이력관리 범위



- 운영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한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에 따라 기록·관리함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는 재정공시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이 포함되었으며,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공개하도록 함
 - 다만 대상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 중 건립비용이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함¹³⁾

1.3. 용어의 정의

□ 사업정보별 구분

- 준비단계 정보: 투자심사 당시 사업계획
- 추진단계 정보: 투자심사 이후 2차년도부터 당해연도 말 기준 사업추진 내역

□ 사업단계별 구분

- 준비단계 사업: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추진단계 사업: 2013년부터 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이력관리 수행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완료단계 사업: 이력관리 수행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된 사업 중 직전년도 말 기준으로 완료된 사업
- 운영단계 사업: 사업완료 이후 운영을 시작한 사업

13) 2021년까지 건립비용 기준은 기초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200억원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 100억원씩 상향조정됨

□ 사업관리를 위한 구분

- 증점관리 후보사업: 투자심사 당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변동, 재원구조 변경, 사업내용 및 규모 변경이 크거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재심사 대상),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등 향후 증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후보군
- 증점관리사업: 증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1.4. 주요내용

□ 주요 절차

-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로 진행

□ [1단계] DB구축

- 자치단체는 투자사업 단계별(①준비단계→②추진단계→③완료단계) 사업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스스로 추진경과를 점검
-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전담기관)에 제출

□ [2단계] 사업검토

- 행정안전부(전담기관)는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검토
-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증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

□ [3단계] 사업관리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체관리계획 수립 요청
- 차년도부터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365에 사업진행상황 공시

1.5. 전담기관

□ 전담기관 개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3항(2024.1.12.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임(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0호)
 -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개소(2014.12월)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투자분석센터’를 개소(2022.1월)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 지정 예정임
 - 다만, 2016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도입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이력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

□ 전담기관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제3항(2024.1.12.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자료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e-호조를 위탁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e-호조를 통해 수집한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전반과 연관된 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와 연관된 정보에는 투자심사 정보를 포함함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시점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2024년부터 전 기능 오픈)의 추진경과 및 투자심사 과정에서 활용시점과 연계하여 검토 예정임
 -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자사업을 “관리사업”단위로 관리하여 투자심사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까지 자료가 자동 연계되어 이력관리 자료의 수작업이 최소화될 예정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 수집방식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배포된 이력관리 표준엑셀 서식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며, 현행 방식은 차세대 e-호조 활용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임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 구축
 - 투자사업 이력관리 분석 및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 검토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
 - 자체관리계획 검토
 - 대규모 사업 관련 진행상황 공시자료 지원
 - 기타 이력관리 자료를 활용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관련 업무 지원

1.6. 추진시기 및 절차

□ 추진시기 : 매년 1회

- 1단계: 자료제출 요청시기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확정되는 4~5월이며 정해진 기간내에 자료를 요청하되, 자료 검토 결과 재제출 요청기간까지 고려하여 7월까지 자료 구축
- 2단계: 자료 분석,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소명자료 검토, 최종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10월까지 수행
- 3단계: 자체관리계획 수립 및 직전년도까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의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각종 공시자료 검토를 12월까지 수행

□ 추진절차 및 수행기관

〈표 부록-1〉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절차별 수행주체 및 시기

구분	추진내용	수행주체	시기
①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단계 정보 입력(※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정보 입력(※ 전년도 결산 기준) 	지자체 입력 및 제출	5월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보완 	전담기관	7월
②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전담기관→지자체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 및 전담기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 및 전담기관→중투위 보고	10월
③ 사업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지자체 제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 및 전담기관	12월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안부 및 전담기관	12월

II. 각 단계별 수행 매뉴얼

2.1. DB 구축단계

□ 자료작성 주체 및 제출자료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및 전담기관을 통해 요청된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자료를 배포된 엑셀양식(또는 추후 e-호조)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이력관리 자료제출 양식은 ①배포목록 엑셀파일과 ②개별사업별 엑셀파일 2개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는 각 양식을 작성 및 상호 검토하여 행안부(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부서: 자료 배포 및 취합 및 검토 역할
 - 개별사업 엑셀파일을 사업담당부서에 배포 ⇒ 취합
 - 배포목록 엑셀파일('00년도 이력관리 대상사업 목록')에 개별사업 엑셀파일 제출 여부 및 기타 특이사항 등 작성
 - 누락된 사업이 있는 경우 '누락사업 목록 제공 및 개별사업 엑셀파일 별도 요청 및 취합
 - 또한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자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심사 의뢰서를 제출
- 사업부서: 담당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정보 작성
 - 개별사업 엑셀파일에 이력관리 정보 입력 ⇒ 예산부서에 제출
 - 개별사업 엑셀파일 파일명 '추진(또는 준비)_광역_기초_사업명(투심년도-차수)' 유지하여 작성 및 제출
 - 배포목록 엑셀파일('00년도 이력관리 대상사업 목록')에 사업진행상황, 사업완료시점, 기집행액, 공정률, 재심사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 작성

〈표 부록-2〉 자료 작성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작성 및 검토 항목
예산 부서	배포목록 엑셀파일 배포/취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여부, 특이사항 누락사업 관련 내용
	개별사업 엑셀파일 배포/취합, 검토	
사업 부서	배포목록 엑셀파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진행상황, 사업완료시점, 기집행액, 공정률, 재심사여부, 특이사항
	개별사업 엑셀파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사업정보

□ 작성대상 및 기준

-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완료된 사업, 최근 투자심사 면제(제외)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일지라도 추진단계 입력 및 제출이 필요함

〈표 부록-3〉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별 입력사항 개선(안)

구분	2022년 기준 이력관리 입력기준			
		준비단계		추진단계
		최초	2단계	
2021년 이전 투자 심사	최초심사통과 (조건부, 적정 등)	2021년 이전 해당 투자심사 의뢰서		2021년 결산기준
	재심사			
	최초심사 +2단계 심사	2021년 이전 투자심사 (최초심사) 의뢰서	2021년 이전 해당 투자심사(2단계) 의뢰서	
2021년 투자 심사	최초심사통과 (조건부, 적정 등)	2021년 투자심사 의뢰서		-
	재심사			-
	2단계		2021년 2단계 심사 의뢰서	2021년 결산기준
	최초심사 +2단계 심사	2021년 투자심사 (최초심사) 의뢰서		

주: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도 이력관리 입력사항임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유형 사례(안)〉

1. 준비단계 입력대상 사업유형

- (1) 2021년 1~4차 통과(조건부, 적정 등)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2) 2021년 1~4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3) 2021년 이전에 통과 또는 조건부 2단계 통과하였으나, 이후 2021년에 재심사를 받은 경우
 - 2021년 이전 통과 후 2021년 1~4차 재심사 통과(조건부, 적정 등) : 준비단계 최초 입력
 - 2021년 이전 조건부 2단계 통과 후 2021년 이전에 2단계 심사에서 재검토를 받고 2021년 1~4차 중 재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 준비단계 최초 입력

2. 추진단계 입력대상 사업 유형

- (1) 2021년 이전 투자심사 통과 :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 (2) 2021년 이전 투자심사 통과 후 2021년 이전 재심사 통과 :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3. 2단계 심사 관련 사업유형

- (1) 2021년 중 조건부 2단계 통과 후 2단계 심사 통과
 - 2021년 1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2021년 3차 2단계 심사 통과
: 준비단계 최초(2021-1차 기준), 준비단계 2단계(2021년 3차 기준) 입력
- (2) 2021년 이전 최초 심사 통과 후 2021년 1~4차 2단계 심사 통과 :
 - 2018년 1차 조건부 통과 → 2019년 3차 조건부 2단계 통과 → 2021년 3차 2단계 심사 통과
: 준비단계 2단계(2021년 3차 기준), 추진단계 2021년 결산 기준

□ 배포목록 엑셀파일 주요 작성사항

〈표 부록-4 배포목록 양식〉

심사 구분	심사차수	2단계 심사차수	광역	기초	사업명	LIMAC 의견사항	입력파일 제출여부 (O/X)
중투심	2019년3차		서울	00구	00 조성 사업		0
투자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배포						예산부서 확인 및 작성	
사업 진행상황 (추진중, 완료, 보류, 취소중 택1)	전년도 말 기준 기집행액 (백만원)	사업 종료/준공 완료 시점(완료 사업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공정률		재심사 의뢰(예정) 여부 (O/X 중 택1)	지자체 의견사항 (재심사 및 취소 사유, 재심사 의뢰 또는 예정시기 등 기재)	
	1,500	추진중	53%		0	재심사 의뢰 예정(24.1차)	
사업부서 확인 및 작성							

※ 입력파일 제출여부 : 개별 사업 엑셀 파일 제출 여부를 'O' 또는 'X'로 표시
 ※ 사업 진행사항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 경우 '추진중', ▲2022년 말 기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 ▲사업이 영구적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로 표시
 ※ 재심사 의뢰(예정)여부 : 재심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예정인 사업의 여부를 'O' 또는 'X'로 표시
 ※ 지자체 의견사항 : ▲사업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재심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예정인 사업은 심사 시기, 심사주체(중앙/시도/시군구 자체 등) 및 재심사 사유 등, ▲입력파일을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사유, ▲기타 사업 추진상 일시 중단 및 특수 상황 등 작성

□ 개별사업 엑셀파일 주요 작성사항

- 준비단계 정보는 투자심사 의뢰서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며, 추진/완료단계 정보는 동일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작성함
- 각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본 매뉴얼 “2.4 단계별 이력관리 자료 작성지침” 참고

〈표 부록-5〉 사업정보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추진단계 / [3단계]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p>※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 : 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가진단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자료 수집 및 검토

- 행정안전부와 전담기관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수집된 자료 검토 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다음 필수정보 기준에 따라 필수정보가 누락된 사업을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제출 요청

〈표 부록-6〉 필수 사업정보

구분	필수항목		비고
	준비단계	추진단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명	
	작성회계년도, 지역(광역, 기초), 사업 분야 및 부문	-	
투자심사 정보	심사시기	-	
	심사유형	-	
	심사결과	-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	-	심사결과가 조건부일 경우 작성 필요	
사업량	부지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유형에 따라 필수정보 여부 추가 검토
일정정보	공사착공	공사착공	
	공사준공	공사준공	
총사업비	합계	합계	
재원조달 계획	예산편성 시작년도	예산편성 시작년도	기집행액 계산에 필요
	재원별 총사업비 합계	재원별 총사업비 합계	
자가진단	-	해당 여부	
	-	기재사항(여부가 0일때)	

- 다음 오류정보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자료간 총사업비가 상이한 경우, 이상수치 등 특이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제출 요청

〈표 부록-7〉 오류 정보 기준

구분	오류 사항		비고
	준비단계	추진단계	
2단계 심사 관련	조건부에 2단계 심사이행 작성되어 있으나 심사결과를 조건부(2단계)로 표시하지 않음		심사 2단계심사 대상 및 수행여부 파악을 위해 필요
단위입력 오류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사업비 차이가 크게(1000% 이상) 나는 것으로 검토	
사업비 오류	준비단계 총사업비 합계와 예산편성내역의 합계가 불일치 (단 100만원 이하 불일치는 오류에서 제외)	추진단계 총사업비 합계와 집행내역의 합계가 불일치함 (100만원 이하 불일치는 오류에서 제외)	
예산편성 오류	준비단계의 공사준공연도와 연차별 예산편성내역 마지막 연도가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단계의 공사준공연도와 연차별 집행내역 마지막 연도가 불일치 	사업유형에 따라 불일치할 수 있으나, 오류여부 확인 필요

2.2. 사업 검토단계

2.2.1.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 대상

- 당해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추진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함

□ 주요 기준

- 총사업비 증가(사업비 규모에 따라 가중치 적용), 자체재원 증가, 지방채 증가, 일정 지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전체 사업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총사업비, 자체재원, 지방채는 10% 증가시 1점씩 부여(최대 10점)
 - 사업비 규모 가중치는 100억원 기준으로 100억원 증가 시 1.1 적용
 - 일정은 12개월 지연시 1점씩 부여(최대 10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와 관련 사업비 및 일정 관련 기준에 해당되어 재심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점관리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 총사업비 30% 증가분 중 물가인상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여 재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추후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임
- 따라서 물가인상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과 상관없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모두 후보사업으로 선정함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 단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의 50% 초과,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60% 초과
- (사업 지연 관련)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기타 기준

- 자가진단 결과,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에 있는 사업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업
- 기타 투자사업과 관련한 이슈 발생시 후보사업 선정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표 부록-8〉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구분		세부기준	
사업비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 0점 20% 미만 증가: 1점 30% 미만 증가: 2점 ...	[가중치] 100억원 미만: 1배 200억원 미만: 1.1배 300억원 미만: 1.2배 400억원 미만: 1.3배 ...
	자체재원		-
	지방채		-
사업기간	준공시기	12개월 미만 증가: 0점 24개월 미만 증가: 1점 36개월 미만 증가: 2점 ...	-
종합	합계 N점 이상(상위 10% 사업)을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			
재심사	재심사 기준	총사업비 증가 기준(30% 등) 해당 사업	
		지방채 증가 및 신규발행 관련 기준 해당 사업	
		사업추진 지연 해당 사업	
기타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기 있는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사업		

2.2.2. 중점관리사업 선정

□ 소명자료 작성

- 행정안전부(전담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각 선정사유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선정사유별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함

□ 소명자료 검토기준

- 전담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와 전담기관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투자사업을 당초 목표한 바대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함
-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제외함
 - 준공: 이미 준공되었거나, 2023년도 하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 재심사: 재심사 완료 사업 및 재심사 또는 2단계 심사 예정 사업
 - 중단·보류: 중단, 보류 또는 사업 취소하였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투심 제외: 현재 기준 투자심사 및 재심사 제외사업
 - 기선정: 과거 중점관리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었던 사업
 - 기타: 토지매입사업, 펀드사업, 중앙부처 사업이거나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

□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 행정안전부(전담기관)은 중점관리사업 선정하여 선정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함
-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선정사유를 통보하고 자체관리계획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함

2.3. 사업 관리단계

□ 자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중점관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주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자체관리계획 주요내용
 -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와 전담기관은 제출된 자체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누락사항에 대해 추가로 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 직전년도까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함
- 행정안전부와 전담기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대규모 사업 진행상황 공시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진행 상황은 지방재정365에 공시함

2.4 단계별 이력관리 자료 작성지침

2.4.1. 이력관리 정보

2.4.1.1. 개요 및 입력양식

□ 개요

- 이력관리 정보는 이력관리 대상이 된 후 매년 배포된 엑셀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구체적으로 배포양식은 준비단계, 추진단계로 구성되며, 준비단계는 준비단계(최초심사), 준비단계(2단계 심사)로 구분됨

- 준비단계(최초심사)는 최종 투자심사를 의미하며, 2단계 심사를 받은 경우 준비단계(2단계심사)에 추가로 작성함
 - 따라서 투자심사 완료 후 이력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준비단계(최초심사)에 투자심사시의 사업정보를 입력함
 - 이때,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후 2단계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받은 심사를 기준으로 준비단계(최초심사)를 작성하며, 2단계 심사시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준비단계(2단계 심사)를 추가로 작성함
 - 예를 들어, 2022년 1차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후 2023년 1차 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받아 조건부 승인된 경우 준비단계(최초심사)는 2022년 1차 투자심사 기준으로 작성하되, 2023년 1차를 기준으로 준비단계(2단계심사)를 작성함
- 다만, 2단계 심사가 아닌 사업비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사업지연, 재원계획변경, 사업부지변경, 감사결과 등의 사유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준비단계(최초심사)를 수정작성함
 - 예를 들어 2017년 1차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023년 1차 투자심사를 받아 조건부 승인된 경우, 당초 2017년 1차 기준으로 작성된 준비단계(최초심사)를 2023년 1차 투자심사 기준으로 수정작성함

□ 입력양식

- 입력양식의 입력방식은 직접입력과 드롭박스 선택입력으로 구분되며, 양식상의 연두색 음영은 직접입력, 아래쪽 삼각형 표시(▼)는 드롭박스 선택입력임

[그림 부록-11] 준비단계(최초심사)

준비단계																																																							
사업개요 작성회계연도: [년월일] 지자체: [지역] 광역: [지역] 기초: [지역] 회계: [회계] 유형: [유형] 회계명: [회계명] 근거법령: [법령] 분류: [분류] 분야: [분야] 부문: [부문] 시행주체: [주체] 운영주체: [주체] 사업기간: [기간] 사업시작일: [년월일] 완료예정일: [년월일] 사업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사업량, 규모정보 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m ²] 주요 사업내용: [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m ²] 층수: [층(지하/지상)] 도로 길이: [km] 폭원: [차로(양쪽)] 주택 세대수: [세대] 세대 환경시설 시설용량: [m ² (톤)/일] 주차관련시설 연수: [연수] 기타 (유형): [유형] (단위): [단위]																																																						
투자심사정보 심사시기: [년월] 심사유형: [유형] 심사결과: [결과] 조건: [조건] 1 [] 2 [] 3 [] 4 [] 5 [] 6 [] 7 []	일정(예정)정보 <table border="1"> <tr> <td>기본계획</td> <td>[년월]</td> <td>[년월]</td> <td>[년월]</td> </tr> <tr> <td>실시설계</td> <td>[년월]</td> <td>[년월]</td> <td>[년월]</td> </tr> <tr> <td>보상</td> <td>[년월]</td> <td>[년월]</td> <td>[년월]</td> </tr> <tr> <td>공사착공</td> <td>[년월]</td> <td>[년월]</td> <td>[년월]</td> </tr> <tr> <td>공사준공</td> <td>[년월]</td> <td>[년월]</td> <td>[년월]</td> </tr> </table>	기본계획	[년월]	[년월]	[년월]	실시설계	[년월]	[년월]	[년월]	보상	[년월]	[년월]	[년월]	공사착공	[년월]	[년월]	[년월]	공사준공	[년월]	[년월]	[년월]																																		
기본계획	[년월]	[년월]	[년월]																																																				
실시설계	[년월]	[년월]	[년월]																																																				
보상	[년월]	[년월]	[년월]																																																				
공사착공	[년월]	[년월]	[년월]																																																				
공사준공	[년월]	[년월]	[년월]																																																				
사전절차이행정보 타당성조사 (독립입력 선택시 강제동기함) 조사기관: [기관] 결과: [결과] B/C: [B/C] P/I: [P/I] 기타: [기타] 의견: [의견]	진행상황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백만원] 운영비 (단위: 백만원) [백만원] 운영수입 (단위: 백만원) [백만원] 운영인력 [명] 운영비 - 백만원/년 [백만원/년] 운영수입 - 백만원/년 [백만원/년] 운영비 구성: [구분] [금액] 공사비 [] 보상비 [] 용역비 [] 운영설비비 [] 예비비 [] 기타 [] 합계 [] 운영수입 구성: [구분] [금액] 사용료 [] 임차료 [] 임대료 [] 기타 [] 합계 []																																																						
	분양수입 정보(산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분양가격: [원/m ²] 분양면적: [m ²] 분양시점: [년월] 분양종료시점: [년월] (누적분양률 기준, %) 연도: [0] [1] [2] [3] [4] [5] [6] 분양률: []																																																						
	자원조달계획 연차별 예산권상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기투자</th> <th>1</th> <th>2</th> <th>3-</th> </tr> </thead> <tbody> <tr> <td>극비 (우치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도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민간자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 예산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기투자	1	2	3-	극비 (우치영)	-	-	-	-	-	기타	-	-	-	-	-	시도비	-	-	-	-	-	지방비	-	-	-	-	-	지방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타 예산외	-	-	-	-	-	합계	-	-	-	-	-
구분	계	기투자	1	2	3-																																																		
극비 (우치영)	-	-	-	-	-																																																		
기타	-	-	-	-	-																																																		
시도비	-	-	-	-	-																																																		
지방비	-	-	-	-	-																																																		
지방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타 예산외	-	-	-	-	-																																																		
합계	-	-	-	-	-																																																		
	지방채 조건 개발액: [백만원] 신규발행: [백만원] 발행년도: [년]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 상환시점: [시점]																																																						

[그림 부록-12] 준비단계(2단계)

준비단계(2단계-심사시)																																																																			
<p>사업개요</p> <p>작성회계년도 <input type="text"/></p> <p>지자체 광역 <input type="text"/> 기초 <input type="text"/></p> <p>회계 유형 <input type="text"/> 회계명 <input type="text"/></p> <p>근거법령 <input type="text"/></p> <p>분류 <input type="text"/></p> <p>분야 <input type="text"/> 주문 <input type="text"/></p> <p>시행주체 <input type="text"/> 운영주체 <input type="text"/></p> <p>사업기간 사업시작일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 완료예정일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사업위치 <input type="text"/> 시도 <input type="text"/> 시군구 <input type="text"/> 읍면동 <input type="text"/></p>	<p>사업량,규모정보</p> <p>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input type="text"/> m²</p> <p>주요 사업내용 <input type="text"/></p> <p>(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input type="text"/> m² 층수 <input type="text"/> 층(지하/지상)</p> <p>도로 길이 <input type="text"/> km 폭원 <input type="text"/> 차로(양쪽)</p> <p>주택 세대수 <input type="text"/> 세대</p> <p>환경시설 시설용량 <input type="text"/> m²(톤)/일 주차관련시설 면수 <input type="text"/> 기타 (유형) <input type="text"/> (단위) <input type="text"/></p>																																																																		
<p>투자심사정보</p> <p>입자시기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차</p> <p>심사유형 <input type="text"/></p> <p>심사결과 <input type="text"/></p> <p>조건</p> <p>1 <input type="text"/></p> <p>2 <input type="text"/></p> <p>3 <input type="text"/></p> <p>4 <input type="text"/></p> <p>5 <input type="text"/></p> <p>6 <input type="text"/></p> <p>7 <input type="text"/></p>	<p>일정(예정)정보</p> <p>기본계획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실시계획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보상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공사착공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공사준공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사전절차이행정보</p> <p>타당성조사 <input type="text"/> (목적달성 전제시 영세유기업)</p> <p>조사기관 <input type="text"/></p> <p>결과 <input type="text"/></p> <p>B/C <input type="text"/></p> <p>P/I <input type="text"/></p> <p>기타 <input type="text"/></p> <p>의견 <input type="text"/></p>	<p>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p> <p>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input type="text"/></p> <p>운영인력 <input type="text"/>명 운영비 - 백만원/년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금액</td> </tr> <tr> <td>공사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보상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총역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운영설비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예비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기타</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합계</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p>운영수입 - 백만원/년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 <td>시용료</td> <td>임장료</td> <td>임대료</td> <td>기타</td> </tr> <tr>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구분	금액	공사비	<input type="text"/>	보상비	<input type="text"/>	총역비	<input type="text"/>	운영설비비	<input type="text"/>	예비비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시용료	임장료	임대료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구분	금액																																																																		
공사비	<input type="text"/>																																																																		
보상비	<input type="text"/>																																																																		
총역비	<input type="text"/>																																																																		
운영설비비	<input type="text"/>																																																																		
예비비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시용료	임장료	임대료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사업량,규모정보</p> <p>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input type="text"/> m²</p> <p>주요 사업내용 <input type="text"/></p> <p>(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input type="text"/> m² 층수 <input type="text"/> 층(지하/지상)</p> <p>도로 길이 <input type="text"/> km 폭원 <input type="text"/> 차로(양쪽)</p> <p>주택 세대수 <input type="text"/> 세대</p> <p>환경시설 시설용량 <input type="text"/> m²(톤)/일 주차관련시설 면수 <input type="text"/> 기타 (유형) <input type="text"/> (단위) <input type="text"/></p>	<p>일정(예정)정보</p> <p>기본계획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실시계획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보상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공사착공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공사준공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투자심사정보</p> <p>입자시기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차</p> <p>심사유형 <input type="text"/></p> <p>심사결과 <input type="text"/></p> <p>조건</p> <p>1 <input type="text"/></p> <p>2 <input type="text"/></p> <p>3 <input type="text"/></p> <p>4 <input type="text"/></p> <p>5 <input type="text"/></p> <p>6 <input type="text"/></p> <p>7 <input type="text"/></p>	<p>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p> <p>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input type="text"/></p> <p>운영인력 <input type="text"/>명 운영비 - 백만원/년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금액</td> </tr> <tr> <td>공사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보상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총역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운영설비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예비비</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기타</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합계</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p>운영수입 - 백만원/년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 <td>시용료</td> <td>임장료</td> <td>임대료</td> <td>기타</td> </tr> <tr>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구분	금액	공사비	<input type="text"/>	보상비	<input type="text"/>	총역비	<input type="text"/>	운영설비비	<input type="text"/>	예비비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시용료	임장료	임대료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구분	금액																																																																		
공사비	<input type="text"/>																																																																		
보상비	<input type="text"/>																																																																		
총역비	<input type="text"/>																																																																		
운영설비비	<input type="text"/>																																																																		
예비비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시용료	임장료	임대료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사전절차이행정보</p> <p>타당성조사 <input type="text"/> (목적달성 전제시 영세유기업)</p> <p>조사기관 <input type="text"/></p> <p>결과 <input type="text"/></p> <p>B/C <input type="text"/></p> <p>P/I <input type="text"/></p> <p>기타 <input type="text"/></p> <p>의견 <input type="text"/></p>	<p>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p> <p>분양가격 <input type="text"/> 원/m²</p> <p>분양면적 <input type="text"/> m²</p> <p>분양시점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분양종료시점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 (누적분양률 기준, %)</p> <p>연도 0 1 2 3 4 5 6</p> <p>분양률 <input type="text"/></p>																																																																		
<p>사업량,규모정보</p> <p>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input type="text"/> m²</p> <p>주요 사업내용 <input type="text"/></p> <p>(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input type="text"/> m² 층수 <input type="text"/> 층(지하/지상)</p> <p>도로 길이 <input type="text"/> km 폭원 <input type="text"/> 차로(양쪽)</p> <p>주택 세대수 <input type="text"/> 세대</p> <p>환경시설 시설용량 <input type="text"/> m²(톤)/일 주차관련시설 면수 <input type="text"/> 기타 (유형) <input type="text"/> (단위) <input type="text"/></p>	<p>자원조달계획</p> <p>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기투자</th> <th>1</th> <th>2</th> <th>3-</th> </tr> </thead> <tbody> <tr> <td>(부처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도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민간자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산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단위: 백)</p> <p>지방채 조건 기발행액 <input type="text"/> 백만원 신규발행 <input type="text"/> 백만원</p> <p>발행년도 <input type="text"/> 가치기간 <input type="text"/> 상환기간 <input type="text"/> 상환시점 <input type="text"/></p>	구분	계	기투자	1	2	3-	(부처명)	-	-	-	-	-	국비	-	-	-	-	-	기타	-	-	-	-	-	시도비	-	-	-	-	-	지방비	-	-	-	-	-	지방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타	-	-	-	-	-	예산외	-	-	-	-	-	합계	-	-	-	-	-
구분	계	기투자	1	2	3-																																																														
(부처명)	-	-	-	-	-																																																														
국비	-	-	-	-	-																																																														
기타	-	-	-	-	-																																																														
시도비	-	-	-	-	-																																																														
지방비	-	-	-	-	-																																																														
지방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타	-	-	-	-	-																																																														
예산외	-	-	-	-	-																																																														
합계	-	-	-	-	-																																																														

[그림 부록-13] 추진단계

추진단계(입력기준 : 2021년 말 기준) - 2021년 결산자료 활용										
사업장,규모정보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사업장 (공통) 부지면적	m ²		번호	투자심사 조건						
주요 사업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여부	이행여부 세부내용						
연면적	m ²	층수	1							
도로 길이	km	목원	2							
주택 세대수	세대	차로(양쪽)	3							
환경시설 주차관련시설 기타 (유형)	시설용량 면수 (단위)	m ² (톤)/일 (단위)	4							
사업위치 (번동시)	시도	시군구	5							
		읍면동	6							
			7							
일정(실제, 예정)정보			진행상황							
기본계획	년	월								
실시계획	년	월								
보상	년	월								
공사착공	년	월								
공사준공	년	월								
총사업비 및 자체평가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평가항목			여부	기재사항				
구분	금액	1 최근 사업비 투입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 없음								
공사비		2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보상비		-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융역비		-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운영설비비		- 용도별(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10% 이상 변동								
예비비		- 채우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등 있음								
기타		3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 변경있음								
합계	-	4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원금연도 변경								
		5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6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7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8 투자심사(조건부승인) 조건 불이행 여부								
		9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자원조달계획										
연차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0	1	2	3	4	5	6	7
국비	유저년	-								
	기타	-								
시도비	시도비	-								
	지방채	-								
기타	민간자본	-								
	기타 예산외	-								
합계	-	-	-	-	-	-	-	-	-	-
검증										
1.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 합계		누락	검증 결과							
2. 일정정보(진행상황) 누락		누락	불일치, 누락된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3. 자체평가항목 누락		누락								

2.4.1.2. 준비단계(최초심사) 및 준비단계(2단계 심사)

- ▶ 준비단계 정보는 심사를 받았던 **투자심사의뢰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 2단계 심사의 경우, **최초심사, 2단계 심사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함
- ▶ 다만, 재심사의 경우 이전 투자심사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 드롭다운 방식으로 선택가능한 항목은 직접입력 금지(다른파일에서 복사/붙여넣기도 금지)
- ※ 주황색 칸(드롭다운 선택), 초록색 칸(직접입력)은 입력 시 진한주황색으로 변환됨

□ 사업명 및 작성자 정보 등

- 준비단계의 사업명은 해당사업의 최종 투자심사 당시의 의뢰서 기준 사업명을 작성함
 - 다만, 최종투자심사 당시의 의뢰서에 기입된 사업명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투자심사 결과파일의 사업명이 띄어쓰기 등 일부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투자심사 결과 파일기준**의 사업명으로 작성함
 -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작성 필요
-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는 실제 준비단계의 이력관리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작성함

[그림 부록-14] 투자심사명 및 작성자 등

사업명(준비단계)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	
-----------	--	-----	--	-----	--	-----	--

<표 부록-9> 사업개요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사업명(준비단계)	투자심사 결과파일 기준으로 작성 필요 - 띄어쓰기 등 유의 필요	직접입력
작성자	실제 준비단계의 이력관리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자명 및 부서명, 연락처 기재	
부서명		
연락처		

□ 사업개요

[그림 부록-15] 사업개요 양식

- 사업개요는 최종 투자심사 당시의 의뢰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준비단계(최초심사, 2단계심사)에서만 입력함
 -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 작성회계년도, 지자체(광역시, 기초), 회계유형 및 회계명, 근거법령, 분류(분야 및 부문),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사업시작일, 완료예정일),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입력함

-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아래표를 참고하며, 준비단계(2단계)도 동일

〈표 부록-10〉 사업개요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작성회계년도		숫자 4자리수 연도 선택	드롭박스
지자체	광역시	17개 광역시·도 선택	
	기초	광역시 선택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선택가능	
회계	유형	일반, 공기업, 특별 중 선택	
	회계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혼합시 일반특별회계 선택	
근거법령		사업의 근거법령 1개 입력	직접입력
분류	분야	투자심사 의뢰서 상의 분야 선택	드롭박스
	부문	투자심사 의뢰서 상의 부문 선택 - 분야 선택시 해당 분야의 부문 선택가능	
시행주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표 계속〉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운영주체		완공후 사업의 운영주체 입력 - 직접운영시 지자체명, 위탁운영시 위탁기관명 기입 ex) ○○○○공단 등	직접입력
사업기간	사업시작일 완료예정일	사업의 시작일 및 완료예정일 기입 - 연월일까지 기입 - '일정(예정)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드롭박스
사업위치	시도	17개 광역시·도 중 선택	
	시군구	광역 선택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선택가능	
	읍면동	상세주소까지 입력 ex)○○동 123	직접입력

[그림 부록-16] 투자심사 정보 양식

□ 투자심사정보

- 투자심사 정보는 심사 시기, 심사유형, 심사결과, 조건으로 구성되며, 최종 투자심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준비 단계(최초심사, 2단계 심사)에서만 입력함

투자심사정보	
심사시기	년 차
심사유형	
심사결과	
조건	
1	
2	
3	
4	
5	
6	
7	

-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표 부록-11〉 투자심사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심사시기	연도와 차수 선택	드롭박스
심사유형	중앙의뢰, 시도의뢰, 시도자체, 시군구자체 중 선택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2단계), 조건부 중 선택 - 조건부 사항에 2단계심사가 언급되어 있을 경우 조건부(2단계)로 입력	
조건	심사결과 따른 조건사항 입력 - 한 줄에 하나의 심사조건 직접입력	직접입력

□ 사전절차이행정보

[그림 부록-17] 사전절차이행정보 양식

- 사전절차이행정보는 사전타당성조사 수행했을 경우 입력하는 항목으로 준비단계(최초심사, 2단계심사)에서만 입력함
-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표 부록-12>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타당성 조사 조사기관	- PIMAC :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선택 - LIMAC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시 선택 - 직접입력 : PIMAC/LIMAC 이외의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직접입력 선택후 조사기관명 기입	드롭박스 /직접입력
결과	B/C	경제성 분석 결과 입력
	P/I	재무성 분석 결과 입력
	기타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기타사항 입력
	의견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의견 입력
		직접입력

□ 사업량, 규모정보

[그림 부록-18] 사업량,규모정보 양식

- 사업량 규모정보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유형정보에 입력함
- (공통)항목의 경우 모든사업이 공통적으로 입력해야하는 항목이며, (해당사항만 입력) 항목은 사업계획 중 연면적, 층수, 도로, 주택, 환경시설, 기타 등 해당되는 사업정보 직접 입력

- 다만 R&D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행사성 사업 등 사업량 정보 입력이 어려운 경우 '주요 사업내용'에만 입력

〈표 부록-13〉 사업량, 규모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비고	
(공통)	(공통) 부지면적	사업의 부지 면적	직접 입력	모든 사업 공통입력	
	주요 사업내용	사업량, 규모와 관련된 사업내용			
(해당사항 만 입력)	연면적	건축사업 등의 경우 입력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층수	지하/지상 ex) 지하 2층, 지상3 층의 경우 2/3으로 입력			
	도로	길이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길이 입력
		폭원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폭원(왕복) 입력
	주택	세대수			주택이 포함된 경우 세대수 입력
	환경시설	시설용량			환경시설이 포함된 경우 시설용량 입력
	주차관련 시설	면수			주차관련 시설이 포함된 경우 주차면수 입력
	기타	유형			제시된 항목 이외의 항목이 있을 경우 입력
단위		유형에 맞는 단위 입력			

□ 일정(예정)정보

- 일정(예정) 정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공사준공 시기 및 진행상황을 입력하며,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 투자심사의뢰서의 '1-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과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함
 - 진행상황이 미시행, 진행중인 경우 완료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완료된 경우 완료 일자를 작성함

[그림 부록-19] 일정(예정)정보 양식

일정(예정)정보			진행상황		
기본계획	▼	년	▼	월	▼
실시설계	▼	년	▼	월	▼
보상	▼	년	▼	월	▼
공사착공	▼	년	▼	월	▼
공사준공	▼	년	▼	월	▼

<표 부록-14> 일정(예정)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공사준공	시기 투자심사의뢰서에서 작성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및 준공 해당 년, 월 선택 - 진행상황에 맞는 시기 입력 필요 - 미시행/진행중: 완료예정일자 - 완료: 완료일자 입력	드롭박스
	진행상황 미시행, 진행중, 완료 - 해당단계의 진행상황 선택	
주의사항	※ '사업개요'의 완료예정일과 '공사준공'연,월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다만, 사업완료≠공사준공의 경우(ex 연구개발, R&D사업 등), 이력관리대상목록의 '지자체 의견사항'에 해당 내용 작성 ※ 월단위 까지 반드시 입력 필요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는 항목별 총사업비, 운영인력, 항목별 운영비 및 운영수입을 입력하며,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그림 부록-21] 사업량, 규모정보 양식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운영인력	명
구분	금액	운영비	백만원/년
공사비		(단위: 백만원)	
보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총역비		유지관리비	기타
운영설비비		운영수입	백만원/년
예비비		(단위: 백만원)	
기타		사용료	임대료
합계	-	임대료	기타

- 운영비, 운영수입정보는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전망) 상의 마지막 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 단위는 백만원으로 입력하며, 투자심사의뢰서나 사업계획서가 억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시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함

〈표 부록-15〉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기타	사업비 항목별로 직접입력 - 항목별 사업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운영인력		운영인원수 입력	직접입력
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항목별 운영비 입력 - 운영비 항목 직접 수정·입력 가능 - 항목별 운영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운영수입	사용료 임대료 기타	항목별 운영수입 입력 - 운영수입 항목은 직접 수정·입력 가능 - 항목별 운영수입 입력시 자동산출	직접입력

□ 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 분양수입 정보는 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에만 입력하며,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 투자심사의뢰서 ‘투·용자사업 심사자료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기준,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용지 기준으로 분양 가격 및 분양면적 입력

[그림 부록-22] 분양수입 정보 양식

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분양가격				원/m ²		
분양면적				m ²		
분양시점		▼	년		▼	월
분양종료시점		▼	년		▼	월
(누적분양률 기준, %)						
연도	0	1	2	3	4	5 6
분양률						

(표 부록-16)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분양가격	단위는 '원/m ² '로 입력	직접입력
분양면적	단위는 'm ² '로 입력	
분양시점	분양을 시작예정시점의 년, 월 선택	드롭박스
분양종료시점	분양을 종료예정시점의 년, 월 선택	
분양률	단위는 '%'로 직접입력 - 연차별 누적분양률 기준으로 입력 ex)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분양시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입력	직접입력

□ **재원조달계획**

[그림 부록-23] 재원조달계획 양식

- 재원조달계획 정보는 연차별 예산편성내역 및 지방채 조건 등을 입력하며, 최초심사와 2단계심사의 입력방식은 동일함
- 투자심사의뢰서의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1	2	3~	
국비	(부처명)	-				
	기타	-				
지방채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	민간자본	-				
	기타	-				
	예산외	-				
합계	-	-	-	-	-	-

지방채 조건

기발행액 백만원

신규발행 백만원

(단위: 년)

발행년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시점
▼	▼	▼	▼
▼	▼	▼	▼

내용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부처 입력

- 단위는 **백만원**으로 입력하며, 투자심사의뢰서나 사업계획서가 억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시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함

〈표 부록-17〉재원조달계획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연차별 예산 편성 내역	예산편성년도	예산편성하는 초년도 직접 입력 필요	직접입력
	국비	부처별로 구분 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부처명은 직접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로 구분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기타	민간자본, 기타, 예산외로 구분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지방채 조건	기 발행액 / 신규 발행	지방채 기발행액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직접입력
	발행연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시점	각 항목별 시점 또는 기간 연도기준으로 선택 - 발행년도/상환시점 : 발행 및 상환시점의 연도 선택 - 거치기간/상환기간 : 기간을 연도기준으로 선택	드롭박스
주의 사항	※ 투자심사의뢰서의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내용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부처 입력 ※ 단위는 백만원 기준 - 투자심사의뢰서나 사업계획서가 억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시 0을 2개 추가		

2.4.1.2. 추진단계

- ▶ 추진단계 정보는 준비단계 이후 사업추진정보, 투자심사 이후 조건부 이행사항, 1차 자체평가 정보를 추진단계 입력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모두 입력함
- ▶ 투자심사 통과 이후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해당 항목은 모두 입력해야 함
- ※ 드롭다운 방식으로 선택가능한 항목은 직접입력 금지(다른파일에서 복사/붙여넣기도 금지)
- ※ 주황색 칸(드롭다운 선택), 초록색 칸(직접입력)은 입력 시 진한주황색으로 변환

□ 준비단계 정보 확인

○ 투자심사의뢰서 정보 기준이므로 수정 불가

- 다만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투자심사로 2단계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준비단계(최초심사) 작성란 하단에 준비단계(2단계 심사)추가 입력 필요 (준비단계 입력방법 참고)
- 만일 기 작성된 준비단계 정보에 일부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가 있을 시 양식 내 빈 박스(사전절차 이행정보 하단)에 해당 사항 작성

□ 사업명 및 작성자 정보 등

- 추진단계의 사업명은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 기준 사업명을 작성함
 - 투자심사 이후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사업명으로 입력하며, 변경이 없을 경우 준비단계와 동일하게 작성함
 -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작성 필요
-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는 실제 추진단계의 이력관리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작성함

[그림 부록-24] 투자심사명 및 작성자 등

사업명(추진단계)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	
-----------	--	-----	--	-----	--	-----	--

〈표 부록-18〉 사업개요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사업명(추진단계)	투자심사 결과파일 기준으로 작성 필요 - 띄어쓰기 등 유의 필요	직접입력
작성자	실제 추진단계의 이력관리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 자명 및 부서명, 연락처 기재	
부서명		
연락처		

□ 사업량, 규모정보

- 사업량 규모정보는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유형 정보에 입력함

- (공통)항목의 경우 모든사업이 공통적으로 입력해야하는 항목이며, (해당사항만 입력) 항목은 사업계획 중 연면적, 층수, 도로, 주택, 환경시설, 기타 등 해당되는 사업정보 직접입력

[그림 부록-26] 사업량,규모정보 양식

사업량,규모정보			
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input type="text"/>	m ²
주요 사업내용	<input type="text"/>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input type="text"/>	m ² 층수 <input type="text"/> 층(지하/지상)
도로	길이	<input type="text"/>	km 폭원 <input type="text"/> 차로(왕복)
주택	세대수	<input type="text"/>	세대
환경시설	시설용량	<input type="text"/>	m ² (톤)/일
주차관련시설		<input type="text"/>	면수
기타	(유형)	<input type="text"/>	(단위) <input type="text"/>
사업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변동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다만 R&D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행사성 사업 등 사업량 정보 입력이 어려운 경우 '주요 사업내용'에만 입력
- 또한, 사업위치의 경우 준비단계(최초심사 또는 2단계 심사) 이후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함
 - 변경이 없을 경우 작성 불필요

〈표 부록-19〉 사업량, 규모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 방법	비고	
(공통)	(공통) 부지면적	사업의 부지 면적		모든 사업 공통입력	
	주요 사업내용	사업량, 규모와 관련된 사업내용			
(해당사항만 입력)	연면적	건축사업 등의 경우 입력	직접 입력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층수	지하/지상 ex) 지하 2층, 지상3 층의 경우 2/3으로 입력			
	도로	길이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길이 입력
		폭원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폭원(양복) 입력
	주택	세대수			주택이 포함된 경우 세대수 입력
	환경시설	시설용량			환경시설이 포함된 경우 시설용량 입력
	주차관련 시설	면수			주차관련 시설이 포함된 경우 주차면수 입력
	기타	유형			제시된 항목 이외의 항목이 있을 경우 입력
단위		유형에 맞는 단위 입력			
사업위치(변동시)	시도	17개 광역시·도 중 선택	드롭박스	준비단계 이후 변동시 작성	
	시군구	광역 선택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선택 가능			
	읍면동	상세주소까지 입력 ex)○○동 123	직접입력		

□ 일정(실제, 예정)정보

○ 일정(예정) 정보는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공사준공 시기 및 진행상황을 입력함

- 진행상황이 미시행, 진행 중인 경우 완료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완료된 경우

[그림 부록-27] 일정(예정)정보 양식

일정(실제, 예정)정보		진행상황	
기본계획	▼년	▼월	▼
실시설계	▼년	▼월	▼
보상	▼년	▼월	▼
공사착공	▼년	▼월	▼
공사준공	▼년	▼월	▼

완료 일자를 작성

- 사업완료시점과 공사준공시점이 다를 경우(ex 연구개발,R&D사업 등), 이력관리대상목록의 '지자체 의견사항'에 해당 내용 작성 필요

〈표 부록-20〉 일정(예정)정보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공사준공	시기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및 준공 해당 년, 월 선택 - 진행상황에 맞는 시기 입력 필요 - 미시행/진행중: 완료예정일자 - 완료: 완료일자 입력	드롭박스
	진행상황 미시행, 진행중, 완료 - 해당단계의 진행상황 선택	
주의사항	※ '사업개요'의 완료예정일과 '공사준공'연,월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다만, 사업완료≠공사준공의 경우(ex 연구개발,R&D사업 등), 이력관리대상목록의 '지자체 의견사항'에 해당 내용 작성 ※ 월단위 까지 반드시 입력 필요	

□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필수입력 사항) [그림 부록-29]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양식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추진단계 입력 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와 세부 내용을 작성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번호	투자심사 조건
여부	이행여부 세부내용
1	
▼	
2	
▼	
3	
▼	
4	
▼	
5	
▼	
6	
▼	
7	
▼	

〈표 부록-21〉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투자심사 조건	준비단계의 '투자심사정보' 입력시 자동 반영	입력불필요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O/X 중 선택	드롭박스
이행여부 세부내용	이행여부의 세부내용 입력	직접입력

□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및 자원조달계획 정보는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 항목별 총사업비, 연차별 집행내역을 작성함
- 연차별 집행내역의 초기연도는 준비단계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의 초기연도로 자동 입력되며, 제시되는 연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 만약 2017년이 초기연도라면 2016년 이전 집행액은 기투자, 2017년~2021년은 실 집행액, 2022년 이후는 집행예정액(예산액)을 입력
-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은 결산서, e-호조, 계속비사업조서 등을 활용하여 입력
 - 단위는 백만원으로 입력하며, 참고자료가 억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시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함

[그림 부록-30] 일정(예정)정보 양식

총사업비 및 자체평가 정보		자원조달계획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차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구분	계	기투자	0	1	2	3	4	5	6	7
공사비		국비	(부처명)	-								
보상비			기타	-								
용역비		지방비	시도비	-								
운영설비비			시군구비	-								
예비비			기타	민간자본	-							
기타			기타	-								
합계	-		예산외	-								
			합계	-	-	-	-	-	-	-	-	-

〈표 부록-22〉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총 사 업 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기타	사업비 항목별로 직접입력 - 항목별 사업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 투자심사 통과 이후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입력	직접입력
	예산편성년도	예산편성하는 초년도 직접 입력 필요	직접입력
	국비	부처별로 구분 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부처명은 직접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로 구분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연차별 집행 내역	기타	민간자본, 기타, 예산외로 구분하여 기투자액과 연차별 예산편성금액 입력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항목별 입력시 함께 자동산출	직접입력

□ 자체평가 정보

-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자가진단항목에 해당여부 표기 및 사유 기재
 - 자체평가항목 미입력 시 검증 탭에 오류로 표기되므로 정확한 기입 필요
 - 평가항목 여부에서 ○를 선택한 경우 세부내용 입력 필요

[그림 부록-33] 자체평가 정보 양식

평가항목	여부	기재사항
1 최근 사업비 투입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 없음	▼	
2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	
-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	
-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	
- 용도별(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10% 이상 변동	▼	
-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신용보증 등 있음	▼	
3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 변경있음	▼	
4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	
5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	
6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	
7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	
8 투자심사(조건부승인) 조건 불이행 여부	▼	
9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표 부록-23〉분양수입 정보(산업단지 등 분양사업일 경우 입력) 입력항목

구분	입력내용	입력방법
평가항목별 여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에 'O/X' 선택	드롭박스
기재사항	'O'를 선택한 경우, 기재사항에 사유 및 세부내용을 직접입력	직접입력

□ 검증

- 추진단계의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검증 결과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이후 파일 제출
- 검증 결과 '불일치, 누락된 항목을 입력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면 누락한 항목을 입력하거나 입력한 항목을 수정해야 함
-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의 합계가 일치해야 함

- 일정정보의 진행상황(미시행, 진행중, 완료)을 입력해야 함
- 자체평가항목(13개 항목)의 O, X 여부를 선택해야 함

[그림 부록-35]검증 완료시 제시 양식

검증		검증 결과
1.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합계	일치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2. 일정정보(진행상황) 누락	입력완료	
3. 자체평가항목 누락	입력완료	

2.4.2. 소명자료

-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사업별로 선정사유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중점관리사업 최종 선정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각 선정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제시 필요
 -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대상사유 제시 필요

〈표 부록-24〉 중점관리사업 제외대상(2022년 기준)

구분	내용	
선정사유 해소	소명자료를 통해 후보사업 선정사유를 해소한 사업	
실효성 낮음	준공	이미 준공되었거나, 2022년 하반기 내 준공 예정 사업
	재심사	재심사 완료 사업(21년 1차 투자심사 의뢰 포함) 및 재심사 또는 2 단계 심사 예정 사업
	중단 및 보류	중단, 보류 또는 사업 취소 가능성이 있는 사업
	투심면제	현재 기준 투자심사 및 재심사 면제사업
	기타	자체관리계획 수립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 토지매입사업, 펀드사업, 코로나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방식 변경 등)

〈표 부록-25〉 중점관리 후보사업 소명의견 작성 양식(안)

순번	광역	기초	투자심사 유형	투자심사 시기	투자심사 결과	투자 사업명	사업비 ¹⁴⁾ (억원)	선정사유	선정사유별 자치단체 의견제출
1	00	본청	00의뢰	0000년 00차	조건부	0000사업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제외대상	

〈표 부록-26〉 소명의견 작성 예시(안)

선정사유	선정사유별 자치단체 의견제출
사유1 계획대비 총사업비 00억원(00% 증가)(00억원→00억원)	0000 사유로 총사업비 증가
사유2 계획대비 지방채0억원(00%) 증가 (00억원 → 00억원)	투자사업이력관리 자료제출시에는 지방채 증액 예정이었으나, 0000 사유로 지방채를 증액하지 않음
사유3 계획대비 시도비 00억원(00%) 증가 (511억원 → 511억원)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도비 증액
사유4 계획대비 공사준공 00개월 지연 ('00.-0 → '00.-0)	0000사유로 준공이 00개월 지연됨
제외대상	0000년 준공(이력관리 작성시점과 동일년도)예정임

2.4.3. 자체관리계획

2.4.3.1.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항목별로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작성함
 - 사업개요 작성시 자체관리계획 상의 준비단계 내용과 투자심사의뢰서 상의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함
 - 추진단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초자료 작성시 제출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14) 총사업비는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 다만, 자체관리계획 작성시점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 아래쪽에 별도 기재

〈표 부록-27〉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개요) 및 작성사례

구분	내용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현재(2020.12.)
사업목적	- 신규 산업용지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친환경 00산업 특화단지 조성 - 00지역 도심재생 촉진과 부리산업 거점화 및 일자리 창출기여	좌동
시행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좌동
시행주체	00시	00시 (위탁 : 00도시공사)
사업위치	-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일원	좌동
총사업비	- 699억 원	- 1,109억 원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16. 12. ~ 2020. 12. - 운영기간: 해당없음	- 건설기간: 2016. 12. ~ 2025. 12. - 운영기간: 해당없음
사업내용	신규 산업용지 조성 및 공급	신규 산업용지 조성 및 공급
채무부담 행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매입확약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업비

- 사업비는 항목별로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작성함
 - 추진단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초자료 작성시 제출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 다만, 자체관리계획 작성시점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비 아래쪽에 별도 기재

-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의 기투자금액은 준비단계와 추진단계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준비단계 기투자 금액은 최종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으로 작성
 - 추진단계 기투자금액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초자료 중 추진단계 입력시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
-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는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중 재원별 사업비에 대해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함
 - **‘사업개요’ 및 ‘투자심사 이력’ 상의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와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의 금액이 동일하도록 주의 필요**

〈표 부록-28〉 자체관리계획 양식(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 및 작성사례

(단위: 억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	(추진단계) 현재(2018. 12.)	변경사유	
재원별 투자비	계	699	1,109	재정비추진계획 (대로 00호선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국비	-	-		
	지방비	소계	349	759	
		도비	-	-	
		시비	349	759	
	지방채	350	350		
	민간자본	-	-		
기타	-	-			
총 사업비	공사비	228	378	2단계 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단지 조성공사비 증가	
	보상비	288	550	대로00호선 편입에 따른 보상비 증가	
	시설부대경비	139	66	00 사유로 홍보비 및 위탁수수료 감소	
	용역비	44	68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비 증가	
	운영설비비	-	47	부담금 비용 추가	

〈표 부록-29〉 자체관리계획 양식(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0000. 12.)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재원별 투자비	계	699	28	144	200	327		
	국 비	-	-	-	-	-		
	지방비	소계	349	28	144	-	177	
		도비	-	-	-	-	-	
		시비	349	28	144	-	177	
	지방채	350	-	-	200	150		
	민간자본	-	-	-	-	-		
	기타	-	-	-	-	-		
총 사업비	공사비	228	-	-	124	104		
	보상비	288	-	144	144	-		
	시설부대경비	139	-	-	66	73		
	용역비	44	28	-	16	-		
	운영설비비	-	-	-	-	-		
구분		(추진단계) 현재(2022. 12.)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원별 투자비	계	1,109	231	418	238	64	158	
	국 비	-	-	-	-	-	-	
	지방비	소계	1,109	231	418	88	64	8
		도비	-	-	-	-	-	-
		시비	1,109	231	218	88	64	8
	지방채	-	-	200	150	-	150	
	민간자본	-	-	-	-	-	-	
	기타	-	-	-	-	-	-	
총 사업비	공사비	378	-	45.4	217.6	39	75	
	보상비	550	201	350	.	.	.	
	시설부대경비	66	3	4	18	25	16	
	용역비	68	27	0.6	2.4	-	38	
	운영설비비	47	-	18	-	-	29	

□ 투자심사 이력

- 투자심사는 투자심사 결과, 변경내역, 통과조건의 세부항목별로 작성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초자료 작성시 제출자료의 준비단계(최초심사, 2단계심사)와 동일하게 작성
 - 투자심사 이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받은 최종 심사 및 2단계 심사에 대해서만 작성함

〈표 부록-30〉 자체관리계획 양식(투자심사 이력)

<p>⑤ 투자심사 이력</p> <p>1) 투자심사 경과 ※ 최종심사 및 2단계 심사에 한해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00월(또는 0차)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사유 : 동 사업지구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동 지구 주변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은 기업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연계 조정 필요, 지방채 발행액은 00시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 내에서 시행 ○ ‘00년 00월(또는 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사유 : <p>2) 변경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사업기간 변경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지	방	채	기	타
최종 심사	2016~2022	699	-	-	-	349	350						
2단계 심사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변경 내역 													
구 분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사업비	699억원												
변경사유													
사업규모	부지면적 : 198,779m ²												
변경사유													

3)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내역

구 분	투자심사 조치사항	이행내역	비고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2.4.3.2. 중점관리대상사업 자체관리계획

□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 선정사유 : 중점관리사업 선정사유 작성
 - 중점관리사업 선정시의 모든 사유에 대해 작성 필요
- 원인규명 : 선정사유가 발생한 원인 작성
- 이해관계자 의견
 - 주무부처 : 선정사유 및 원인이 국비 확보 등과 관련될 경우 주무부처 의견 제시 필요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주체가 되는 지자체 의견
- 종합의견 : 중점관리사업 선정사유에 대한 원인,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표 부록-31〉 자체관리계획 양식(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구분		내용	비고	
①	선정사유	계획대비 총사업비 200억원(28.7%) 증가(699억원 → 899억원)		
	원인 규명	해당지역 인입선 이설 및 개발사업(남한 제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비 (감정평가 반영) 증액		
	이해 관계자 의견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재심사 대상 금액 : 189.9억원 이상 시 [산출식: (699억원-500억원) *20%+150억원] - 투자심사 후 증가 금액 : 200억 원(보 상비 183억원 + 공사비17억원) - 적용금액 : 17억 원 - 보상비를 제외한 증가금액이 189.9억 원 범위 내로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의견				
②	선정사유	계획대비 시도비 200억원(57.4%) 증가 (349억원 → 549억원)		
	원인 규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및 추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반영		
	이해 관계자 의견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와 동일한 사항이며 총사업비 증가분 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활용	
종합의견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중점관리 사업 선정사유별 원인규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중점관리사업 선정사유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항목별로 작성함
- 해결가능성 : 각 문제점 별 해결가능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작성
- 최종판단결과 : 각 항목별 최종판단결과(정상추진, 지연, 중단, 사업취소) 작성

〈표 부록-32〉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구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가능성	비고
자원 미확보	문제점	해당지역 인입선 이설 및 인근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	
	해결가능성	추가 공사 및 지가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며 시비 추가확보 및 지방채 추가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민원 및 갈등	문제점		
	해결가능성		
행정 및 절차	문제점		
	해결가능성		
사업계획 변경/보완	문제점		
	해결가능성		
외부여건 변동	문제점		
	해결가능성		



향후 추진상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 결과			
정상추진 (완공년도 불변)	지연 (완공년도 변경)	중단 (장기추진)	사업취소 (사업철회)
	○		

□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는 앞서 제시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해결가능성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이행계획은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작성 필요

〈표 부록-33〉 자체관리계획 양식(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문제점 ①	• 사업지연 / 일시중단
↓	
해결방안	• 준공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재수립
↓	
이행계획	•
↓	
문제점 ②	• 토지 및 지장물 수용 관련 소송 존재
↓	
해결방안	• 토지수용 재결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
↓	
이행계획	•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 사업추진현황과 자체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함
 -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은 사업완료년도까지 분기별로 작성하되, 공사단계에서는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차년도 이력관리시 제출한 연차별 종합이행계획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필요

〈표 V-34〉 자체관리계획(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사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완공년도)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제영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보상추진 및 문화재 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포장공사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변경)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전기통신공사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00동 일원) 사업완공 및 2단계 (00동 일원)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구조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부대공사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잔여지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용지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구역 사업완공
예정공정율 (%)	58%	77%	100%

【별지서식 제1호】

※ 서식규격 : 위:15, 아래:15, 왼:20, 오:20, 머:10, 꼬:10,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사업명) 자체관리계획

(신명조 32 진하계)

(수립기간)

(신명조24, 진하계)

○○○○. ○○.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담당자	작성자 이름 (인)
-----	------------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회계)	분 류	분 야	부 문
			수송 및 교통	도로
작성자	사업부서 담당자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예산부서 담당자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I. 사업 추진현황

① 사업개요

구분	내용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현재(0000.00.)
사업목적	- (신명조12)	
시행근거		
시행주체		
사업위치		
총사업비		
사업기간	- 건설기간 - 운영기간	
사업내용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② 위치도

	<p>사업명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범례</td> </tr> <tr> <td>금회시공</td> <td>적색</td> </tr> <tr> <td>기 시 공</td> <td>청색</td> </tr> <tr> <td>장래시공</td> <td>황색</td> </tr> </table>	범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범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③ 현장사진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할 것

사업명 :	

4 사업비

○ 연차별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단위: 억 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기준(0000. 12.)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재원별 투자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구분		(추진단계) 현재(0000. 00.)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재원별 투자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 재원별 투자비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준비단계) 최종 투자심사		(추진단계) 현재 (0000. 00.)		변경사유	
재원별 투자비	-	총사업비	기투입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용역비						
	운영설비비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용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용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용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 연차별 재원투입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

5 투자심사 이력

1) 투자심사 경과 ※ 최종심사 및 2단계 심사에 한해 작성

- '00년 00월(또는 0차)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
 - 판정 사유 :
- '00년 00월(또는 0차)
 - 판정 사유 :

2) 변경 내역

- 사업비 / 사업기간 변경 내역

구 분	사업기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지방채	기 타
최종 심사a							
2단계 심사b							
현재c							
증·감b-a							
c-b							

- 사업규모 변경 내역

구 분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현재
사업비			
변경사유			
사업규모			
변경사유			
기타			
변경사유			

3)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내역

구 분	투자심사 조치사항	이행내역	비고
최종 심사			
2단계 심사			

⑥ 사업 추진실적

추진시기	추진 내용	비고
YYYY.MM.DD		

II. 중점관리대상사업 자체관리계획

①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

구분			내용	비고
①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관계기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부서	
			사업 부서	
종합의견				
①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관계기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부서	
			사업 부서	
종합의견				

구분			내용	비고
①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관계기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부서	
			사업 부서	
종합의견				
①	선정사유			
	원인 규명			
	이해 관계자 의견	관계기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부서	
			사업 부서	
종합의견				

② 선정서유 발생 사유 유형화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구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별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비고
재원 미확보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민원 및 갈등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행정 및 절차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사업계획 변경/보완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외부여건 변동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기타	문제점		
	대응방안 및 이행계획		



향후 추진상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 결과			
정상추진 (완공년도 불변)	지연 (완공년도 변경)	중단 (장기추진)	사업취소 (사업철회)
	○		

③ 사안별 문제 해결방안 제시

문제점 ①	• 사업지연 / 일시중단
-------	---------------



해결방안	• 준공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재수립
------	------------------------------



이행계획	•
------	---

문제점 ②	• 토지 및 지장물 수용 관련 소송 존재
-------	------------------------



해결방안	• 토지수용 재결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
------	-----------------------------



이행계획	•
------	---

4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4분기	•	•		
2/4분기	•	•		
3/4분기	•	•		
4/4분기	•	•		
예정 공정률(%)	%	%		

5 사업추진의지

- 중기재정계획 반영 내용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사업 개요	재원	총 사업비	기 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당해 사업 예산집행계획
 - 준공 : 2018. 00.

〈부록 2〉 [1차 델파이 설문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관련 1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및 매뉴얼 개선 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모두 2차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이를 토대로 1차례의 추가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델파이 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선생님의 존함과 기관의 명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끝까지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델파이 조사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책임자 : 함윤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이력관리 제도의 현황 및 쟁점

□ 이력관리 제도 현황

- (도입배경)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됨**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1992년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통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심사 시 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불가능**하였음
 - 이에 투자심사 이후 증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당초의 성과 달성 미흡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력관리 제도 도입**
- (추진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2017.12.29. 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 이력관리 대상 사업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
 - 관리범위 : 준공까지 일정, 투자심사결과, 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 등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 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 쟁점

-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활용 및 환류방안을 고려하여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이력관리 결과는 공개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사업(중점관리사업)에 대한 기준 및 조치가 명확하지 않음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료 제출 협조도 원활하지 않음
- (관리대상) 대상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투자심사사업 대한 이력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 매년 중앙투자심사 사업은 400여 건, 자체심 사업(시도의뢰심 포함)은 4,000여 건임
- (관리범위) 현행 이력관리 제도의 관리범위는 사업준공단계까지 사업비 및 일정 변경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의 운영단계에서의 지역 수혜도 및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관리범위를 확대할 경우,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유형 및 운영단계 관리 방향, 데이터 수집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료의 정확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이력관리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관련 자료 재확인과 수정을 위한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큼
 - 향후 차세대 e-호조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할 예정이나, 사업규모, 일정, 운영실적 등 정보는 여전히 수기작성이 필요함
 - 향후 차세대 e-호조 접근권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체계,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력관리 제도 관련 1차 델파이 설문

1. (이력관리 필요성)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에서는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명명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규칙상에 제시된 이력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이력관리 목적) 또한 규칙상에 이력관리의 목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여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법령상에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는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의 경우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법령에 제시됨

3. (이력관리 평가항목) 이력관리의 평가항목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투입현황에 대한 정보만 수집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상 제시된 평가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력관리에서 관리 및 평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환류 관련) 현재 규칙상에는 이력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칙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력관리 평가결과가 어떻게 환류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투자심사 판단기준에 추가하여 환류시키거나, 타 유사제도(주요재정사업평가 등)와 연계하여 환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5. (타 유사제도와 연계) 이력관리와 유사한 제도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사업은 중복하여 사후평가를 받고 있으나, 각 제도별로 평가주체 및 방법, 환류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 제도가 유사제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환류측면에서 연계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사업 이력관리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및 500억원 자체심 사업
- 평가주체 : 지자체는 사업정보 기록·관리를 담당, 행안부와 LIMAC이 분석 및 관리
- 평가내용 : 매년 당초 투자심사 대비 사업수행 변경내용(공사비, 일정, 재원 등)
- 평가결과 환류 : 부실사업에 대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재정사업평가

- 대상 : (투자사업) 시도 5억원이상/ 시군구 2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시도 및 시군구 2억원 이상
- 평가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기도 함
- 평가내용 : 사업의 “계획-관리-성과/환류” 등 측면에서 지자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구분함
- 평가결과 환류: ‘미흡’이하 등급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대부분 도로사업)
- 평가주체 : 사업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
- 평가내용 :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평가(공사비, 일정, 안전성 등) 수행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수요 및 B/C) 및 사업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를 평가하도록 함
- 평가결과 환류: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건설기술진흥법」 제 52조)

6. **(이력관리 대상)** 현재 이력관리대상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사유와 적절한 대상사업 범위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매년 중앙투자심사 사업이 400여 건, 자체심 사업(시도의뢰심 포함)이 4,000여 건입니다.)

7. **(중점관리사업)** 이력관리 결과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을 현재 중점관리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의뢰서상 총사업비, 일정 등과 비교하여 변동이 크고 재심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이력관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중점관리사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지표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8. (이력관리 범위 확대) 현재는 준공단계(당초 총사업비 집행완료)까지만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떤 사업유형 위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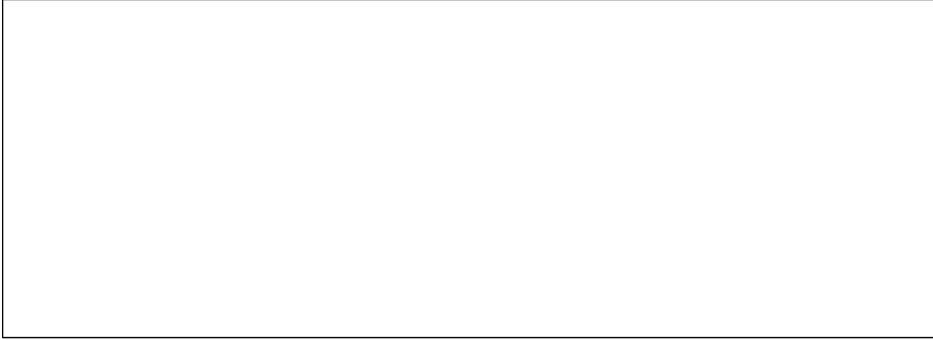
〈참고〉 사업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에너지 및 자원개발	수소, 풍력
	주택	주택
	복합	복합
수송 및 교통	도로	도로
	도시철도	도시철도
	주차 관련	주차장, 차고지
	항만	항만
문화 및 관광	공원 등	공원, 광장
	관광	관광지, 정원, 수목원 등
	문화예술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박물관&전시관, 복합
	체육	전문체육, 실내체육
	컨벤션	컨벤션
	복합	복합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사시설
농림수산업	농림, 수산, 축산	도매시장 등
교육	교육	대학 설립 등 교육 플랫폼
환경	환경	환경시설
복합	복합	복합
일반행정	일반행정	청사

9.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책임)** 이력관리 수행주체는 현재『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이 수행 중입니다. 앞서 의견주신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관리 범위, 환류체계 및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10. **(이력관리 자료의 신뢰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수기로 작성하는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공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11. (기타) 이력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부록 3〉 [2차 델파이 설문지]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관련 2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및 매뉴얼 개선 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선생님의 존함과 기관의 명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델파이 조사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책임자 : 함윤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조사된 제도 전반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력관리 대상사업

□ 1안 : 현행유지

- 대상 :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및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장·단점 비교
 - ⊕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업(2022년 기준 1,666건)은 모두 포함
 - ⊖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에 현실적 한계
 - ⊖ 매년 약 4,000여건의 시도 의뢰심사 또는 자체심사, 시군구 자체심사는 사후관리 부재

□ 2안 : 축소

(2-1안) 대규모 사업에 한하여 관리

-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사업 집중 관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장·단점 비교
 - ⊕ 현행 관리대상의 20%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DB 수집 및 관리 용이
 - ⊖ 나머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2-2안) 국비포함 사업

- 대상 : 국비 지원사업만 집중 관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4(국고보조금의 관리)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교부 및 집행실적을 취합 및 공표

○ 장·단점 비교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4(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가능
- ⊖ 대규모 사업이라도 자체재원사업의 경우 관리 부재

□ 3안 : 확대

(3-1안) 확대

- 전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관리대상 확대
- 전제조건
 - 현행 대상 : LIMAC이 관리
 - 확대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 장·단점 비교
 - ⊕ 전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 ⊖ 이력관리 제도의 법적근거(대상, 수행기관, 업무범위 등) 부재 및 위상이 낮은 상태에서 대상 확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불투명, 지방자치단체 반발 우려

(3-2안) 단계적 확대

- 지방재정투자사업 전체로 확대시, 전체 관리대상 사업 4,000여건
- 이력관리 제도 운용 제반여건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이력관리 제도의 근거법령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 단계별 확대방안
 - 1단계 (현행보다 축소)
 - 2단계 (현행 수준으로 회복) 전문기관 법적 지정 및 별도 인력/예산 확보 후
 - 3단계 (확대) 시도 의뢰심 및 자체심, 시군구 자체심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 기관 지정 등 수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후

Q1. 상기 개편방안 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안) 현행 유지(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② (2안) 축소 ③ (3안) 확대	
	Q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관리대상을 축소할 경우,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1안) 심사기관과 상관없이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② (2-2안)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국비가 포함된 사업 ③ 기타()	

Q3. 관리대상을 확대할 경우,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3-1안) 확대 ② (3-2안) 단계적 확대 ③ 기타()	

2. 이력관리 관리범위 및 관리내용

□ 1안 : 현행유지

-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집행단계(사업 준공/완료)까지 관리
- 장·단점 비교
 - ⊕ 이력관리 기간이 사업완료로 한정되어 관리가 비교적 용이
 - ⊖ 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한계

□ 2안 : 운영단계까지 확대

- 투자사업 운영단계까지 관리 범위 확대
 - 운영단계까지 관리가 필요한 사업유형, 관리항목, 관리기간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 불가피
- 장·단점 비교
 - ⊕ 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가능
 -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성과 가능
 - ⊖ 이력관리 제도의 법적근거(대상, 수행기관, 업무범위 등) 부재 및 위상이 낮은 상태에서 범위 확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불투명, 지방자치단체 반발 우려
 - ⊖ 주요재정사업평가와 중복될 수 있음. 다만 주요재정사업평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로 수행되며, 이력관리의 목적과 환류방식(해당사업 예산삭감)이 상이함

Q4. 상기 개편방안 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안) 현행 유지
- ② (2안) 운영단계까지 확대

Q5. 관리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관리항목으로 적절한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중복선택)		
①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항목별 정보 포함) 및 집행내역	()
②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③ 사업량(부지 및 연면적, 세대수, 도로연장, 시설용량 등) 및 추진시 변경사항	()
④ 일정정보(보상, 착공, 준공 등) 및 추진시 변경사항	()
⑤ 투자심사 결과 및 조건별 이행 여부	()
⑥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⑦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 여부 및 조치사항	()
⑧ 기타 ()	()

Q6. 관리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다음 기준 중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1위부터 9위까지 작성해주시시오.		
①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② 총사업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사업	()
③ 투자심사 조건 이행에 대해 추적이 필요한 사업	()
④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
⑤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
⑥ 국비 포함 사업	()
⑦ 사업이 일정 개월(년도) 이상 지연된 사업(준공 기준)	()
⑧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사업지연(착공기준) 4년 이상, 자원계획 변경, 사업부지 변경)	()
⑨ 기타 ()	()
Q6-1.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는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Q6-2.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업지연(준공 기준)은 어느 정도 지연이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개월 또는 (_____)년		

Q7.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중점관리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진행단계상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안) 사업 준공/완료시점 이전 추진단계
 ② (2안) 사업 준공/완료 이후 운영단계
 ③ (1안)과 (2안) 단계 각각 중점관리사업 선정

Q8.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의 우선순위를 작성해주십시오.

① 주민대상 각종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② 관광시설 ()
 ③ 청사 ()
 ④ 도시개발, 산업단지(지산센터 포함) ()
 ⑤ 기타 () ()

Q9.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관리항목으로 적절한 항목을 사업유형별로 직접 작성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중복선택)

사업유형		운영단계 관리항목	
①	주민대상 각종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①-1 운영비(인건비, 운영과리비, 유지보수비 항목별)	()
		①-2 운영수익(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 항목별)	()
		①-3 이용객 수	()
		①-4 기타()	()
②	산단 및 지식센터	분양률 및 가동률(입주율)	()
③	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률, 상부건축 관련 진행상황	()
④	펀드사업	()	()
⑤	()	()	()
⑥	()	()	()
⑦	()	()	()
⑧	()	()	()

Q10.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다음 기준 중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으로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하여 운영비 과다, 운영실적 달성 미흡 사업 ② 유사시설 비교하여 운영비가 과다, 운영실적 미흡 사업 ③ 기타()	
	Q10-1.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할 시, 운영비 과다 기준 및 운영실적 미흡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운영비 계획 대비 ()%, 이상 사업 ② 운영실적 목표 대비 ()% 달성 미만 사업
	Q10-2. 유사시설과 비교할 시, 운영비 과다 기준 및 운영실적 미흡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균 운영비 대비 ()%, 이상 사업 ② 평균 운영실적 대비 ()% 달성 미만 사업
Q11. 관리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한다면, 관리기간 및 주기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준공 후 3년 1회 실시 ② 준공 후 5년 1회 실시 ② 매년 실시 ③ 기타()	

3. 이력관리 결과 환류/활용 방안

□ 1안 : 현행유지

-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집행단계(사업 준공/완료)까지 관리하며,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자체관리계획 수립 요청 및 이행점검
- 장·단점 비교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 ⊖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관리계획만 세우며,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사항도 없기 때문에 제도 실효성 확보 한계

□ 2안 : 현행보다 적극적인 결과 환류방안

(2-1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

- ①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 (감액 또는 보정수요에 반영)
 - 장·단점 비교
 - ⊕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 ⊖ (감액) 불교부단체에 대한 관리 불가능 및 감사제도와 중복
 - ⊖ (보정수요 반영) 불교부단체에 대한 관리 불가능
-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장·단점 비교
 - ⊕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 ⊖ 객관적인 지표 설계 한계
-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반영
 - 장·단점 비교
 -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연계 강화
 - ⊖ 보통교부세나 합동평가지표 반영 방안보다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낮음

- ④ 행정안전부 각종 포상제도에 반영
 - 행안부 지방재정대상 등 시상
- 장·단점 비교
 - ⊕ 인센티브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효과 큼
 - ⊖ 중점관리사업 등 패널티 대상 관리방안 부재
- ⑤ 투자심사시 반영
 - 당해연도 투자심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예: 심사의뢰 제한 등)
- 장·단점 비교
 - ⊕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 및 수용도 제고

(2-2안) 컨설팅

-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 장·단점 비교
 - ⊕ 재정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지원 가능
 - ⊖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재로 관심도가 낮을 수 있고, 제도 실효성 확보 한계

(2-3안) 자료 공개

- ① 지방재정365에 중점관리사업 공개
- ② 지방재정365에 전체 이력관리 자료 공개

Q12. 상기 개편방안 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안) 현행 유지
- ② (2안) 현행보다 적극적인 결과 환류방안

Q13.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결과를 환류할 경우, 다음 방안 중 가장 타당성 높은 대안 3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2-1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		
①-1	보통교부세 감액	()
①-2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반영	()
④	행정안전부 각종 포상제도에 반영	()
⑤	투자심사시 반영	()
(2-2안) 컨설팅		
⑥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
(2-3안) 자료 공개		
⑦	지방재정365에 중점관리사업 공개	()
⑧	지방재정365에 전체 이력관리 자료 공개	()

4. 전문기관의 역할

Q14.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다음 역할 중 중요한 순서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작성해주세요.

- ① 제도 총괄운영 및 관리
- ②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 ③ 이력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 ④ 컨설팅
- ⑤ 기타 ()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Q15. 기타 이력관리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반곡동,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6층
TEL. 033-769-5500(대표) FAX. 033-769-5545 limac.krila.re.kr

